



2009년도

발간등록번호  
11-1541000-000021-10



2009년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추진실적**

2010. 6.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추진실적**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0021-10

# 2009년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추진실적

2010. 6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 || 목 차 ||

## 제1절 농산어촌 복지기반 확충

1-1-1-0.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3
1-1-2-0. 농어업인 국민연금제도 개선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	5
1-1-3-0. 농작업 재해보상 지원 .....	7
1-1-4-0.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	10
1-1-5-0.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	12
1-2-1-1. 농산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	13
1-2-1-2. 공공보건기관 기반 확충 .....	16
1-2-1-3.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	17
1-2-3-1. 농작업재해 원인구명 및 농작업 환경개선 .....	22
1-2-3-3. 농작업 안전모델 조성사업 .....	25
1-3-1-1. 농산어촌 보육시설 확충 .....	29
1-3-1-2. 농산어촌 만5세아 무상보육지원 .....	31
1-3-1-3.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지원 .....	33
1-3-2-0. 여성농어업인센터 설치 확대 및 내실화 .....	35
1-3-3-1. 농어가 도우미 지원 확대 .....	38
1-3-3-2.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	40
1-3-5-1. 여성농업인 창업 지원 .....	43
1-4-1-1. 농산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 확충 .....	46
1-4-2-4. 농촌 건강장수마을 조성 .....	48
1-4-3-0. 경영이양직불제 추진 .....	51

## 제2절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2-1-1-1.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 .....	57
2-1-1-4. 한국농수산대학 개편운영 .....	59
2-1-2-8. 군단위 소규모 학교 통폐합 .....	62
2-1-3-4. 방과 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	64
2-1-3-6.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육성 .....	67
2-1-4-2.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	69
2-1-4-4. 농어촌지역 사립유치원교사 처우개선 .....	71
2-2-1-0.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	74
2-2-2-1. 농산어촌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	76
2-2-2-2. 농어업관련 대학생 장학금 지원 .....	78
2-2-3-1. 초·중·고 학생 급식비 지원 .....	81
2-2-3-2. 자영농·수산계고교학생 급식비 지원 사업 .....	84
2-2-4-2.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 .....	88
2-3-2-1. 농산어촌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	90
2-3-3-2. 학교도서관 및 장서 확충 .....	93
2-3-3-3. 기숙형 공립고 지정·추진 .....	96
2-3-3-4.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 .....	98

## 제3절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

3-1-1-0. 지역개발 전문인력 육성 및 저변확대 .....	103
3-2-1-1. 농촌마을종합개발 .....	106
3-2-1-2. 어촌종합개발사업 .....	110
3-2-1-3.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	112
3-2-2-1.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	115

3-2-2-2. 면소재지 활력증진사업 .....	118
3-3-1-1.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	122
3-3-2-1. 면단위 생활용수 개발사업 .....	125
3-3-2-2. 마을단위 생활용수 개발사업 .....	127
3-3-2-3.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면단위 하수도사업) .....	129
3-3-2-4. 소하천 정비사업 .....	131
3-3-2-5.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	135
3-3-2-6. 농촌폐비닐 수거비지원 .....	137
3-3-2-7. 소형어선인양기 설치 .....	140
3-3-2-8. 해양폐기물 정화 및 쓰레기 구매사업 .....	142
3-3-2-9. 양식장 정화 사업 .....	144
3-3-2-10. 해수욕장주변정비 및 시설개선사업 .....	146
3-3-3-1. 농어촌도로 정비 .....	148
3-3-3-2. 교통서비스 강화 .....	151
3-3-3-3. 국고여객선 건조 .....	153
3-3-3-4.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	155
3-3-4-1.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	157
3-3-4-3. 도서종합개발사업 .....	159
3-3-5-1.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	162
3-3-5-5. 지방문화원 프로그램운영 .....	165
3-3-5-6. 지방테마과학관 건립지원 .....	167
3-3-5-7. 수목원조성 및 산림박물관건립 .....	170
3-3-5-8.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	172
3-3-6-1. 정보화마을 조성 .....	176
3-3-6-3. 농업경영체 정보화 지원 .....	178
3-3-6-4. 디지털어촌 구축사업 .....	181

3-3-7-1. 농업인 정보화교육 .....	184
3-3-7-3. 농어업 관련 정보제공 확대 .....	186

#### 제4절 농산어촌 복합산업활성화

4-1-1-1. 향토자원의 조사발굴 및 DB구축 .....	191
4-1-1-2. 농촌활력증진사업 .....	196
4-1-1-3. 향토음식 자원화사업 .....	200
4-1-2-9.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한 농공단지조성 .....	204
4-1-3-0.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	206
4-2-1-1.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	208
4-2-1-2.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 .....	210
4-2-1-3. 문화역사마을 조성 .....	212
4-2-1-4. 어촌체험마을 조성 .....	217
4-2-1-5. 어촌관광활성화사업 .....	219
4-2-1-6. 산림휴양공간조성 .....	221
4-2-1-8.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	224
4-2-1-11. 해양관광자원개발 .....	226
4-2-2-3. 농촌교육농장 .....	228
4-2-4-0. 향토문화 관광축제 육성 .....	231
4-3-1-0. 경관보전직불제 .....	235
4-3-2-2. 농촌어메니티 계획모델 개발 및 보급 .....	238
4-3-3-0. 농산어촌형 경관주택 발굴·보급 .....	240
4-3-4-0. 자생식물원 및 생태숲 조성 .....	243
4-3-5-0. 농산어촌 경관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	245
4-3-6-1.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	247
4-4-1-0. 1사1촌 운동 .....	250

4-4-2-1. 도시민 농산어촌주택(전원주택) 갖기 활성화 ..... 253  
 4-4-3-1. 도농교류 활성화 ..... 256

**<참 고>**

**2009년도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요약) ..... 259**

제 1 절 점검·평가 개요 ..... 261

    1. 추진배경 ..... 261

    2. 점검·평가 개요 ..... 262

제 2 절 2009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 265

    I. 총평 ..... 265

    II. 평가결과 ..... 267

        1. 평가요약 ..... 267

        2. 부문별 주요 평가결과 ..... 268

        3. 평가단 권고 사항 ..... 272

        4. 평가소감(평가체계 개선 방안 등) ..... 276

<참고 1> 삶의 질 시행계획 점검·평가 위원 ..... 278

<참고 2> 사업별 평가결과 및 상·하위사업 평가의견 ..... 279

<참고 3> 사업별 성과목표 달성도 ..... 292

<참고 4> 제1차 기본계획 부분별 투융자 계획 대비 실적 ..... 298

# 제1절 농산어촌 복지기반 확충



1-1-1-0(계속)	<b>농어업인국민건강보험제도개선(농식품부)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b>
-------------	---------------------------------------------------

담당부서	농촌사회과	담당자	박성우(서기관)
전화번호	02-500-1819	이메일	tengrps@korea.kr

### 1. 사업목표

- 추진근거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 의료이용 접근성이 낮고 개방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하여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4년 ~
- 총사업비 : -억원('09년까지 기투자액 : 6,893억원)
- 사업규모 : 당해연도 경감대상 농어업인  
( '09년까지 완료사업 물량 : 3,175천세대 지원)
- 지원형태 : 민간보조(건강보험공단)
- 지원조건 : 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천 세대)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690	6,360	-	-	-	-	-	6,360
'05	609	666	-	-	-	-	-	666
'06	599	1,359	-	-	-	-	-	1,359
'07	532	1,272	-	-	-	-	-	1,272
'08	451	1,356	-	-	-	-	-	1,356
'09	499	1,707	-	-	-	-	-	1,707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천 세대)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570	6,552	-	-	-	-	-	6,552
'05	604	666	-	-	-	-	-	666
'06	521	1,340	-	-	-	-	-	1,340
'07	504	1,431	-	-	-	-	-	1,431
'08	484	1,559	-	-	-	-	-	1,559
'09	457	1,559	-	-	-	-	-	1,559

####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성과지표) : 농가소득 중 건강보험료 경감액의 비율(건강보험료 경감액/농가당 소득)
  - (목표치) 0.83% → (실적치) 1.11%
  - 총경감금액(340,520천원)/농가총소득(30,523백만원)=1.11%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가소득중 건강보험료 경감액의 비율	세대당건강보험료 경감액/농가당 소득	%	0.83	1.11	133

1-1-2-0(계속)	<b>농어업인 국민연금제도 개선(농식품부)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b>
-------------	---------------------------------------------------

담당부서	농촌사회과	담당자	박성우(서기관)
전화번호	02-500-1819	이메일	tengrps@korea.kr

### 1. 사업목표

- 추진근거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및 농어업인의 노후소득 보장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5년 ~ 2014년
  - \* '07년 1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
- 총사업비 : -억원('09년까지 기투자액 : 6,106억원)
- 사업규모 : 국민연금지역가입자 중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원조건 : 국고 100%

###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천명)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81	3,839	-	-	-	-	-	3,839
'05	217	605	-	-	-	-	-	605
'06	263	673	-	-	-	-	-	673
'07	275	761	-	-	-	-	-	761
'08	273	884	-	-	-	-	-	884
'09	253	916	-	-	-	-	-	916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천명)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411	3,690	-	-	-	-	-	3,690
'05	317	605	-	-	-	-	-	605
'06	301	673	-	-	-	-	-	673
'07	288	731	-	-	-	-	-	731
'08	275	793	-	-	-	-	-	793
'09	230	888	-	-	-	-	-	888

-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 중 일부가 연금수급 대상으로 전환(해당 연령 도달) 및 비지원 대상(개인사업자 등록, 농어업 포기 등)으로 분류됨에 따라 지원 인원 감소

####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성과지표 : 가입자 지원율(실제 지원인원/총 지원대상인원)
  - (목표치) 85% → (실적치) 88%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총납부인원(273,291명) / 총지원대상인원(309,635명)=88%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가입자 지원율	실제 지원인원/ 총지원대상인원	%	85	88	103.5

1-1-3-0(계속)	농작업 재해보상 지원(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농업금융정책과	담당자	이두형(주무관)
전화번호	02-500-1743	이메일	dhlee1@mifaff.go.kr

## 1. 사업목표

- 농작업과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당하는 경우 신체나 농기계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여건 조성
- \* 사업추진 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6년 ~ 계속
- 사업비 : 1,848억원('09년 까지 투자액)
- 사업규모('09) : 농업인 791천명, 농기계 28천대
- 추진내용 :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 보장을 위해 농업인재해공제의 공제료 일부 지원
- 지원조건 : 국고 50%, 자부담 50%
- 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농협중앙회
  - 사업추진절차 : 사업시행계획 수립 → 공제상품판매(농협, 연중) → 자금교부 요청·집행 → 정산
- ※ 농업인재해공제는 농업인안전공제와 농기계종합공제로 구분
  - 농업인안전공제 :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만15세~84세)의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신체상해 등 손해를 보상
  - 농기계종합공제 : 농기계 파손 및 고장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

### 3. 연차별 추진계획

- 농업인 실익증대를 위해 농업인안전공제의 대상 및 보장수준을 연차적으로 산재보험 수준으로 확대
  - '13년까지 보장수준을 산재보험 수준(사망시 90백만원)으로 지속 확대
    - \* 사망시 보장수준 한도 : ('06)25 → ('07)35 → ('08)45 → ('09)60 → ('13)90
- 농기계 품목확대 및 보장내용 지속 강화
  - 농기계 : ('08) 경운기, 트랙터, 콤팩트, SS분무기, 승용이앙기, 승용 관리기, 항공방제기, 광역살포기, 베일러 → ('09 추가)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248	1,124	-	-	-	-	1,124	2,248
'05	228 (768천명, 12.5천대)	114	-	-	-	-	114	228
'06	366 (768천명, 12.5천대)	183	-	-	-	-	183	366
'07	454 (818천명, 12.5천대)	227	-	-	-	-	227	454
'08	556 (818천명, 15천대)	278	-	-	-	-	278	556
'09	644 (796천명, 15천대)	322	-	-	-	-	322	644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200	1,100					1,100	2,200
'05	228 (702천명, 8.5천대)	114					114	228
'06	342 (653천명, 10.4천대)	171					171	342
'07	430 (740천명, 12천대)	215					215	430
'08	430 (764천명, 14천대)	278					278	556
'09	644 (791천명, 28천대)	322					322	644

####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공제가입률은 목표 가입률 47.7% 대비 0.7%p 증가한 48.4% 달성하여 계획대비 101.5% 달성
    - 가입률: (목표) 47.7% →(실적) 48.4%
    - ※ 농림업경제활동인구: '08년 1,633천명(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사망시 보상수준을 계획대비 100% 달성
    - 보상수준(사망시) : (목표) 60백만원 →(실적) 60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업인재해공제	농업인안전공제 보상수준 달성률(%)	산재보험 보상수준 (90백만원)대비 농업인안전공제 보상수준 달성도 측정	%	66	66	100.0
	공제가입률	공제가입자수/ 당해연도 농림업경제활동인구수	%	47.7	48.4	101.5

1-1-4-0(계속)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농림수산식품부)		
-------------	------------------------	--	--

담당부서	수산개발과	담당자	양진문(사무관)
전화번호	02-500-2325	이메일	jinmoon@mifaff.go.kr

## 1. 사업목표

-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제고로 어선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어선 소유자의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지원
- 근거법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78년 ~ 계속
- 사업규모 : 연근해 어선에 승선한 어선원(122천명)중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차등 지원
- 지원조건
  - 순보험료(10톤미만 70%, 30톤미만 60%, 50톤미만 30%, 100톤미만 20%) 및 운영사업비(부가보험료의 70%) 보조
- 시행방법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하는 사회보장 성격의 비영리 정책보험으로 수협중앙회에 위탁·운영하고 회원조합이 업무를 대행
- 추진내용
  -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어업인의 보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가입률 제고 추진 ※ 어선원보험 가입률 : ('08) 12.1% → ('09목표) 12.2%
  - 어업인의 자발적인 보험가입 유도를 위해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한 노력 지속 추진

###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296	0			2,296
'06	1식			180				180
'07	1식			201				201
'08	1식			265				265
'09	1식			364				364
'10	1식			629				629
'11	1식			657				657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830	180			1,010
'07	1식			201				201
'08	1식			265	100			365
'09	1식			364	80			444

※ 기금 등 : 수산발전기금에서 용자집행 (2년거치 3년상환, 연4%)

###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
  - 성과지표 : 전국 어선원보험 가입률(목표 12.2%, 실적 12.2%)
  - '09년도 어선원보험 가입율 목표치를 전년 12.1%보다 0.1% 상향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어업인정책보험 사업	어선원보험 가입률	수협중앙회의 전국 어선원 보험 가입 집계자료	%	12.2	12.2	100

1-1-5-0(계속)	<b>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보건복지부)</b>
-------------	-------------------------------------

담당부서	기초생활보장과	담당자	최신팡(사무관)
전화번호	02-2023-8125	이메일	worldchoi@mw.go.kr

## 1. 사업목표

- 농어민가구의 농가소득 감소와 노령인구의 증가 등 농어촌지역의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농어민가구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4년 ~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규모 : 농어민가구 특례적용 대상자
- 지원형태 :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적용
- 지원조건 : 농어민 가구
  - 농지를 1ha 미만 소유자가 지급받은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쌀소득 등보전직접지불금 및 농어민가구가 부담한 보육료 중 15만원 이내의 금액 등을 소득평가액 산정시 지출요인으로 추가인정
  - 농지법에 의한 농지가액과 가축·종묘 등 농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동산의 재산가액을 합한 금액 중 5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로 차감하는 등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 사업시행주체 : 보장기관(시·군·구청장)

## 3. 연차별 추진계획

- 비예산 사업으로 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음

## 4. 성과목표 달성도

- 농어민가구에 대한 특례조항 계속 적용 여부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시 농어민가구 특례 적용

담당부서	공공의료과	담당자	공인식 사무관
전화번호	02-2023-7337	이메일	hopegene@korea.kr

## 1. 사업목표

- 응급의료기반이 취약한 농산어촌 지역 의료기관에 24시간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인력, 시설확충, 장비지원으로 응급의료 접근성 제고 및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 보장
- 사업추진근거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국민 응급의료제공 의무 규정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6조(재정지원) : 응급의료기관등에게 필요한 재정지원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12조 및 제14조 : 농어촌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민간의료기관 육성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6년 - '09년(이후 계속 사업으로 추진)
-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절차 : 응급의료 취약 군지역 시·도 통보(보건복지부 → 시·도) → 해당 군 지역 지원 대상 의료기관 선정(시·도) → 예산 지원(복지부 → 시·도→의료기관) → 사업시행(시·도 및 의료기관) → 지원금 교부 및 사후 관리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43개 군지역 의료기관
- 사업규모 : 43개 응급의료 취약 군지역 소재 의료기관 1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국고 100% 지원
  - '09년 신규지원(2개소) : 개소당 인건비 68백만원 및 시설·장비 보강비 98.4백만원 지원
  - '09년 기지원(40개소) : 개소당 의료인력 인건비 68백만원 지원
- 시도별 배분내역(응급의료 취약 군지역)

(단위 : 군)

구분	계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대상	43	1	2	6	2	4	5	6	10	5	2
사업실적	42	1	2	6	2	4	5	6	10	5	1

### 3. 연차별 추진계획

-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43개 군지역 및 도서산간 지역 응급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역당 1개 의료기관 등에 대한 응급 의료 인프라 구축비 지원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96	139			230			369
'05	-	-						-
'06	28	36						36
'07	39	34						34
'08	43	34						34
'09	43	35						35
'10	43				230			230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47	136						136
'05	-	-						-
'06	28	36						36
'07	37	32						32
'08	40	34						34
'09	42	34						34

#### 4. 성과목표 달성도

- 43개 군 지원 대비 42개 군을 지원하여 97.7% 목표 달성
  - 43개 군지역당 1개소 의료기관 등에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지자체(남제주군) 신청 미흡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응급의료 취약지 해소율	취약지 군지역 중 응급의료기관 설치군	개	43	42	97.7

1-2-1-2(계속)	공공보건기관기반 확충(보건복지부)
-------------	--------------------

담당부서	건강정책과	담당자	김옥수 주무관
전화번호	02-2023-7492	이메일	oskim007@korea.kr

## 1. 사업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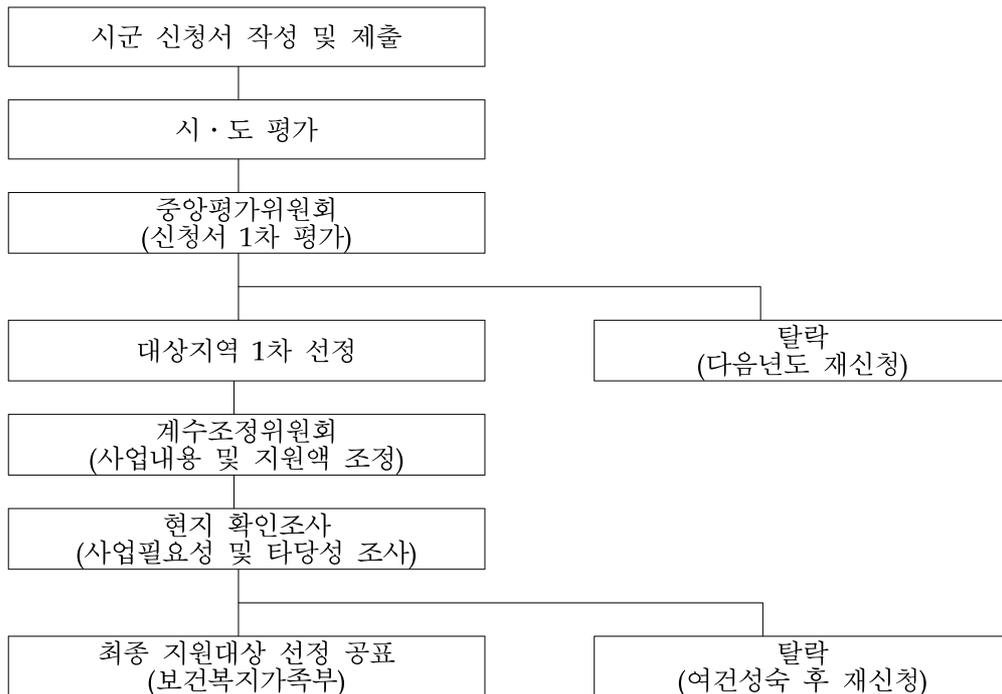
- 농어촌지역 공공보건기관의 시설 및 장비 현대화사업을 통해 농어촌등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국민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추진근거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 지역보건법 제19조(비용의 보조), 농림어업인의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14조(농림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및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에 대한 지원)
  -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개발대상도서의 지정)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4 ~ '14
- 사업대상 : 농어촌 공공보건기관
- 사업량 : 시설개선 196개소(보건소 15개소, 보건지소 68개소, 보건진료소 113개소), 장비지원 144개소(보건소 40개소, 보건지소 104개소), 차량지원 174개소(방문보건차량 170개소, 구강보건차량 4개소)
- 사업금액 : 62,503백만원(국고 2/3, 지방비 1/3)
- 추진내용 : 농어촌 지역의 지역보건기관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신축 및 의료장비 등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도모

○ 사업추진체계

- 추진주체 : 보건복지가족부 → 시·도 → 시·군·구
- 추진절차 : 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시도평가 → 중앙평가위원회 평가(1차 탈락 : 다음년도 재신청) → 1차 선정 → 계수조정위원회 심사 → 중앙평가위원회 현지 실사(탈락 : 여건성숙 후 재신청) → 대상지역 사전예고 통지



3. 연차별 추진계획

- 안정적인 사업예산 확보로 열악한 농어촌지역 보건기관의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 확대 추진('05년 국비 569억 → '09년 625억)
- 재정자립도를 반영한 지자체 차등지원, 지원단가 상향, 의료장비·보건사업차량등 지원확대
- 도서지역 연간 지원한도 폐지, 시설비 지원시 가산율 추가적용 등 의료취약지원 지원강화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759	3,062	-	-	-	1,529	-	4,591
'05	332	569	-	-	-	285	-	854
'06	332	573	-	-	-	286	-	859
'07	690	620	-	-	-	310	-	930
'08	789	675	-	-	-	336	-	1,011
'09	616	625	-	-	-	312	-	937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759	3,062	-	-	-	1,529	-	4,591
'05	332	569	-	-	-	285	-	854
'06	332	573	-	-	-	286	-	859
'07	690	620	-	-	-	310	-	930
'08	789	675	-	-	-	336	-	1,011
'09	616	625	-	-	-	312	-	937

\* 전년도에 사업대상기관을 선정·지원하여 목표 대비 전액 집행

##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촌의료 서비스개선사업	이용자 만족도	전문설문조사 기관 조사결과	%	85	88.4	104
	이용자 증가율	전년대비 이용자 증가율 조사	%	0.3	0.8	226

1-2-1-3(계속)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보건복지부)
-------------	-----------------------

담당부서	공공의료과	담당자	심은혜사무관
전화번호	2023-7369	이메일	ehshim9@korea.kr

### 1. 사업목표

-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노후 의료시설과 장비 현대화 지원, 교육 및 평가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이용의 형평성 제고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5년부터~
- 사업대상 : 지방의료원 34개소, 적십자사 6개소
- 사업주체 : 보건복지부, 지자체, 대한적십자사,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 추진체계 : 사업계획서 접수(각 병원, 시도 및 대한적십자사 경우)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 예산 교부 및 집행 점검
- 추진내용
  -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 신축·개보수, 의료장비
  - 혁신 및 서비스 교육 : 지역거점공공병원 임직원 교육강화
  -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 운영실태 평가로 바람직한 운영방향 제시

### 3. 연차별 추진계획

- 2005년
  -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기능보강(421억원)
  - 지역거점공공병원 임직원 교육(3억원)
- 2006년
  -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기능보강(302억원)

- 지역거점공공병원 임직원 교육(3억원)
-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3.5억원)
-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 지원(11억원)
- 2007년
  -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기능보강(221억원)
  - 지역거점공공병원 임직원 교육(3억원)
  -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3.5억원)
  -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 지원(11억원)
- 2008년
  -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기능보강(156.4억원)
  - 지역거점공공병원 신축 및 전문의료서비스센터지원(200억원)
  - 지역거점공공병원 임직원 교육(2억원)
  -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진단(5.2억원)
  -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 지원(6억원)
- 2009년
  -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기능보강(433.5억원)
  - 지역거점공공병원 임직원 교육(3.5억원)
  -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5.2억원)
  -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 지원(6억원)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의료원 34개, 적십자사 6개			1,796		1,579		3,375
'05	의료원 34개, 적십자사 6개			421		391		812
'06	"			319		271		590
'07	"			238		190		428
'08	"			370		319		689
'09	"			448		408		856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의료원 34개, 적십자사 6개			1,796		1,579		3,375
'05	의료원 34개, 적십자사 6개			421		391		812
'06	"			319		271		590
'07	"			238		190		428
'08	"			370		319		689
'09	"			448		408		856

####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09년 목표치 78.5점, 실적치 80.3점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지역거점공공의료 기관 육성	지역거점공공병원 이용자만족도	설문조사 (전화, 면접 등)	점	78.5	80.3	102

1-2-3-1(계속)	<b>농작업재해 원인 구명 및 농작업 환경개선 (농촌진흥청)</b>
-------------	-------------------------------------------

담당부서	농업재해예방과	담당자	이 경 숙
전화번호	031-290-1937	이메일	leeks81@korea.kr

## 1. 사업목표

- 추진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10조, 36조, 40조, 42조 및 55조
    - 지역농업의발전과 농촌주민 복지증진, 농업관련 기술·연구 진흥, 농업인 등 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 농업재해에 대한 시책 등
  - 삶의질향상특별법 제14조(농림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및 15조(업무상재해를 입은 농림 어업인에 대한 지원)
- 농업인 건강수준 평가 및 작업관련성 평가를 통하여 업무상재해 판정 근거 마련
- 농업활동 건강유해요인 증가에 따라 농부증 등 농업인 직업성 질환 발생이 증가하므로 적합한 예방관리 기술을 개발 지원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9. 1 ~ 2009. 12
- 사업비 : 10억원(국비 100%)
- 사업지원대상 : 관련 연구과제 추진을 위한 해당 연구부서
- 사업규모 : 농작업 보조장비·보호구 개발 등
- 사업 시행방법
  - 분야별 사전연구협의회(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 과제계획 심의(해당 과, 외부전문가) → 연구과제 계획보고회(기관장) → 예산편성 → 중간진도관리 및 현장평가(해당 과) → 연구과제 평가 및 보고회(기관장) → 결과활용심의회(연구정책국)

○ 추진내용

- 농작업재해 원인구명 및 작업관련성 조사
- 유해 작업환경 노출평가 및 작업보조도구 개발
- 농작업 사고예방/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및 정보 지원
- ※ 의학(산업의학, 예방의학, 재활의학), 환경보건, 산업공학 등 관련 전문가  
자문단 운영 및 공동연구 수행, 연구회 세미나 실시

###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과제수)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3			28.5			28.5	
'06	5			8			8	
'07	5			6.5			6.5	
'08	7			3			3	
'09	6			11			11	

- 일반회계 예산으로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당초 계획대로의 예산확보가 어려우며 '10년 이후에는 농특세를 활용하여 중앙 및 지역의 안전 보건 사업 연계를 위한 사업확대 및 실용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3			29			29	
'06	5			8			8	
'07	5			7			7	
'08	7			3			3	
'09	6			11			11	

####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작업재해 원인구명 및 농작업 환경개선	논문게재	목표건수	건	8	9	113
	영농활용	목표건수	건	5	6	120
	특허출원	목표건수	건	3	7	230
	농업인 건강안전정보센터 방문자수/년	목표건수	명	100천명	840천명	840

1-2-3-3(계속)	농작업 안전모델 조성사업(농촌진흥청)
-------------	----------------------

담당부서	농촌자원과	담당자	박찬순
전화번호	031-299-1076	이메일	hipcs@kore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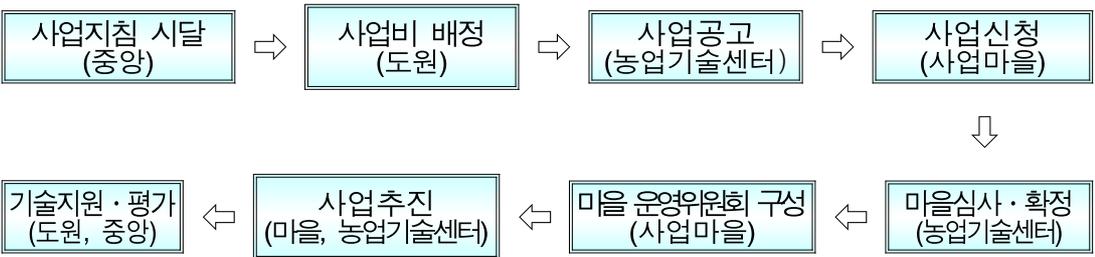
## 1. 사업목표

- 농작업 관련 재해발생을 줄이고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의식과 안전관리 능력 향상
- 농작업재해 예방 관리를 위한 종합 지원 체계 모델 확립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2014(9년간)
- 총사업비 : 660억원(국·지방비 각 50%, 마을당 3년간 총 2억원 지원)
- 사업규모 : 330마을('09년도까지 1년차 기준 추진 물량 45개소)
- '09 사업량 : 36개소(신규 14, 기존 22)
- 지원대상 : 시설원예, 노지채소, 과수, 축산 등 농작업 유해요인이 많은 주산단지 마을
- 사업주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 추진체계

### < 사업추진 절차 >



< 기관별 역할 분담 >

기 관	역 할 분 담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기본국가정책수립 및 평가, 장기 방향 설정 전문교육, 지도자료 지원, 사업 홍보, 홈페이지 운영, 지역지원 등 전문가 협력체계 구축(*농작업 안전사업 중앙추진단 : 35명)
농업기술원	도내 안전사업 추진 종합지원, 홍보 등 도단위 협력체계 구축(* 지역사업단 8개소, 91명)
농업기술센터	사업 대상마을 선정, 사업 주관, 진단, 마을 사업실행 지원 농업인 교육, 홍보, 평가 등

○ 세부내역

- 농업인의 건강수준 및 농작업유해요인 등 진단 실시 :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 현황 파악,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농작업 유해요인 등 진단
- 현황 진단 결과를 기초로 마을 및 작목 특성에 맞는 농작업 개선 방안 도출 및 실행 : 농기계·기구의 안전 사용, 농약 등 유해물질 안전 보관 및 개인 보호구 사용, 마을 및 작목 특성에 맞는 농작업 환경 및 시스템 개선, 운동 프로그램 및 건강요법 실시, 안전관리교육 실시 등



○ 사업의 효과성

-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관리 실천 향상으로 농작업 재해 감소
- 근골격계 질환 증상 완화, 작업자세 개선, 근력 향상 및 활력 증진

### 3. 연차별 추진계획

- 2014년까지 총 330개 마을 지원(마을당 3년간 총 2억원 지원)
  - 사업 초기 도별 1~2개소씩 시범 추진한 후 중기 이후 사업량 확대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5개소	24.6	-	-	-	24.6	-	49.2
'05	-	-	-	-	-	-	-	-
'06	9개소	5.4	-	-	-	5.4	-	10.8
'07	8개소(17)*	6.6	-	-	-	6.6	-	13.2
'08	14개소(31)	6.2	-	-	-	6.2	-	12.4
'09	14개소(36)	6.4	-	-	-	6.4	-	12.8

\* ( )안은 2년차 및 3년차 지원 마을 포함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5개소	24.6	-	-	-	24.6	-	49.2
'05	-	-	-	-	-	-	-	-
'06	9개소	5.4	-	-	-	5.4	-	10.8
'07	8개소(17)	6.6	-	-	-	6.6	-	13.2
'08	14개소(31)	6.2	-	-	-	6.2	-	12.4
'09	14개소(36)	6.4	-	-	-	6.4	-	12.8

\* ( )안은 2년차 및 3년차 지원 마을 포함

###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농기계 안전점검, 농약 방제복 착용 등 농작업 재해 예방 효과가 큰 20개 항목에 대한 농작업 안전관리 실천 현황을 조사한 결과 80.14%가 농작업 안전관리를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목표치 대비 100.2% 달성

- 농작업 안전모델 사업을 통하여 농작업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농작업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참여형 개선활동 등으로 농작업 안전실천을 생활화 함
- 농작업 안전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사고 감소율이 66.7%로 목표치 대비 333.5% 달성
- 농작업 안전사고 감소율 목표치 설정은 전년도 표본조사 결과를 지표에 반영하여 설정하였지만 '09년도에는 사업마을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큰 편차를 보임에 따라 목표치에 대한 재검토 필요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농작업 안전관리 실천율	농작업 안전보건 현황 점검 조사	%	80	80.14	100.18
	농작업 안전사고 감소율	농작업 안전사고 발생 모니터링 시스템	%	20	66.7	333.5

1-3-1-1(계속)	농산어촌 보육시설 확충(보건복지부)
-------------	---------------------

담당부서	보육기반과	담당자	윤정혜(사무관)
전화번호	02-2023-8946	이메일	tengrps@korea.kr

### 1. 사업목표

-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의 보육여건 개선
  - 농산어촌 지역 보육시설 확충을 통해 농림어업인에게 저렴하고 질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6 ~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 국고 50%, 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가족부
- 추진내용
  - 농산어촌 지역에 국공립 및 소규모보육시설 확충

###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차별 추진 일정

(단위 개소)

구분	'06년 계획	'07년 계획	'08년 계획	'09년 계획	'10 계획
보육시설 확충	27	37	22	30	30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16			302		293		595
'05	100			120		120		240
'06	27			48		48		96
'07	37			67		67		134
'08	22			43		43		86
'09	30			24		15		39

※ '09년부터는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시범사업 포함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69			296		275		571
'05	101			63		63		126
'06	45			77		77		154
'07	51			75		75		150
'08	29			18		18		36
'09	43			63		42		105

##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소규모보육시설 설치 시범사업 추진 및 추경 예산 확보를 통한 국공립보육시설 추가 확충을 통해 당초 계획 대비 실적을 초과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보육시설 확충	농산어촌 지역의 보육 시설 확충	농산어촌 지역 보육시설 확충 개소수	개소	30	43	143

※ 소규모보육시설 설치 9개소, 국공립 신축 28개소, 추경 6개소

1-3-1-2(계속)	농산어촌 만5세아무상보육지원(보건복지부)
-------------	------------------------

담당부서	보육사업기획과	담당자	진상인(주무관)
전화번호	02-2023-8937	이메일	-

## 1. 사업목표

- 농산어촌지역 취학전 만5세아 아동에 대한 균등한 보육기회 제공을 통해 아동의 학업준비 도모
- 만5세 무상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가 소득경제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9년 ~ 계속
- 사업내용 :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취학전 만5세 아동에게 1년간 무상보육기회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부터 단계별 확대
- 지원대상 : 소득하위 70%이하 가구('09년 4인가구 436만원)
- 지원단가 : 172천원
- 추진형태 : 지자체보조
- 사업추진절차 : 보건복지가족부 → 시·도 → 시·군·구 → 보육시설(아동)
- 보조율 : 50%
- 사업비 : 309억원
- 지원인원 : 29,073명

###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80,942			1,807		1,807		3,614
'05	29,085			262		262		524
'06	34,029			322		322		644
'07	32,505			311		311		622
'08	30,487			292		292		584
'09	29,918			309		309		618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0,897			1,257		1,257		2,514
'05	29,085			267		267		534
'06	36,037			345		345		690
'07	33,817			321		321		642
'08	31,958			324		324		648
'09	29,073							

※ 만5세아무상보육료 예산은 농산어촌지역만을 대상으로 편성하지 않으며 전국단위로 집행 및 정산하기 때문에 농산어촌지역에 대한 별도 정산 곤란

###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2009년도 목표치 : 29,487명, 실적치 : 29,487
  - 농산어촌 지역의 보육시설 이용아동수 감소로 목표수치의 97%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산어촌 만5세아 무상보육지원	지원아동수	총지원아동수	명	29,918	29,073	97%

담당부서	농촌사회과	담당자	박성우(서기관)
전화번호	02-500-1819	이메일	tengrps@korea.kr

## 1. 사업목표

- 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농림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및 제22조(농산어촌 유치원 유아 교육·보호)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 사업목표
  - 농어촌의 과소화·노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 젊은층의 농어촌거주 유도 및 농어촌 지역 사회 활력유지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4 - 계속
- 사업비('09) : 838억원(국비 419, 지방비 419)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거주, 농지소유면적 5.0ha 미만 농어가의 농어업인 영유아(0~5세, 취학유예 6세)
  - \* 타부처(복지부, 교과부)의 저소득층 지원대상 아동은 제외(중복지원 금지)
- 사업규모 : 농어업인의 만 0-5세 자녀 50천명/월
- 지원형태 : 자치단체 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88	1,913	-	-	-	1,913	-	3,826
'05	31	224	-	-	-	224	-	448
'06	75	364	-	-	-	364	-	728
'07	78	507	-	-	-	507	-	1,014
'08	54	412	-	-	-	412	-	824
'09	50	406	-	-	-	406	-	812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62	1,851	-	-	-	1,851	-	3,702
'05	30	192	-	-	-	192	-	384
'06	56	316	-	-	-	316	-	632
'07	57	430	-	-	-	430	-	860
'08	66	494	-	-	-	494	-	988
'09	53	419	-	-	-	419	-	838

### 4. 성과목표 달성도

####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비율	농어촌지역 영유아 중 양육비 지원인원 비율	%	62	66	106.5
	양육비 지원 만족도	재지원 신청자 설문조사	%	70	70	100

1-3-2-0(계속)	여성농어업인센터 설치 확대 및 내실화 (지자체/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농촌사회과	담당자	김춘기(사무관)
전화번호	02-500-1825	이메일	@korea.kr

## 1. 사업목표

- 추진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7조(여성농업인의 육성)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 사업목표 :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및 자녀에 대한 영유아 보육 지원 등으로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 및 농촌정착 유도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2 - 계속
- 사업비('09) : 4,355백만원(지방비 3,722, 자부담 633)
- 지원대상 : 각 도별로 지원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운영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사업규모 : 전국 38개소
- 지원형태 : 민간 경상보조
- 지원조건 : 지방비 85%(분권교부세 포함), 자부담 15%
- 지원내용 :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
- 센터의 주요사업 내용
  - 필수사업 :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학습지도, 교육·문화활동 등 지역실정에 맞는 자아실현 프로그램
  - 임의사업 : 농업·농촌 체험과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도농 교류사업, 농촌 소득증대 프로그램 등

### 3. 연차별 추진계획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자녀 학습지도 등 종합복지기능을 수행하는 여성농업인센터 설치를 연차적으로 확대
-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등 여성농업인의 역할증대에 상응한 운영의 내실화 도모

<'09년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8					3,727	632	4359
경기도	4					392	44	436
강원도	3					287	51	338
충북	3					293	52	345
충남	3					296	52	348
전북	7					651	115	660
전남	4					383	68	451
경북	2					192	34	226
경남	6					668	118	786
제주	6					565	98	663

- '05년부터 사업이 지방이양되어 시행계획 변경

<'09년도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7					3,722	633	4,355
경기도	4					392	44	436
강원도	3					287	51	338
충북	3					293	52	345
충남	3					296	52	348
전북	7					646	116	762
전남	4					383	68	451
경북	2					192	34	226
경남	6					668	118	786
제주	6					565	98	663

####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지방이양전의 농업·농촌종합대책상의 연차별 계획으로 자치단체별  
분권교부세 및 지방비 확보정도에 따라 사업목표 수정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계획 대비 설치 비율	설치계획 ÷ 추진 실적	%	38	38	100.0

1-3-3-1	<b>농어가 도우미 지원 확대 (지자체/농림수산식품부)</b>
---------	----------------------------------------

담당부서	농촌사회과	담당자	박성우(서기관)
전화번호	02-500-1819	이메일	tengrps@korea.kr

### 1. 사업목표

-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업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 도우미가 영농업을 대행함으로써, 영농업의 중단을 방지하여 농업 생산성 제고 및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특별법 제18조(농산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0년 ~ 계속('05년부터 지방 이양)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사업비 : 지방분권교부세 및 지방비에서 지원(지자체 사업)

### 3. 연차별 추진계획

< '09년도 시행계획 >

- 지원인원 : 4,865명
- 지원금액 : 6,873백만원

< '09년도 추진실적 >

	사업규모 (명)	국비(천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378	-	-	-	-	5,902,190	1,341,591	7,243,781
서울	-	-	-	-	-	-	-	
부산	17	-	-	-	-	14,280	3,570	17,850
대구	3	-	-	-	-	3,375	675	4,050
인천	8	-	-	-	-	5,528	1,382	6,910
광주	2	-	-	-	-	1,500	375	1,875
대전	3	-	-	-	-	1,944	216	2,160
울산	16	-	-	-	-	18,720	4,680	23,400
경기	85	-	-	-	-	424,000	106,000	530,000
강원	170	-	-	-	-	148,366	37,092	185,458
충북	300	-	-	-	-	900,000	225,000	1,125,000
충남	550	-	-	-	-	866,250	216,563	1,082,813
전북	460	-	-	-	-	592,906	65,879	658,785
전남	630	-	-	-	-	567,000	141,750	708,750
경북	1,000	-	-	-	-	900,000	225,000	1,125,000
경남	429	-	-	-	-	695,921	122,809	818,730
제주	705	-	-	-	-	762,400	190,600	953,000

- 어려운 경제여건과 농업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해 지자체에서 관련 예산 증액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목표치 및 실적 : 목표치 100%, 실적 105.4%
  -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 예산 일부 증액 반영(계획 6,873억원, 실적 7,244억원, 371억원↑)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가 도우미 지원	계획대비 지원율	계획대비 지원 실적	%	100	105.4	105.4

1-3-3-2(계속)	취약농가 인력지원(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농촌사회과	담당자	박성우(서기관)
전화번호	02-500-1819	이메일	tengrps@korea.kr

## 1. 사업목표

- 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5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0조 제③항
- 사업목표
  - 사고·질병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고령·취약농가에는 가사도우미 지원을 통해 영농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속시켜 농가소득 증대와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로 농촌활력 증진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년 ~ 계속
- 총사업비 : -억원('09년까지 기 투자액 : 178억원)
- '09 지원실적 : 31천명, 60억원
- 지원형태 : 민간보조(농특회계)
- 지원조건
  - 영농도우미 : 국고보조 70%, 이용농가부담 30%
  - 가사도우미 : 국고보조 70%, 농협부담 30%

- 지원금액
  - 영농도우미 : 52,000원/일(영농작업 대행 임금)
  - 가사도우미 : 10,000원/회(교통비, 식대등 활동비)
- 사업시행주체 : 농협중앙회

###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천 명)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82,000	157					67	224
'05								
'06	시범사업							
'07	23	39					16	55
'08	28	58					25	83
'09	30	60					26	86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1	97					41	138
'05								
'06	14							
'07	23	39					16	55
'08	28	58					25	83
'09	31	60					26	86

- '09 추진실적
  - 지원인원 : 31,168명(영농도우미 11,802명, 가사도우미 19,366명)
  - 국고지원액 : 5,992백만원(영농도우미 4,732, 가사도우미 1,260)

####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 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수혜자 만족도	친절도, 도움성, 필요성 등이 포함 된 전반적 만족도를 5분위 척도로 조사하여 상위 2분위까지 비율을 산정	%	90.0%	89.9%	100

1-3-5-1(계속)	여성농업인 창업지원 (농촌진흥청)
-------------	-----------------------

담당부서	농촌자원과	담당자	윤종탁(농업연구사)
전화번호	031-299-1071	이메일	jongtag@kore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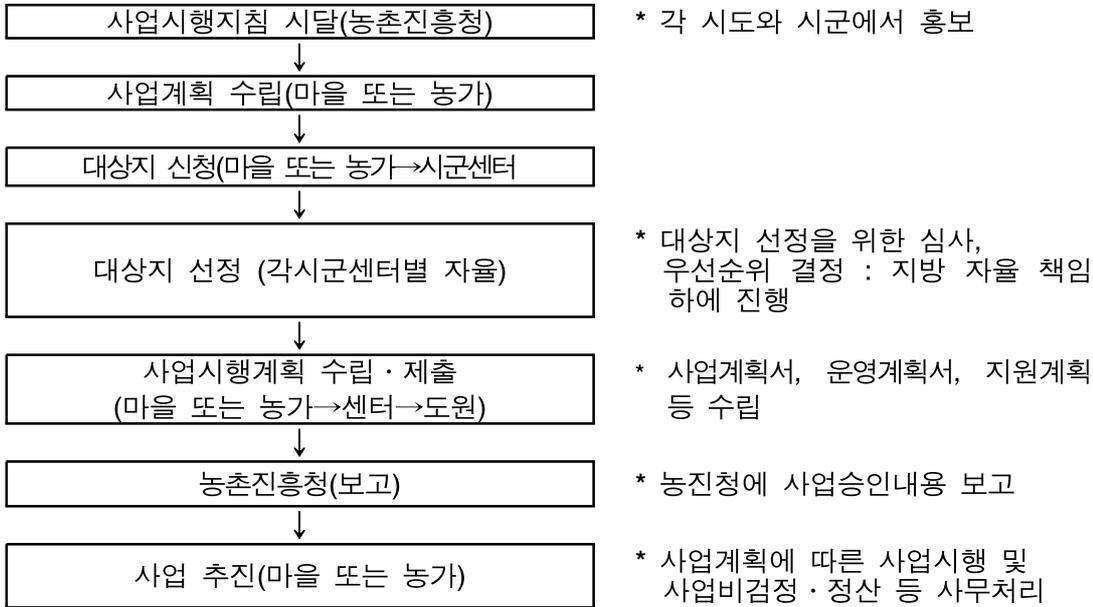
## 1. 사업목표

- 국내원료를 기반으로 한 여성농업인의 소규모 창업지원으로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증진
- 여성농업인 생산제품의 품질향상과 온라인 홍보 시스템 구축으로 농가 소득 증대
- 추진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8조(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농촌진흥법 제2조2항(농촌지도사업은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의 보급), 농촌진흥법 제13조(농촌지도사업 실시하는 지자체에 사업비 보조),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농산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년~
- 사업주체 : 농촌진흥청 및 지방농촌진흥기관
- 총사업비 : 142억원('08년까지 기투자액 : 6억원)
- 사업량 및 사업비 : 72개소 36억원(국비 50%)
- 시행방법 : 자치단체자본보조 및 중앙 집행(보조율 50%)
- 추진내용
  - 여성농업인의 지역농산물 소규모 가공 등 신규 창업 지원
  - 유통개선을 위한 품질개선·기술교육·홍보
  - 전자상거래 우먼팜 유지·관리 등

○ 추진체계



### 3. 연차별 추진계획

- 사업 규모(사업량) : 신규창업 72개소('08년까지 28개소), 우먼팜 유지·관리 1건
- 지원금액 및 형태
  - 창업 : 72개소 3,600백만원(국비50%), 자치단체 자본보조(50%)
  - 우먼팜 유지·관리 : 50백만원, 중앙집행 국고 100%
  - 지원조건 : 사업주체인 농가가 거주하고 있는 마을에 사업장이 있고,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며 가공·생산·상품화 작업이 해당지역 거주 여성들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장
- 사업 주요내용
  -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유통을 위한 원료확보
  - 전통식품 등의 생산, 가공을 위한 작업장 및 시설설치, 가공장비 구입 및 설치 등
  - 포장개발 및 유통개선에 필요한 자금 지원
  -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 및 우수 지역 벤치마킹
  - 전자상거래 우먼팜 유지·관리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72	45.3		9.7	-	51	-	106
'05	24			2.3		2.3		4.6
'06	25	3.0		2.3		4.3		9.6
'07	25	3.0		2.3		4.3		9.6
'08	26	3.3		2.3		4.6		10.2
'09	72	36.0		0.5		35.5		72.0

※ 1개소 지방비(0.5억원) 미확보로 국비만으로 사업추진

※ 2009년 5월 추경예산 27.5억을 확보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71	43.8		9.5	-	49.3	-	102.6
'05	24			2.3		2.3		4.6
'06	25	3.0		2.3		4.3		9.6
'07	24	3.0		2.1		4.1		9.2
'08	26	3.3		2.3		4.6		10.2
'09	72	34.5		0.5		34.0		69.0

※ 3개소 3억원(국비·지방비 각 0.5억원) 2010년으로 사고이월

##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사업량은 신규창업 72개소 계획에 69개소 추진으로 96%, 전자상거래 우먼팜 유지관리가 1건 계획에 100% 완료 하였음
  - 성과지표는 '09년 농촌여성 창업지원사업장(지원 후 3년차)의 매출액 조사결과 7.3%(목표치 : 전년대비 5%) 향상으로 목표대비 146%를 달성하였음
- ※ 창업 사업장 평균 매출액 : 58.8백만원('08) → 63.2백만원('09)
-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다품목소량의 웰빙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와 사업장 대표 농가는 물론 농진청과 지자체에서 마케팅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목표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여성농업인 창업지원	지원후 3년차 사업장 매출액 조사결과	전년도 대비 매출액 향상정도	%	5	7.3	146

1-4-1-1 (계속)	농산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 확충(보건복지부)
--------------	-------------------------

담당부서	요양보험운영과	담당자	변효순
전화번호	02-2023-8575	이메일	-

## 1. 사업목표

- 고령사회로 접어든 농어촌 지역의 노인가구 문제 및 장기요양보호 욕구를 해소하고자 가정 중심으로 노인을 보호함으로써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고 복지혜택의 지역편재를 해소
- 농산어촌 거주 등으로 인해 보건소, 복지회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이 곤란한 재가노인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5년 ~ '09년
- 사업비 : '09년 51억원(국비 25.5억원, 지방비 25.5억원)
- 사업내용
  - 농산어촌 거주 노인들의 복지혜택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이 복합된 다기능시설의 건립 지원
  - '09년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13개소 신축지원
-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시·군·구) → 사업대상 선정(복지부) → 예산신청(시·군·구) → 예산지원(복지부) → 사업시행(시·군·구)

###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05								
'06	16	27.5				27.5		55
'07	14	25.5				25.5		51
'08	12	25.5				25.5		51
'09	13	25.5				25.5		51

- 신축지원 개소수 기준이며, '10년부터 동 사업을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일반회계)과 통합하여 농어촌지역 재가시설 뿐 아니라 요양시설도 사업 신청이 있는 경우 적극 지원할 예정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05								
'06	16	27.5				27.5		55
'07	14	25.5				25.5		51
'08	12	25.5				25.5		51
'09	13	25.5				25.5		51

### 4. 성과목표 달성도

-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 13개소 신축 지원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촌재가노인복지 시설 확충	농어촌재가노인시설 신축 지원 수	보조금 지원 개소수	개소	13	13	100

1-4-2-4(계속)	농촌건강장수마을 조성(농촌진흥청)
-------------	--------------------

담당부서	농촌자원과	담당자	김영아
전화번호	031-299-2681	이메일	kya72041@korea.kr

### 1. 사업목표

- 농촌 사회의 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 자연환경과 소프트웨어 중심 프로그램의 지원으로 건강하고 당당하며 활기찬 노년 생활유도
- 농촌노인과 예비노인에게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환경, 소득·경제 등 4영역을 접목, 실천토록 지원하여 건강하게 장수하는 마을로 육성
- 사업추진 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법률제8749호) 제10조,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법률제9717호) 제1조, 4조, 5조, 19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법률제8868호) 제4조, 14조, 15조, 16조, 19조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5 ~ 2012
- 사업량 및 사업비 : 총 1,177억, 800개소
  - 국비·지방비 각 50%, 개소당 3년간, 총 137~150백만원
- 사업주체 : 시군 농업기술센터
- 사업추진체계

구 분	역 할 분 담
<b>농촌진흥청</b>	▷ 기본국가정책수립 및 평가, 장기 방향 설정 지도자료 지원과 사업 홍보, 홈페이지 운영 마을민, 사업담당자 등 관계관 교육 등 마인드 향상
<b>농업기술원</b>	▷ 사업추진계획 검토 및 보완, 지역 정체성 확립 지역단위 홍보 네트워크 구축
<b>농업기술센터</b>	▷ 사업계획 협의, 점검, 조정, 자문, 마을선정 자발적 참여 유도, 능력 함양 교육
<b>마 을</b>	▷ 주민 협의 마을 발전 계획 수립 추진, 운영 위원회 운영

- 추진내용
  - 사업비 지원('07~'09) : 141개소, 35.3억원(국비)

- 사업내용 : 소득활동, 건강생활, 평생학습·사회활동, 환경정비 등 농촌 노인의 생산적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

### 3. 연차별 추진계획

- 2005~2012년까지 800개 시범마을 육성
  - 마을당 3년간, 개소당 50백만원 지원으로 자율적 마을 운영 기반 조성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회계	군특회계 (광특회계)	기타회계	기금등			
<b>합계</b>	<b>800</b>	<b>284.7</b>	<b>587.8</b>			<b>588.8</b>		<b>1,176.6</b>
'05	100	21				21		42
'06	200	75				75		150
'07	50	77.2	2.8			80		82.8
'08	84	80	3.3			83.3		86.6
'09	7	31.5	3.7			35.2		70.5
'10	59		37			38		75
'11이후	300		256.3			256.3		512.6

※ '10년까지는 확정, '11년 이후는 향후 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b>합계</b>	<b>141</b>	<b>284.7</b>	<b>9.8</b>			<b>294.5</b>		<b>589.1</b>
'05	100	21				21		42
'06	200	75				75		150
'07	50	77.2	2.8			80		160
'08	84	80	3.3			83.3		166.6
'09	7	31.5	3.7			35.2		70.5

####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의 객관적인 평가를 목적으로 사업참여 어르신 대상으로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정도, 주거환경 등 부문별 생활만족도 조사한 결과 목표치의 105.3% 달성
  - ※ 본 사업을 보다 객관적인 성과 측정을 위해 사업 비대상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대상마을과 공통된 생활실태, 생활만족도조사 결과 62.1%로 사업대상마을과 비교결과 7% 다소 높은 차이가 나타남
  - 본 사업 건강장수환경만족도 설문조사는 이 사업이 도입되기 전과 비교했을 때 마을 제반 환경변화, 마을 노인들의 자부심 등 설문조사('07~'08년 마을 134개소 700명 대상)한 결과 목표치의 100.4%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촌건강장수 마을	생활만족도	개인과 마을의 활력도 및 삶의 질 향상 증가 비율	%	66	69.5	105.3
	건강장수환경만족도	노년문화 자부심 지역사회 활력화	%	81	81.3	100.4

1-4-3-0(계속)	경영이양직불제 추진
-------------	------------

담당부서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담당자	이창일(주무관)
전화번호	02-500-1763	이메일	ci006@mifaff.go.kr

## 1. 사업목표

- 목 적
  -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지원으로 소득안정
  - 전업농 영농규모 확대 지원으로 전업농 중심의 영농규모화 촉진
- 사업추진 근거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제5호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시행규칙」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7년 ~ 계속
- 총사업비 : 9,951억원 ('09년까지 기투자액 : 1,980억원)
- 사업규모 : 82천ha ('09년까지 완료사업 물량 : 62천ha)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내용
  - 신청연령 : 65세 이상 70세 이하 농업인으로 보조금 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는 자
  - 지급단가 : 연 3,000천원/ha(6년 ~ 최대 10년)
  - 지급기간 : 신청연령에 따라 6년 ~ 최대 10년(매월 분할지급)
  - 지급요건 : 지급약정 체결 전일까지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대상 전·답·과수원을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60세 이하의 전업농업인 등에게 매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지급 기간 이상 임대 또는 임대위탁해야 함

○ 추진절차

- 사업시행계획 공고 및 홍보(공사) → 대상자 선정 신청(농업인→공사)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공사) → 대상자 선정 통보(공사→농업인)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체결(공사↔농업인)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공사→농업인) → 사후관리(공사)

### 3. 연차별 추진계획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정('97.2.1)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정('97.2.25)
  - 고령 농업인(65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논을 전업농업인 등에게 매도 또는 임대할 경우 경영이양보조금(258만원/ha) 지급
- 물가 및 수매가격을 반영하여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단가 인상
  - ('98) 268만원/ha → ('00) 281만원/ha → ('03) 289만원/ha
- 매도이양에 대한 분할 지급형 직불제도 도입('04)
  - 매도이양시 ha당 연령에 따라 2~8년간 월 241천원씩 연금식으로 지급  
(임대이양시는 ha당 2,977천원 일시불 지급)
- 한미 FTA 보완대책으로 경영이양직불사업 확대 개편('09.1.6)
  - 신청대상 연령을 65~70세로 변경('09년도는 74세까지 포함)
  - 지급 대상농지를 농업진흥지역의 전·답·과수원, 진흥지역 밖의 경지 정리된 전·답·과수원까지 확대
  - 지급단가를 매도, 임대(임대수탁 포함) 구분 없이 ha당 월 250천원으로 하고, 지급기간은 이양연령에 따라 6~10년간 매월 지급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대통령령) 개정 ('09.1.6) 및 「시행규칙」(부령) 개정('09.1.9)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ha, 억원)

	사업규모 (ha)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 등			
합계	45,096	1,719						1,719
'05	8,278	286						286
'06	4,818	175						175
'07	2,000	113						113
'08	20,000	300						300
'09	10,000	845						845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ha, 억원)

	사업규모 (ha)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3,496	933						933
'05	7,267	221						221
'06	3,709	144						144
'07	2,345	113						113
'08	1,885	131						131
'09	8,290	324						324

※ 2009년도 시행계획과 실적 차이 사유

- '09년의 경우 제도개선을 하였으나, 재약정 실익이 없는 자의 재약정 포기, 고령농업인의 농지 소유의지 및 영농기계화 위탁영농 등 벼농사의 편리성 등으로 자경의지가 강하여 사업 참여 저조하였고, '08년도 제도개선 지연에 따른 경영이양 부진으로 '09분할지급 면적 감소하여 '09년 실적이 부진함

####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

- '09년도 성과지표(경영규모 3ha 이상 농가수 비율) 목표치인 7.46%를 100% 달성(실적 7.50%)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경영규모 3ha 이상 농가수 비율(%)	(경영규모 3ha 이상 농가수 /전체 농가수)×100	%	7.46	7.50	100.5

※ 89,603농가(경영규모 3ha 이상)/1,194,715농가(전체 농가수) : 2009년 농업조사 결과(통계청)

## 제2절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2-1-1-1(계속)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 (지자체/교육과학기술부)
-------------	------------------------------

담당부서	교육복지정책과	담당자	조홍선(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521	이메일	caohao@mest.go.kr

### 1. 사업목표

- 농산어촌에 우수 고등학교를 집중 육성하여 고등학교 단계에서 우수 인재의 도시유출 방지
-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농산어촌에서도 안심하고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반 조성 및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4~2009년
- 총사업비 : 62억원(09년도 사업비)
- 사업규모 : 41개 시군(郡) 지역 42교
- 지원형태 : 특별교부금
- 지원조건 : 특별교부금 지원액 이상의 자체 대응투자
- 사업시행주체 :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학교

###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교)	국비(억원)				지방비 (억원)	자부담 (억원)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69				233		1,347
'04	7					24		24
'05	14	61						61
'06	37	168				71		239
'07	73	240						240
'08	69					76		76
'09	72					62		62

※ 사업규모는 사업비 교부대상 학교와 성과우수학교의 수를 합산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교)	국비(억원)				지방비 (억원)	자부담 (억원)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69				233		1,347
'04	7					24		24
'05	14	61						61
'06	37	168				71		239
'07	73	240						240
'08	69					76		76
'09	72					62		62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산어촌 우수교 육성	학교 구성원 만족도	수혜자 만족도 조사	%	65%	73.38%	112.8%

2-1-1-4(계속)	한국농수산대학 개편 운영(농림수산식품부)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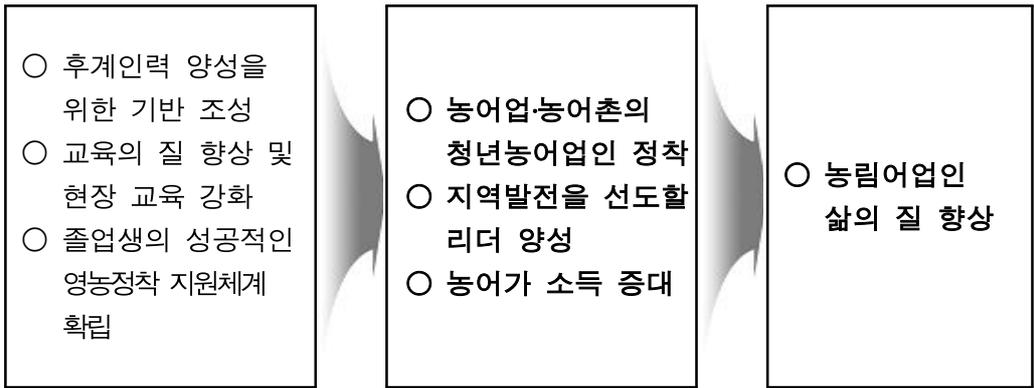
담당부서	한국농수산대학(기획실)	담당자	김영환
전화번호	031-229-5161	이메일	kim2006@korea.kr

### 1. 사업목표

- 농어업인구의 급감과 초고령화, 농수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우리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을 이끌어갈 후계농어업인력 양성
- 추진근거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법률 제9624호)」 및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757호)」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5년 ~ 2009년
- 사업량·사업비 : 840명 (240명×1학년, 300×2학년), 7,954백만원
- 사업주체 :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직접 수행)
- 추진내용



○ 사업추진체계

- 발전방안 마련 및 보완(T/F팀 운영) → 의견수렴(세미나, 공청회)  
→ 발전방안 보완 및 확정 → 추진 → 평가

###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차별 추진내용

- 1단계('05년) : 개편방안 마련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 2단계('06~'08년) : 학제·정규과정 개편, 직업훈련과정 시범 교육 실시, 학교 명칭변경, 시설 확충 등 개편 추진
- 3단계('09년) :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재설정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일반회계	기금등			
합계	3,600명	351			18			369
'05	720	62			6			68
'06	720	66			6			72
'07	720	68			6			74
'08	780			76	-			76
'09	840			79	-			79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일반회계	기금등			
합계	2,160명	196			14			210
'06	720	66			6			72
'07	720	68			2			70
'08	840			76				76
'09	840			79				79

#### 4. 성과목표 달성도

#####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한국농수산 대학 개편운영	졸업생 영농정착률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 보고서	%	95.0	99.6	104.8
-	졸업생 농가 평균소득률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 보고서	%	190	242.2	127.5

\* 졸업생 농가 평균소득률 = (졸업생 농가 평균소득/농가평균소득)×100

##### <한농대 졸업생 영농현황 분석>

- 조사대상 1,577명 중 영농유예자 129명을 제외한 **1,442명(99.6%)**이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2008년 대비 5.4% 높아짐
  - 졸업생 2,066명 중 학비상환자(예정자 포함) 113명, 학비지원조건 이행 면제자 24명이며 358명(1기~4기)이 학비지원조건 이행기간이 종료됨. 이행기간 종료자 중 294명(82.1%)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 <한농대 졸업생 농가소득 분석>

- 조사대상 졸업생 농가 1인당 평균 영농규모는 32,560㎡이며, 농가소득은 7,392만원으로 전년 7,085만원 보다 4.3% 증가
  - 졸업생의 소득 분포는 30백만원 이상이 전체의 71.7%이며 100백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졸업생도 전체의 23.5%
  - 전년대비 50백만원미만이 54.3%에서 48.0%로 낮아진 반면 50백만원이상 고소득 졸업생은 45.7%에서 52.0% 6.3% 늘어남
  - ※ 1억원이상 졸업생은 전년도 220명(17.%)에서 292명(23.5%)로 5.9% 늘어남

##### <졸업생 소득분포 비교(2007, 2008)>

구분	50백만원미만	50백만원이상	100백만원이상
2008	48.0	52.0	23.5
2007	54.3	45.7	17.6
차이	-6.3	6.3	5.9

2-1-2-8(신규)	군단위 소규모학교 통폐합 (교육과학기술부)
-------------	----------------------------

담당부서	교육복지정책과	담당자	조홍선(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521	이메일	caohao@mest.go.kr

### 1. 사업목표

- 군(郡) 지역 장기발전 계획과 연계된 학교 통폐합을 통해 소규모 학교를 적정규모로 재배치하고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력 강화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9년 ~ 2011
- 총사업비 : 619억원(국고 250억원, 특교 369억원)
- 사업규모 : 9개군
- 지원형태 : 국고 및 특별교부금
- 지원조건 : 100% 국고 및 특교 지원
- 사업시행주체 :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군)	국비(억원)				지방비 (억원)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일반회계	기금등			
합계	2		-	250	-	250	-	500
'09	2		-	250	-	250	-	500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군)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일반회계	기금등			
합계	9			250		353		603
'09	9			250		353		603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군단위 소규모학교 통폐합	선정된 대상 군	군 개수	개	2	9	450%

2-1-3-4(계속)	<b>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교육과학기술부)</b>
-------------	--------------------------------------

담당부서	학교선진화과	담당자	곽재규(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416	이메일	jaekyou@mest.go.kr

## 1. 사업목표

- 농산어촌 지역의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여 농산어촌 학생의 교육 기회 확대 및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 다양한 양질의 방과후 교육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만족도 제고 및 농산어촌 정주 여건 개선

## 2. 사업내용

- 사업 지원 대상 : 군 및 읍·면이 있는 도·농복합시 전체
- 사업 규모(사업량) : 140개 시·군 (86개 군 및 54개 도·농복합시)
  - \* 사업 연차별 지역수 : 3년차('06~)19개, 2년차('07~)70개, 신규('08~)51개
- 지원금액 및 형태 : 지방비 707억원\*
  - \*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제외 금액 (제주특별자치도는 별도기준에 의해 일괄 교부)
- 사업 주요내용
  - 농산어촌 지역은 지리적 여건, 학생 수 부족 등으로 수익자 부담에 의존한 방과후학교 운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강사비 또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컴퓨터, 문화·예술 등 특기·적성 교육을 위한 각종 기자재 및 학교 간 연계 프로그램을 위한 시설비·운영비 지원
  - 방과후 학교 업무 전담 계약직 인건비 지원 등

### 3. 연차별 추진계획

#### 〈'09년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 군(郡))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40	-	-	-	-	70,708,852	-	70,708,852
부산	1	-	-	-	-	835,861	-	835,861
대구	1	-	-	-	-	489,055	-	489,055
인천	2	-	-	-	-	271,016	-	271,016
울산	1	-	-	-	-	549,250	-	549,250
경기	15	-	-	-	-	4,168,436	-	4,168,436
강원	15	-	-	-	-	8,156,842	-	8,156,842
충북	11	-	-	-	-	6,969,810	-	6,969,810
충남	16	-	-	-	-	7,958,600	-	7,958,600
전북	13	-	-	-	-	6,961,959	-	6,961,959
전남	21	-	-	-	-	12,000,000	-	12,000,000
경북	23	-	-	-	-	13,378,123	-	13,378,123
경남	19	-	-	-	-	7,309,000	-	7,309,000
제주	2	-	-	-	-	1,660,900	-	1,660,900

#### 〈'09년도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40	-	-	-	-	70,708,852	-	70,708,852
부산	1	-	-	-	-	835,861	-	835,861
대구	1	-	-	-	-	489,055	-	489,055
인천	2	-	-	-	-	271,016	-	271,016
울산	1	-	-	-	-	549,250	-	549,250
경기	15	-	-	-	-	4,168,436	-	4,168,436
강원	15	-	-	-	-	8,156,842	-	8,156,842
충북	11	-	-	-	-	6,969,810	-	6,969,810
충남	16	-	-	-	-	7,958,600	-	7,958,600
전북	13	-	-	-	-	6,961,959	-	6,961,959
전남	21	-	-	-	-	12,000,000	-	12,000,000
경북	23	-	-	-	-	11,148,436	-	11,148,436
경남	19	-	-	-	-	6,900,250	-	6,900,250
제주	2	-	-	-	-	1,656,900	-	1,656,900

####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읍면이 있는 모든 시군(140개) 지원

- 농산어촌 학생들의 68.7%가 방과후학교 만족 (목표치 67%)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농산어촌 지역 수	시·도교육청이 방과후학교 운영을 지원한 기초자치단체 수	시·군	140	140	100
	농산어촌 지역의 방과후학교 만족도	농산어촌 지역 학생 만족도 조사 실시	%	67	68.7	102.5

2-1-3-6(신규)	<b>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육성 (교육과학기술부)</b>
-------------	-------------------------------------

담당부서	교육복지정책과	담당자	조홍선(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521	이메일	caohao@mest.go.kr

### 1. 사업목표

- 농산어촌 학교 학생에 대해 학기중·방학중·주말 등에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교육복지 지원 강화 및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도모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9년 ~2011년
- 총사업비 : 298억원(2009년 사업비)
- 사업규모 : 12개 시도(道)교육청 소속 85개 군지역 면소재 378교
- 지원형태 : 특별교부금
- 지원조건 : 특교 100% (10년부터 시도교육청 대응투자 30%)
- 사업시행주체 : 교육과학기술부, 12개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교)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78		-	-	-	298	-	298
'09	378		-	-	-	298	-	298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교)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78		-	-	-	298	-	298
'09	378		-	-	-	298	-	298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구성원 만족도	설문조사	%	70	72.8	104

2-1-4-2(계속)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지자체/교육과학기술부)
-------------	-------------------------------

담당부서	유아교육지원과	담당자	황종미(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444	이메일	mjh3339@mest.go.kr

### 1. 사업목표

- 서민 및 중산층, 다자녀 가정의 유아학비 부담 완화
- 저소득층 · 소외계층의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교육복지 실현

### 2. 사업내용

- 사업주체 :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 사업추진절차



- 사업내용
  - 지원기간 : 2009. 3 ~ 2010. 2(1년간)
  - 대상기관 : 전국 국·공·사립유치원, 유아교육위탁기관
  - 지원사업 : 만5세아 무상교육비, 만3·4세아 차등교육비, 두자녀 이상 교육비
  - 지원단가 : 국·공립 월 57천원 이내, 사립 월 191천원 이내

### 3. 연차별 추진계획

- 만5세아 무상교육은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도서·벽지 또는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유아 등을 우선 실시
- 만3·4세아는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까지 지원 대상 확대

### 〈'09년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국비(억원)				지방비(억원)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93,436			0.26		5,350		5,350.26
서울	29,254					584		584
부산	22,697					455		455
대구	17,095					348		348
인천	17,599					342		342
광주	9,177					177		177
대전	10,723					213		213
울산	7,828					150		150
경기	72,285					1291		1291
강원	8,942			0.03		130		130.03
충북	10,107			0.03		157		157.03
충남	11,454			0.2		180		180.2
전북	12,574					219		219
전남	13,485					200		200
경북	20,966					378		378
경남	29,250					518		518

### 〈'09년도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국비(억원)				지방비(억원)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87,721			0.17		4,631		4631.17
서울	27,284					506		506
부산	21,614					437		437
대구	16,254					318		318
인천	17,231					307		307
광주	9,132					177		177
대전	12,451					208		208
울산	7,196					137		137
경기	79,551					1040		1040
강원	10,017			0.02		122		122.02
충북	8,558			0.01		116		116.01
충남	9,063			0.14		146		146.14
전북	8,680					190		190
전남	12,683					148		148
경북	17,977					316		316
경남	27,339					423		423

### 4.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유치원 유아학비지원	유아학비 수혜율	만5세지원아동수/ 만5세취원아수	%	51.1	53.3	104.3
		만3~4세지원아동수/만3~4세 취원아수	%	48.1	53.7	111.6

2-1-4-4(계속)	농어촌지역 사립유치원교사 처우개선 (지자체/교육과학기술부)
-------------	-------------------------------------

담당부서	유아교육지원과	담당자	박병현(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444	이메일	stbbh@mest.go.kr

## 1. 사업목표

- 목적
  -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통한 지역간 양극화 해소
  - 농어촌 지역 교육의 제도적, 질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자녀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 구현
  - 교사의 질적 수준제고를 통한 유아교육의 학부모 만족도 제고
- 근거 : 「유아교육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 2. 사업내용

- 내용
  - 사업기간 : '07년 ~ 계속
  - 사업비 : 51억(지방비)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 및 30만 미만 도농복합도시지역  
사립유치원 학급담임교사
  - 사업 규모(사업량) : 약 3,887명('08. 12월 기준)
  - 지원금액 및 형태 : 학급담임수당 월 11만원
  - 지원조건 : 사립유치원 학급담임교사에게 지원
  - 사업 주요내용
    - 농어촌 지역·30만 미만의 도농복합지역에 소재하는 사립유치원 학급담임교사에게 담임수당 월 11만원 지원
- 사업추진주체 :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 사업추진절차 : 사업지원 기본계획 수립(시도교육청) → 세부추진 계획 수립 및 시행(지역교육청)

### 3. 연차별 추진계획

- 사업추진방향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충에 따라 '08년도부터 동 사업의 예산을 전액 지방비에서 충당

#### 〈'09년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				지방비 (천원)	자부담	합계 (천원)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887					5,130,840		5,130,840
부산	57					75,240		75,240
대구	73					96,360		96,360
인천	19					25,080		25,080
울산	125					165,000		165,000
경기	912					1,203,840		1,203,840
강원	359					473,880		473,880
충북	155					204,600		204,600
충남	307					405,240		405,240
전북	189					249,480		249,480
전남	355					468,600		468,600
경북	606					799,920		799,920

〈'09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천원)	자부담	합계 (천원)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021					5,190,468		5,190,468
부산								
대구	57					75,240		75,240
인천	73					96,360		96,360
울산	18					23,760		23,760
경기	0					0		0
강원								
충북	133					172,928		172,928
충남	912					1,203,840		1,203,840
전북	361					476,520		476,520
전남	152					167,200		167,200
경북	369					405,900		405,900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목표치 및 실적 : 목표치 100%, 실적 103%
  - 교육청에서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 일부 증액 반영(약 6천만원)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사립유치원교사 처우개선	계획대비 지원율	계획대비 지원 실적	%	100	103	103

2-2-1-0(계속)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지자체/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농촌사회과	담당자	박성우(서기관)
전화번호	02-500-1819	이메일	tengrps@korea.kr

### 1. 사업목표

- 도시에 비해 교육여건이 불리하고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업인에게 고교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 경감 도모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특별법 제23조(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86년 ~
- 지원대상 : 전국 농업계열 고등학교 자영농과 재학생
- 사 업 비 : 지방분권교부세 및 지방비에서 지원(지자체 사업)

### 3. 연차별 추진계획

〈 '09년도 시행계획 〉

- 지원인원 : 81,705명
- 지원금액 : 80,051백만원(지방비 100%)

〈 '09년도 추진실적 〉

-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규모 및 예산 증액

	사업규모 (명)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86,364	-	-	-	-	805.8	-	805.8
서울	42	-	-	-	-	0.6	-	0.6
부산	860	-	-	-	-	1.2	-	1.2
대구	672	-	-	-	-	10	-	10
인천	882	-	-	-	-	9	-	9
광주	223	-	-	-	-	3	-	3
대전	81	-	-	-	-	1	-	1
울산	756	-	-	-	-	9	-	9
경기	8,448	-	-	-	-	103	-	103
강원	5,750	-	-	-	-	46	-	46
충북	6,120	-	-	-	-	66	-	66
충남	13,119	-	-	-	-	112	-	112
전북	8,719	-	-	-	-	89	-	89
전남	14,031	-	-	-	-	126	-	126
경북	13,605	-	-	-	-	113	-	113
경남	9,500	-	-	-	-	81	-	81
제주	3,556	-	-	-	-	36	-	36

####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목표치 및 실적 : 목표치 100%, 실적 100.7%
  -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 예산 일부 증액 반영(계획 801억원, 실적 806억원, 5억원↑)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계획대비 지원율	계획대비 지원 실적	%	100	100.7	100.7

2-2-2-1(계속)	농산어촌 대학생 학자금 용자지원 (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농촌사회과	담당자	박성우(서기관)
전화번호	02-500-1819	이메일	tengrps@korea.kr

### 1. 사업목표

-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게 학자금 무이자 용자 지원을 통해 농어촌 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추진근거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4년 ~ 계속
- 총사업비 : -억원('09년까지 기투자액 : 3,583억원)
- 사업규모 : 농어촌 출신 대학생  
( '09까지 용자실적 : 333천명, 6,504억원)
-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농특회계)
- 지원조건 : 국고 100%
- 상환조건 : 졸업 후 1년 거치, 1학기 용자금을 1년 이내에 상환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

###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천 명)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9	1,939	-	-	-	-	-	1,939
'05	25	127	-	-	-	-	-	127
'06	25	483	-	-	-	-	-	483
'07	26	441	-	-	-	-	-	441
'08	26	413	-	-	-	-	-	413
'09	27	475	-	-	-	-	-	475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천 명)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2	1,939	-	-	-	-	-	1,939
'05	25	127	-	-	-	-	-	127
'06	25	483	-	-	-	-	-	483
'07	26	441	-	-	-	-	-	441
'08	27	413	-	-	-	-	-	413
'09	29	475	-	-	-	-	-	475

○ '09 추진실적

- 지원인원 : 당초 지원계획 27,000명보다 1,966명 많은 28,966명(7.3%증)
- 용자규모 : 당초 용자계획 900억원보다 29억원 많은 929억원(3.2% 증)  
용자 지원

###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산어촌 대학생 학자금 용자지원	수혜자 만족도	전문기관의 만족도 조사보고서	%	85.0	86.2	101.4

2-2-2-2(계속)	농어업 관련 대학생 장학금 지원(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농촌사회과	담당자	이태용(사무관)
전화번호	02-500-1813	이메일	llty@mifaff.go.kr

### 1. 사업목표

- 미래의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젊고 우수한 후계 농어업인 양성과 농어업인의 교육비 경감
- 사업추진 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 한국마사회법 제42조 4항(특별적립금은 농어업인 자녀 및 농어업 후계인력 장학사업 등에 대한 지원)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5 ~ 계속
- 사업비 : 5,993백만원('09년 집행기준)
- 사업규모 : 대학생 2,568명
- 지원재원 :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 사업시행주체 : KRA와 함께하는 농촌희망재단
- 추진내용
  - 지원대상
    - 후계인력양성장학금 : 농림수산계열 대학(교) 2학년 이상 재학생 중 농림수산업인의 자녀
    - 전문인력양성장학금 : 농림수산계열 대학(교) 2학년 이상 재학생 중 농림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생
    - 농어업인자녀장학금 : 전계열대학 2학년이상 재학생 중, 농림수산업인의 자녀

- 농어촌특별전형장학금 : 전문계(농수산계열) 고교출신자 특별전형,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으로 농림수산계열 학과 신입생
- 지원체계 : 재단(사업홍보 및 홈페이지 공고) → 대학생(대학에 장학금 신청서 제출) → 대학(장학금 지원 대상자 추천) → 재단(장학생 확정) → 재단(학교 통장에 장학금 입금) → 학교(학생 통장에 장학금 개별입금)
- 지원금액
  - 후계인력양성장학금 : 학기당 200만원
  - 전문인력양성장학금 : 학기당 150만원
  - 농어업인자녀장학금 : 년 300만원
  - 농어촌특별전형장학금 : 년 300만원

### 3. 연차별 추진계획

- 장학금 재원은 연차적으로 확대·인상
  - 장학금 재원 확대 : ('08) 53억원 → ('09) 60억원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 등			
합계	25,132				291			291
'05	4,232				32			32
'06	7,000				76			76
'07	6,500				70			70
'08	4,800				53			53
'09	2,600				60			60

\* 2005년은 하반기 기준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3,512				258			258
'05	4,259				31			31
'06	5,705				55			55
'07	6,167				61			61
'08	4,813				52			52
'09	2,568				59			59

####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지원인원은 98.8%, 지원금액은 99.9%로 계획에 다소 미달
  - 지원인원 : 계획 2,600명, 실적 2,568명
  - 지원금액 : 계획 6,000백만원, 실적 5,993백만원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업관련 대학생 장학금 지원	지원계획인원대비 지원실적	지원실적인원/계획인원 × 100	%	100.0	98.8	98.8
	지원계획금액대비 지원실적	지원실적금액/계획금액 × 100	%	100.0	99.9	99.9

※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전문인력양성 장학생」 대상자 미달에 따른 미집행 일부 발생

2-2-3-1(계속)	초·중·고학생 급식비 지원 (지자체/교육과학기술부)
-------------	---------------------------------

담당부서	학생건강안전과	담당자	박진욱(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543	이메일	park3412@mest.go.kr

### 1. 사업목표

- 농산어촌지역 학생들에게 학교급식비 지원확대로 학부모 부담경감
-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
- 사업추진 근거
  - 학교급식법 제8조 및 제9조, 동법시행령 제10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81년~계속
- 사업주체 : 시·도교육감
- 추진체계
  - 농산어촌 학생수 및 소요액 파악(시·도교육청) → 예산확보 및 사업시행 준비(시·도교육청) → 예산지원(시·도교육청 → 지역교육청 → 학교) → 사업시행(학교)
- 추진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산어촌지역 초·중·고등학생
  - 사업 규모(사업량) : 821천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연간 1,361억원, 지방교육비 100%
  - 사업 주요내용 : 급식비 전부 또는 일부 지원(연간 180일)

### 3. 연차별 추진계획

- '12년까지 농산어촌학생 전원에게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를

단계적으로 전액(1식당 2,100원) 지원 추진

〈'09년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807,992					992		992
서울	-					-		-
부산	6,087					7		7
대구	2,364					1		1
인천	14,754					34		34
광주	1,116					1		1
대전	603					2		2
울산	27,303					16		16
경기	179,377					318		318
강원	44,328					27		27
충북	39,706					62		62
충남	86,519					148		148
전북	106,897					225		225
전남	66,061					69		69
경북	117,298					43		43
경남	104,769					33		33
제주	10,810					6		6

〈'09년도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821,056					1,361		1,361
서울	-					-		-
부산	5,488					6		6
대구	13,452					7		7
인천	14,906					53		53
광주	-					-		-
대전	585					2		2
울산	25,809					1,6		1,6
경기	244,790					398		398
강원	48,145					48		48
충북	37,991					66		66
충남	88,122					153		153
전북	56,757					213		213
전남	61,850					109		109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경북	134,473					51		51
경남	78,559					233		233
제주	10,129					6		6

#### 4. 성과목표 달성도

- 농산어촌지역 학생에게 급식비 지원 확대(목표 : 992억, 실적 : 1,361억원)
- 생활환경이 열악한 농산어촌지역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 및 학부모 부담경감을 위해 노력한 결과 당초 목표(992억원) 대비 137%(1,361억원)초과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초·중·고 학생 급식비 지원	초·중·고 학생 급식비 지원	지원액	억원	992	1,361	137

2-2-3-2	<b>자영농업계고 급식비 지원 (지자체 /농림수산식품부)</b>
---------	-----------------------------------------

담당부서	농촌사회과	담당자	박성우(서기관)
전화번호	02-500-1819	이메일	tengrps@korea.kr

### 1. 사업목표

- 자영농과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젊고 유능한 농업 전문 인력의 농촌정착을 유도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특별법 제23조(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86년 ~
- 지원대상 : 전국 농업계열 고등학교 자영농과 재학생
- 사 업 비 : 지방분권교부세 및 지방비에서 지원(지자체 사업)

### 3. 연차별 추진계획

〈 '09년도 시행계획 〉

- 지원인원 : 2,707명
- 지원금액 : 2,292백만원

〈 '09년도 추진실적 〉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696	-	-	-	-	20	7.9	27.9
서울	-	-	-	-	-			
부산	-	-	-	-	-			
대구	-	-	-	-	-			
인천	-	-	-	-	-			
광주	-	-	-	-	-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대전	-	-	-	-	-			
울산	-	-	-	-	-			
경기	420	-	-	-	-	5	5	10
강원	370	-	-	-	-	3	-	3
충북	294	-	-	-	-	1	1	2
충남	250	-	-	-	-	1	0.2	1.2
전북	277	-	-	-	-	2	-	2
전남	420	-	-	-	-	2	0.4	2.4
경북	225	-	-	-	-	2	0.4	2.4
경남	220	-	-	-	-	3	0.7	3.7
제주	220	-	-	-	-	1	0.2	1.2

- 어려운 경제여건과 농업계 고등학생들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지자체에서 관련 예산 증액

####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목표치 및 실적 : 목표치 100%, 실적 121.7%
  -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 예산 일부 증액 반영(계획 2,292억원, 실적 2,790억원, 498억원↑)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자영농업계고 급식비	계획대비 지원율	계획대비 지원 실적	%	100	121.7	121.7

2-2-3-2(계속)	수산계고교(자영수산과) 급식비 지원 (지자체/농림수산식품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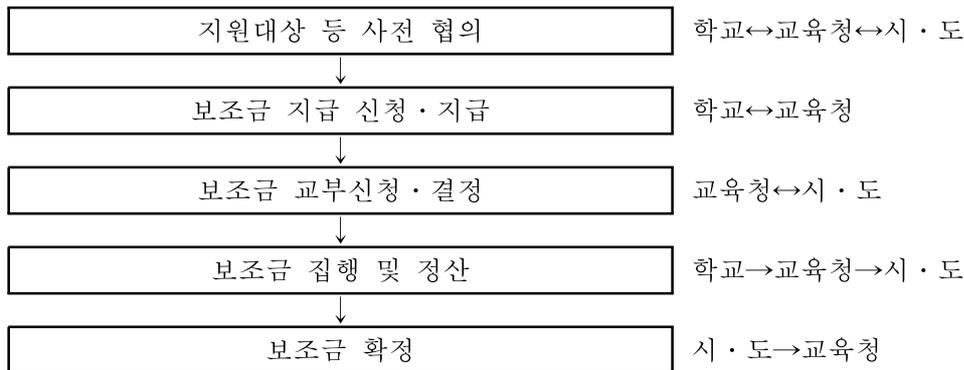
담당부서	수산개발과	담당자	정동기(사무관)
전화번호	02-500-2331	이메일	tengrps@korea.kr

### 1. 사업목표

- 농어촌에 정착하여 수산업과 어촌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 나갈 우수한 수산인력의 조기양성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87년~계속
- 사업주체 : 시·도
- 추진체계



- 추진내용
  - 사업지원대상 : 자영수산과가 설치된 수산계고교 재학생
  - 사업규모(사업량) : 4개고교(재학생)
  - 지원금액 및 형태 : 360백만원(지방비50%, 교육부 30%, 자담20%)

### 3. 연차별 추진계획

- 수산업을 합리적으로 자영할 수 있는 우수한 어업후계인력을 육성하고, 이들의 어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수산계고등학교 자영수산학과 학생의 식비 일부를 보조

#### 〈'09년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개교/582명					168	168	336
충남도	1개교/69명					27.5	27.5	55
전남도	2개교/408명					98.5	98.5	197
경북도	1개교/105명					42	42	84

#### 〈'09년도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개교/713명					180	180	360
충남도	1개교/77명					27.5	27.5	55
전남도	2개교/531명					110.5	110.5	221
경북도	1개교/105명					42	42	84

###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목표(582명)/실적(713명)
  - 전남도의 신입생 증가로 목표대비 122.4%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자영수산계고 급식비 지원	급식비지원 인원 수	지원계획 대비 실적	%	582명	713명	122

2-2-4-2(계속)	<b>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 (교육과학기술부)</b>
-------------	------------------------------------

담당부서	특수교육지원과	담당자	박성우
전화번호	02-2100-6562	이메일	dream24@mest.go.kr

### 1. 사업목표

- 특수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 가정·시설 및 일반학교의 일반 학급에 배치되어 있는 장애학생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확대
- 지역 중심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시범운영으로 향후 순회교육 및 일반 유치원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원 확대

### 2. 사업내용

- 순회교육 대상자 및 특수학급 학생 추가 교육지원(학교 수업시간 이외 별도 시간을 편성하여 특수교육 지원)
- 지역사회 장애인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 가족 상담
-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진단·평가 지원
- 미취학 특수교육대상학생 발견 정보 관리

###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449명					299		299
'08	572명					111		111
'09	877명					188		188
'10	-	-	-	-	-	-	-	-

※ 사업기간 종료에 의해 '10년도 추진계획 해당 없음

####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교수·학습활동 지원 전담인력 배치 확대

※ 전담인력 : '05년 48명→'06년 161명→'07년 272명→'08년 572명→'09년 877명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배치	전담인력 배치 수	명	877	877	100

2-3-2-1(계속)	농산어촌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교육과학기술부)
-------------	-----------------------------------

담당부서	교직발전기획과	담당자	정근목(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461	이메일	samgadaj@mest.go.kr

### 1. 사업목표

- 농산어촌학교 소속 교원 중 업무가 가중되는 순회교원 및 복식수업담당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농산어촌 근무기피 문제 완화 도모

### 2. 사업내용

- 재원형태 : '06 ~ '07년(국고 100%), '08년부터(지방비 100%)
- 사업주체 : 시·도교육청
- 수혜자 : 농산어촌의 순회교원 및 복식수업 담당 교원
- 사업추진 절차 : 순회교원 및 복식수업수당 담당교원 파악(시·도교육청) → 세부추진계획 수립(시·도교육청) → 예산배정 및 수당 지급(시·도교육청)
- 사업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농산어촌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순회교사 및 복식수업 담당교사
  - 지급금액 및 시기 : 교사 1인당 월 50,000원을 보수지급일에 지급
    -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2조에 의하여 도서벽지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월 30,000원 지급
  - 지원조건
    - 순회교원 수당 : 농산어촌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겸임 근무를 받아 2개 이상의 학교를 순회 근무하는 교원
    - 복식수업 수당 : 농산어촌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중 소규모

학교에서 학년별 학급편성이 곤란하여 2개 학년 이상의 학생들을 1개 학급으로 편성하여 수업하는 복식학급 담당교원 또는 근무처 구분없이 겸임근무를 명받아 농산어촌에서 실제로 복식수업을 하는 교원

### 3. 연차별 추진계획

〈'09년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291					2,757		2,757
부산	12					5		5
대구	30					18		18
인천	57					21		21
광주	33					18		18
울산	22					11		11
경기	613					352		352
강원	582					275		275
충북	444					264		264
충남	509					352		352
전북	580					334		334
전남	1,273					631		631
경북	311					187		187
경남	612					167		167
제주	213					122		122

- ※ 농산어촌 순회교사수당 및 복식수업수당은 '07년도까지는 국고(농특회계)에서 지원되었으나, 농특회계 지원 중단으로 '08년부터는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자율적으로 추진
- 수용계획에 의거 매년 학급편성에 따라 순회교사 및 복식수업 담당교사 수요 변경

〈'09년도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291					2,757,835		2,757,835
부산	12					5,280		5,280
대구	30					17,800		17,800
인천	57					21,460		21,460
광주	33					18,500		18,500
울산	22					11,000		11,000
경기	613					351,990		351,990
강원	582					274,978		274,978
충북	444					263,643		263,643
충남	509					351,940		351,940
전북	580					334,350		334,350
전남	1,273					631,100		631,100
경북	311					186,614		186,614
경남	612					166,900		166,900
제주	213					122,280		122,280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산어촌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수당지급 교원수	수당지급인원/수당 지급대상인원×100	%	5,351	5,351	100

2-3-3-2(계속)	<b>학교도서관 및 장서 확충 (교육과학기술부)</b>
-------------	------------------------------------

담당부서	학교선진화과	담당자	정일형(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309	이메일	ihjeong@mest.go.kr

### 1. 사업목표

- 교육 및 문화 시설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학교도서관 기본 장서를 개선함으로써
  - 자료·탐구 중심의 교수/학습 활동이 가능케하여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함양

### 2. 사업내용

- 사업 지원대상
  - 학생수 200명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100명 이하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대상학교 제외
  - 농산어촌 학교도서관 사업은 군지역, 도·농 복합시의 읍·면 이하 지역
- 사업 규모(사업량) : 각 시·도교육청이 결정
- 지원조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비) 100%,
  - ※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총액으로 교부하며 교과부에서 별도 조건 설정 불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
- 사업 주요내용
  - 농산어촌 학교도서관 기본 장서 확충 지원

### 3. 연차별 추진계획

총사업비 (억원)	'07년까지	'08년	'09년	'10년	'11년	'12이후
498	126	2.5	-	-	-	-

#### 〈'09년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72,633					72,633		72,633
부 산	5,567					5,567		
대 구	4,335					4,335		
인 천	5,859					5,859		
광 주	2,624					2,624		
대 전	1,670					1,670		
울 산	1,751					1,751		
경 기	16,602					16,602		
강 원	2,779					2,779		
충 북	2,866					2,866		
충 남	4,106					4,106		
전 북	3,300					3,300		
전 남	6,323					6,323		
경 북	7,486					7,486		
경 남	5,781					5,781		
제주	1,584					1,584		

#### 〈'09년도 추진실적〉

- 시·도 교육청은 광역자치단체의 학교도서관 지원비에 대응하여 당해 연도 사업예산에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경비를 편성·지원하고 있음

※ 매년 학교기본운영비의 3%이상을 자료구입비로 반영토록 교육청에 권고

- 따라서 현재 농산어촌 학교도서관 및 장서확충 사업에 대한 지원 학교는 파악할 수 없으며 대신 시·도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학교기본운영비 중 학교도서관 장서 구입비에 대한 현황을 추진실적으로 대신함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72,633					72,633		72,633
부 산	5,567					5,567		
대 구	4,335					4,335		
인 천	5,859					5,859		
광 주	2,624					2,624		
대 전	1,670					1,670		
울 산	1,751					1,751		
경 기	16,602					16,602		
강 원	2,779					2,779		
충 북	2,866					2,866		
충 남	4,106					4,106		
전 북	3,300					3,300		
전 남	6,323					6,323		
경 북	7,486					7,486		
경 남	5,781					5,781		
제주	1,584					1,584		

※ 농산어촌 학교도서관 및 장서확충 사업은 농특회계 지원 중단으로 '08년부터는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자율적으로 추진

####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학교도서관 장서확충	학교도서관 장서확충	학교도서관 장서 구입비	백만원	72,633	72,633	100

2-3-3-3(계속)	기숙형고교 지정·추진 (교육과학기술부)
-------------	--------------------------

담당부서	학교제도기획과	담당자	김상규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456	이메일	ksk9420@mest.go.kr

## 1. 사업목표

- 국정과제 ‘다양하고 좋은 학교 더 만들기’의 세부과제로 추진
- 농산어촌, 도농복합도시 등 교육 낙후지역에 2011년까지 기숙형 고교 150개교\*를 선정하여 기숙사 시설 지원

\* ('08년)82교 → ('09년)68교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8년 ~ 2011년
- 총사업비 : ('08년)3,173억원, ('09년)2,400억원
- 사업규모 : 기숙형고교 150개교 선정
- 지원형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지원조건 : 시·도교육청 대응투자 50%
  - ※ 사립의 경우 학교법인의 대응투자 포함
- 사업시행주체 : 교육과학기술부

###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50					5,573		5,573
'05								
'06								
'07								
'08	82					3,173		3,173
'09	68					2,400		2,400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173		3,173
'05								
'06								
'07								
'08	82					3,173		3,173
'09	68							'10년 지원

###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기숙형고교 지정·육성	기숙형고교 지정	학교 수	개소	68	68	100

2-3-3-4(신규)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 (교육과학기술부)
-------------	---------------------------

담당부서	교육복지정책과	담당자	조홍선(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521	이메일	caohao@mest.go.kr

### 1. 사업목표

- 농산어촌 지역의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자연과 첨단이 조화된 교육환경 조성, 우수인력 배치,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학교 교육력 제고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9년 ~2011년
- 총사업비 : 790억원(2009년 사업비)
- 사업규모 : 9개 도(道)교육청 소속 도농복합시 및 군 지역 면소재 초 77교, 중 33교
- 지원형태 : 특별교부금
- 지원조건 : 특별교부금 100%
- 사업시행주체 : 교육과학기술부, 9개 도(道)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교)	국비(억원)				지방비 (억원)	자부담	합계 (억원)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0		-	-	-	790	-	790
'09	110		-	-	-	790	-	790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억원)	자부담	합계 (억원)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0		-	-	-	790	-	790
'09	110		-	-	-	790	-	790

- 공모를 통해 농산어촌 전원학교 110교 선정(초 77, 중 33), 790억원 교부('09.7)

※ 학교 여건에 따라 시설비 지원, 프로그램비 지원 등 유형별로 3년간 차등 지원

###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	구성원 만족도	설문조사결과	%	70	89.9	128.4

## 제3절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



3-1-1-0(계속)	지역개발 전문인력 육성 및 저변 확대(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농촌사회과	담당자	하지은(사무관)
전화번호	02-500-1821	이메일	jeeha@korea.kr

## 1. 사업목표

- 지역리더, 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 상향식 사업을 주도하는 사업 주체의 능력배양을 통해 지역개발사업을 주도할 전문인력 육성
  - 농촌지역개발 주체의 인적역량 강화를 통해 도농교류·농촌지역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도모
- 추진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및 제38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내지 제20조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5부터 계속
- 사업추진방향
  -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리더, 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 교육대상자별로 수준에 맞는 교육 시행
  - '09년 시행된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모니터링을 통해 시행 결과를 검토하여 향후 사업 발전방향 도모
- 사업추진주체 : 한국농어촌공사(도농교류센터)

- 사업추진절차
  - 기본계획 수립(농식품부) → 시행계획 수립(한국농촌공사) 및 승인(농식품부) → 세부사업 추진 및 결과보고(한국농촌공사) → 사업비 정산(농식품부)
- 사업 주요내용
  - 지역리더, 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 농촌지역개발사업 주체를 대상으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교육 시행
    - 도농교류 · 농촌지역개발 리더십육성과과정, 동기화과정, 사업 주체별 특화과정 등 총 3개 과정, 14개 모듈 운영
  - 교육과정별 결과정리 및 토론발표를 통한 모니터링, 전문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문가 특강 및 과정설계 자문 실시

###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차별 추진 내용
  - 1단계('05~'08) : 기반구축
    - 교육프로그램 개발 · 운영
    - 교육지원(학적관리 · 인재뱅크) 시스템 구축 · 운영
    - 표준교재 I · II 개발 · 보급
    - 농촌지역개발 컨설팅 업체 DB 구축
  - 2단계('09~'11) : 성장기
    - 도농교류촉진법 시행으로 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 도입
    - 교육 수요자의 니즈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세분화
  - 3단계('12이후) : 안정기
    - 인증교육기관 등을 활용한 교육의 다양화 · 활성화 지원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0,017	51.32						51.32
'05	1,322	2.57						2.57
'06	2,000	8.10						8.10
'07	3,452	8.50						8.50
'08	4,323	9.55						9.55
'09	5,720	12.30						12.30
'10	3,200	10.30						10.30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6,864	40.88						40.88
'05	1,322	2.57						2.57
'06	2,258	8.10						8.10
'07	7,618	8.50						8.50
'08	7,326	9.55						9.55
'09	8,340	12.16						12.16

##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
- '09년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 교육은 교육 이수 인원으로 달성도 측정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촌지역개발 인력양성	교육 인원	교육 이수 인원	명	5,720	8,340	146

3-2-1-1(계속)	농촌마을종합개발(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이승한(주무관)
전화번호	02-500-1806	이메일	rooki719@korea.kr

## 1. 사업목표

-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쾌적한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 및 도·농균형발전 도모
- 사업추진 기본방향
  - 동일한 생활권·영농권이 같은 1개 법정리 이상의 발전 잠재력이 있는 마을들을 상호 연계하여 소권역 단위로 개발
  - 지역주민과 지역내 관련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개발
  - 농촌지역을 전원생활·여가휴양·자연환경보전공간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원적 기능을 확충
  - 지역의 잠재자원을 특성화하여 소득증대를 통한 자립기반 구축
  - 지역별 특성을 살려 여건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특성화 개발
  -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농촌다움을 유지·보전하는 친환경적인 개발
  - 권역별로 권역발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계획적 개발
  -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인센티브와 페널티제도 도입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4 ~ 2017
- 총사업비 : 64,828억원 (국고 45,912, 지방비 18,916)
  - 농촌지역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1,000개 권역 추진
  - 권역당 5년간 40~70억원 범위내 지원(국고 70%, 지방비 30%)
    - ※ 권역의 크기, 가구수 등 권역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추진현황 : '09까지 221개 권역 선정 및 기본계획 완료  
'05년 착수권역 36개 권역 준공 완료
- 사업근거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에관한특별법 제 38조에 의해서 계획, 농어촌정비법 제 52조내지 제 71조를 준용하여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 · 군수
- 사업추진절차 : 예비계획설작성(주민)→사업신청(주민, 시·군, 시·도)  
→타당성조사(농식품부)→기본계획안 작성(시·군, 농어촌공사)→기본계획수립(시·군, 시·도)→시행 계획수립(시·군, 시·도)→사업시행(시·군)→준공 (시·도)
- 사업내용 : 지역의 잠재자원을 발굴·활용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확충, 지역사회유지를 위한 인구유치 및 지역혁신을 위한 지역역량강화 등 종합정비
  - 마을경관개선 : 마을소공원, 담장정비, 마을숲 정비, 빈집 철거 등
  - 기초생활시설 : 마을내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교량 등
  - 소득기반시설 : 농산물가공시설, 공동집하시설, 공동판매장 등
  - 지역역량강화 : 컨설팅, 마케팅, 주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 3. 연차별 추진계획

- '09년까지는 신규 사업량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05년 36개, '06년 20개, '07년 40개, '08년 40개, '09년 40개)하여 176개 권역을 착수할 계획
- '10년도 확대 추진('10년도 45권역 착수, 80권역 선정)
- '10년부터 지자체에 업무 대폭 이양(포괄보조)
  - 농식품부 : 예산확보, 대상지역 선정, 모니터링, 성과평가, 제도개선
  - 지자체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사업시행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21	306	6,205	-	-	2,161	-	8,672
'05	36	61	428	-	-	107	-	596
'06	20	33	434	-	-	109	-	576
'07	40	62	669	-	-	167	-	898
'08	40	60	1,263	-	-	316	-	1,639
'09	40	68	1,672	-	-	717	-	2,457
'10	45	22	1,739	-	-	745	-	2,506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76	284	4466	-	-	1,416	-	6,166
'05	36	61	428	-	-	107	-	596
'06	20	33	434	-	-	109	-	576
'07	40	62	669	-	-	167	-	898
'08	40	60	1,263	-	-	316	-	1,639
'09	40	68	1,672	-	-	717	-	2,457

####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09년까지 176개 권역('05년 36개소, '06년 20, '07년40, '08년 40, '09년 40)을 착수하여 목표를 100% 달성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단계평가('09.11)를 실시하여 '07년도 착수 권역(40개) 주민(2,085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6.2%가 사업추진에 대한 만족을 나타내어 목표치 초과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착수율	{누계 착수권역수 /1,000(목표권역수)}	%	17.6	17.6	100
	주민 만족도	만족도 조사	%	80	96.2	120

<b>3-2-1-2(계속)</b>	<b>어촌종합개발사업(농림수산식품부)</b>
--------------------	--------------------------

담당부서	수산개발과	담당자	송경석(주무관)
전화번호	02-500-2330	이메일	kssong@mifaff.go.kr

**1. 사업목표**

- 낙후어촌의 정주생활환경 개선 및 수산업 생산기반시설 지원 등으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 사업추진 근거 : 어촌어항법 제9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4년 ~ '13년
- 총사업비 : 8,795억원 ('08년까지 기 투자액 6,008억원)
- 사업규모 : 230개 권역('08년까지 160권역 완료, 14개 권역 계속)  
[1단계('94~'07) : 160권역, 2단계('07~'13) : 70권역]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 국비70%, 지방비25%, 자담5%  
※ '08년까지 국고보조 80%, 지방비 20%<자담포함>
- 사업시행주체 : 시·도지사(시·군·구)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권역)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6(16)		1,340			345	32	1,717
'05	1(17)		254			71	3	328
'06	17		309			73	4	386
'07	(24)		286			67	4	357
'08	8(12)		310			69	9	388
'09	10(13)		181			65	12	258

\* ( )내는 계속사업 권역수임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권역)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6(16)		1,330			341	32	1,703
'05	1(17)		254			71	3	328
'06	17		309			73	4	386
'07	(24)		286			67	4	357
'08	8(12)		310			69	9	388
'09	10(13)		171			61	12	244

\* ( )내는 계속사업 권역수입

####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성과지표 : 연평균어가소득증가율, 사업권역내 주민만족도

\* '09사업계획 : 23개 권역(계속사업 13개 포함), 181억원 지원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어촌종합개발	사업권역내 주민만족도	기준년도대비	%	67	67.9	101
	연평균어가소득증가율	기준년도대비	%	3.3	5.3	161

\* 어촌·어항 개발사업 만족도 조사용역(한국어촌어항협회, 2009.12.29일 완료)

3-2-1-3(계속)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산림청)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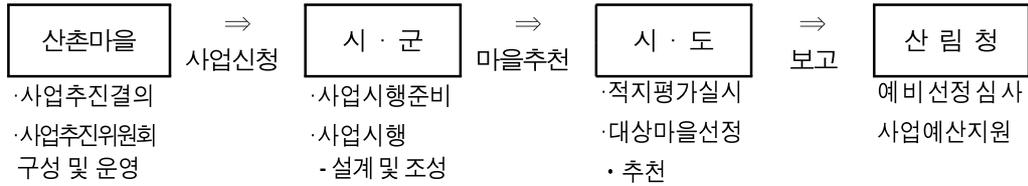
담당부서	산림휴양등산과	담당자	송영림
전화번호	042-481-4122	이메일	kny1209@forest.go.kr

## 1. 사업목표

- 사업목표
  -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산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
- 사업추진 근거
  - 「산림기본법」 제8조, 제29조 및 제30조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7조 및 제29조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5년 ~ 계속
- 지원형태 : 국비 70%, 지방비 30%(※ 설계비는 전액 국비 지원)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 사업 내용
  - 사업지원대상 :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산촌마을
  - 사업규모 : 99개 산촌생태마을 조성('09년까지 204개소)

- 지원금액 : 마을당 10~16억원
- 지원조건
  - 소득 수준이 낮고 생산기반 및 생활환경정비가 시급한 산촌마을
  - 선정마을의 대표자 및 주민들의 사업추진의욕과 참여도가 높은 마을
    - ※ 타 개발계획 개발예정지, 지가가 높아 수년 내 개발예상 지역 등은 제외
- 사업 주요내용 : 주민역량강화 사업, 산림자원을 활용한 생산소득 및 산촌체험사업, 생활환경개선사업 등 지원
- 시도별 배분내역('09년 산촌생태마을 개소수)

(단위 : 개소수)

구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99	4	24	12	12	11	12	16	8
사전설계	30	1	9	4	3	-	6	5	2
마을조성(1년차)	36	3	8	4	5	4	4	5	3
마을조성(2년차)	33	-	7	4	4	7	2	6	3

###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회계	군특회계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50	-	102,152	-	-	39,737	-	141,889
'05	45	-	14,539	-	-	5,825	-	20,364
'06	53	-	18,306	-	-	7,377	-	25,683
'07	66	-	21,097	-	-	8,294	-	29,391
'08	87	-	22,790	-	-	8,602	-	31,392
'09	99	-	25,420	-	-	9,639	-	35,059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50	-	102,152	-	-	39,737	-	141,889
'05	45	-	14,539	-	-	5,825	-	20,364
'06	53	-	18,306	-	-	7,377	-	25,683
'07	66	-	21,097	-	-	8,294	-	29,391
'08	87	-	21,424	-	-	8,602	-	30,026
'09	99	-	26,786	-	-	9,639	-	36,425

####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산촌생태마을 조성수 : '09년 성과지표 목표치 30개소 조성 완료
- 산촌주민 만족도 : 외부기관 용역결과 목표치(86점) 초과 달성(88.56)
- 산촌마을 소득증가율 : 외부기관 용역결과 목표치(9.5) 초과 달성(9.62)
  - 산촌주민 만족도 : 계획 대비 3.0% 증, 전년 대비 3.3% 증
  - 산촌마을 소득증가율 : 계획 대비 1.3% 증, 전년 대비 4.6% 증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산촌생태마을 조성	산촌생태마을 조성수	도의 실적보고서	개소	30	30	100
	산촌주민 만족도	외부기관 용역	점	86	88.56	103
	산촌마을 소득증가율	"	%	9.5	9.62	101

3-2-2-1	소도읍 육성사업 (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지역발전과	담당자	노형수
전화번호	02-2100-3798	이메일	sh2988@korea.kr

### 1. 사업목표

- 사업추진 근거 :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11조(예산에의 계상)
- 사업목표 : 누구나 살고 싶은 정주공간, 농산어촌 활성화 거점, 도시와 농촌의 가교로서 지역균형발전 선도지역으로 육성
  - 읍을 경제·사회·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중추소도시로 육성
  - 특성화·전문화를 통한 읍지역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농산어촌지역 활성화거점으로 육성,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2. 사업내용

- 개요
  - 사업기간 : 2003 ~ 2012년(10년간)
  - 총사업비 : 12조원 (국비 2조, 지방비 2조, 타부처 국비·민자 등 8조)
  - 대상지역 : 전국 194개 읍지역('01. 11. 9 지정·고시)

계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4	1	2	1	4	23	24	13	22	14	30	34	19	7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지원조건 : 정액지원(지방비부담 50%)
- 지원형태 : 지자체 자본보조(1개읍당 4년간 100억원 지원)
  - ※ 1개읍에 4년간 균특 50억원(5억, 10억, 15억, 20억), 보통교부세 50억원 분할 지원
- 추진절차 : 전국 194개 소도읍중 매년 상향식공모제로 선정 추진

사업계획수립 지침시달(행안부)→사업계획 수립(시·군)→1차심사후  
추천(시·도)→추천지역 심사·사업대상지 최종 확정(행안부 중앙  
소도읍선정심의위원회)→협약체결(행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사업추진(시·군)→성과평가 실시(매년, 사업종료후)→feedback

### 3. 연차별 추진계획 - 92개읍 1조 7,688억원 투자

- '03년도 : 14개소도읍, 962억원 투자
  - 재원 : 증액교부금 150, 특별교부세 150, 지방비 453, 기타209
- '04년도 : 36개 소도읍, 2,976억원 투자('03.14개+'04.22개)
  - 재원 : 증액교부금 300, 특별교부세 300, 지방비 1,237, 기타1,139
- '05년도 : 43개 소도읍, 3,245억원 투자('03.14개+'04.22개+'05.7개)
  - 재원 : 균특회계 437, 보통교부세 437, 지방비 1,303, 기타1,068
- '06년도 : 66개 소도읍, 4,012억원 투자('03.14개+'04.22개+'05.7개+'06.23개)
  - 재원 : 균특회계 617, 보통교부세 617, 지방비 1,709, 기타1,069
- '07년도 : 58개 소도읍, 3,932억원 투자('04.22개+'05.7개+'06.23개+'07.6개)
  - 재원 : 균특회계 677, 보통교부세 907, 지방비 1,791, 기타 557
- '08년도 : 56개 소도읍, 2,561억원 투자('05.7개+'06.23개+'07.6개+'08.20개)
  - 재원 : 균특회계 464, 보통교부세 694, 지방비 1,220, 기타 183
- '09년도 : 55개 소도읍, 4,078억원 투자('06.23개+'07.6개+'08.20개+'09.6개)
  - 재원 : 균특회계 551, 보통교부세 953, 지방비 1,995, 기타 579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35개소		3,351	3,728		9,228	3,516	19,823
'05	43		437	437		1,303	1,068	3,245
'06	66		617	617		1,709	1,069	4,012
'07	58		677	907		1,791	557	3,932
'08	56		464	694		1,220	183	2,561
'09	55		551	953		1,995	579	4,078
'10	57		605	120		1,210	60	1,995

※ '09까지는 확정된 계획, '10년 이후는 향후 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23개소		2,195	2,655		6,023	2,877	13,750
'05	43		437	437		1,303	1,068	3,245
'06	66		617	617		1,709	1,069	4,012
'07	58		677	907		1,791	557	3,932
'08	56		464	694		1,220	183	2,561
'09	55		551	953		1,995	579	1,995

#### 4. 성과목표 달성도

##### ○ 지표정의

- 지방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한 목표대비 집행실적(개별사업별 공정률)

※ 55개 소도읍, 163개 사업

○ 사업현황/목표치 : 55개 소도읍, 1,995억원/공정률 95% 이상('09년95%)

##### ○ 추진실적 분석

- 행정절차이행으로 착공이 늦은 6개사업을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완료되어 **9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음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소도읍육성사업	단위사업 공정률	공정률 산정	%	95	97.5	102.6

#### 〈 근거자료 〉

(단위 : 건, %)

시도별	계	미착수	실 계		착 공	공사중	완 공	공정률(%)
			설계중	완료				
계	163					6	156	97.5
부 산	5						5	
대 구	4						4	
경 기	19						19	
강 원	30					5	26	
충 북	10						10	
충 남	12					1	11	
전 북	12						12	
전 남	23						23	
경 북	29					2	27	
경 남	16						16	
제 주	3						3	

※ 실적산식 : (설계중×10%)+(설계완료×20%)+(착공×30%)+(공사중×50%)+(준공×100%) / 사업건수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이승환(주무관)
전화번호	02-500-1807	이메일	rooki719@korea.kr

## 1. 사업목표

- 면소재지의 생활편의·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들의 정주서비스기능의 충족과 농어촌지역의 중심공간으로 육성 도모
- 사업추진 기본방향
  -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지역특색을 살린 발전 추구
    - 지역특성을 살린 핵심 테마 발굴로 명소화 추진
  - 면소재지 발전계획(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지원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효과 조기 구현
    - 타 부문에서 지원되는 관련 연관사업을 발굴하여 연계추진
  - 지자체의 능동적 조정을 통해 분산 추진되는 각 부처 사업·시책을 종합적·유기적 연계체계 구축
    - 중앙정부, 지자체, 주민, 전문가 등의 협력적 파트너십 중시
  - 지역이 주체가 되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개발
    - 공모를 통하여 성공모델을 창출·확산할 수 있는 지역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7~2017
- 총사업비 : 14,240억원(국고 10,042, 지방비 4,198)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거점면소재지 중심마을을 대상으로 200개 권역 우선 추진(투자계획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포함)
  - 권역당 3년간 70억원 범위내 지원(국고70%, 지방비30%)
- 추진현황 : '09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총 8개 권역 선정, 기본계획 완료 및 착수
- 사업근거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에관한특별법 제38조에 의해서 계획, 농어촌정비법 제52조내지 제 71조를 준용하여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 예비계획서작성 → 사업신청신청(시·군, 시·도) → 타당성조사(농식품부) → 사업대상지 선정(농식품부) → 기본계획안 작성(시·군, 농어촌공사) → 기본계획수립(시·군, 시·도) → 시행계획수립(시·군, 시·도) → 사업시행(시·군) → 준공(시·도)
- 사업내용
  - 생활편익, 문화·복지, 경관개선, 상권활성화 등 거점지역으로 면소재지의 서비스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시설위주로 지원
    - 생활편익시설 : 가로정비, 공동주차시설, 승강장시설, 공공화장실정비 등
    - 문화·복지시설 : 다목적 복지회관, 건강관리시설, 보육시설, 운동·휴양시설 등

- 경관개선시설 : 마을숲 및 녹지정비, 가로경관정비, 경관저해시설정비, 불량간판정비, 경관조형물 등
  - 지역상권시설 : 재래시장정비, 특산품홍보, 지역축제활성화 등
  - 기획운영S/W : 주민문화활동, 지역홍보, 시설물운영프로그램개발, 추진위원회 및 마을개발협의회 활성화지원 등
- 신규시설의 설치보다는 기존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리모델링 등 주민 편의증진에 역점

### 3. 연차별 추진계획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계획의 일환으로 거점면소재지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07년~'17년까지 200개소 착수 계획
- 우선 사업의 모델을 정립하기 위하여 '07년~'11년까지 시범사업(8개 권역)을 실시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사업량을 확대

#### 〈연도별 시행계획〉

	권역수(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8	10	304			128	-	442
'05	-	-	-	-	-	-	-	
'06	-	-	-	-	-	-	-	
'07	(4)	5	-	-	-	-	-	5
'08	4(4)	5	12		-	3	-	20
'09	8	-	108	-	-	46	-	154
'10	8(16)	-	197	-	-	85	-	282

※ 권역수는 누계치이며, ( )는 기본계획수립 권역수임

※ 동 투자계획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기 반영된 사항임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권역수(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8(8)	10	120	-	-	49	-	179
'05	-	-	-	-	-	-	-	-
'06	-	-	-	-	-	-	-	-
'07	-(4)	5	-	-	-	-	-	5
'08	4(4)	5	12	-	-	3	-	20
'09	8	-	108	-	-	46	-	154

- ※ '07년, '08년도 사업량은 누계치이며, ( )는 기본계획수립 권역수임
- ※ 동 투자계획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기 반영된 사항임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09년도 추진목표는 '08년 착수 4개권역 2년차 사업시행과 '09년 4개권역 1년차 사업을 시행하여 목표달성 하였음
  - \* 시범사업대상지선정 : 여주군 당우, 강릉시 옥계, 괴산군 청천, 서천군 한산, 임실군 사선, 곡성군 옥과, 영천시 신녕, 하동군 진교권역 등 8개 권역
  - \* '07기본계획수립 : 여주군 당우, 괴산군 청천, 곡성군 옥과, 하동군 진교 등 4개 권역
  - \* '08기본계획수립 : 강릉시 옥계, 서천군 한산, 임실군 사선, 영천시 신녕 등 4개 권역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거점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	사업착수(누계)	사업착수실적	권역	4(8)	4(8)	100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김학조(사무관)
전화번호	02-500-1811	이메일	h0225@mifaff.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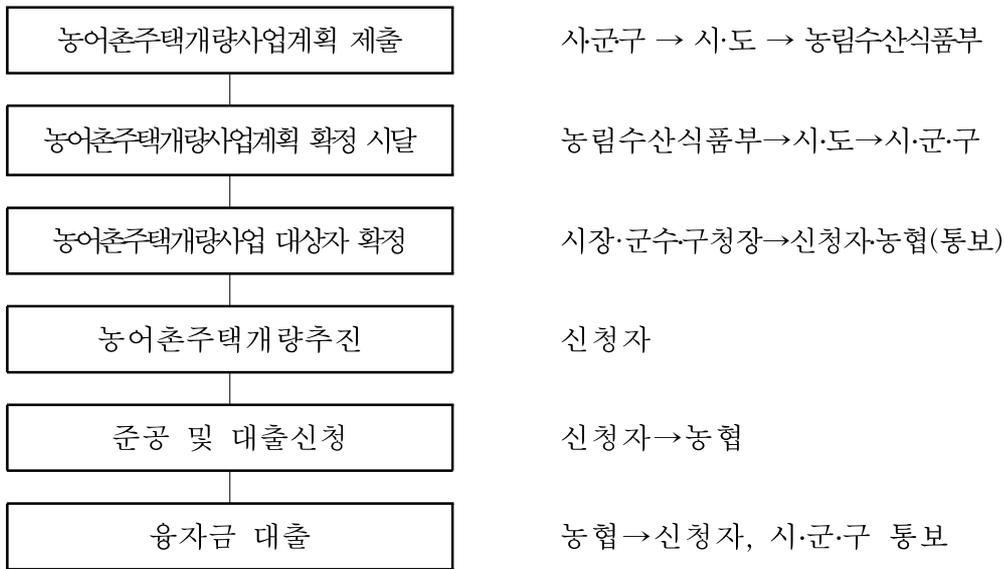
## 1. 사업목표

-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개량사업을 지원하여 농어촌의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정주의욕 고취
- 사업추진 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55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제67조(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제108조(자금지원)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76년~2014년
- 사업주체 : 시·군·구
- 추진내용
  -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노후·불량주택 정비를 촉진
  - 지원조건 : 3.0%
    - 상환조건 : 5년 거치 15년 상환
  - 대출한도
    - 신(개)축 : 세대당 4,000만원 이내
    - 부분개량·증축 : 세대당 2,000만원 이내
- 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시·도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구청장

- 자금관리 및 대출 : 농협



###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동)	국비(억원)				지방비	농협자금 (이차보전)	합계
		농특세	군특세	채특	국민주택 기금			
합계	28,100	900	-	1,080	4,320	2,700	1,640	10,640
'05	6,000	180	-	360	720	540		1,800
'06	4,500	180	-	360	720	540		1,800
'07	5,600	180	-	360	720	540	440	2,240
'08	6,000	180	-	-	1,080	540	600	2,400
'09	6,000	180	-	-	1,080	540	600	2,400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동)	국비(억원)				지방비	농협자금 (이차보전)	합계
		농특세	균특세	채특	국민주택 기금			
합계	29,179	900	-	1,080	4,320	2,700	2,040	11,040
'05	6,000	180	-	360	720	540		1,800
'06	4,519	180	-	360	720	540		1,800
'07	5,660	180	-	360	720	540	440	2,240
'08	6,000	180	-	-	1,080	540	600	2,400
'09	7,000	180	-	-	1,080	540	1,000	2,800

- 경기활성화와 주택개량 수요 충족을 위한 「'09년 농어촌주택개량 지원물량 확대방안」에 따라 당초 계획(6,000동, 2,400억원)보다 1,000동 증가한 7,000동 2,800억원 지원

####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성과지표 : 불량주택 정비(목표 78%, 실적 78.4%)
  - 농어촌주택개량 물량 조기배정 및 사업추진 독려 등을 통하여 목표대비 실적이 100.5%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촌주택개량	불량주택 정비(%)	(읍지지원 대상주택 개량실적 누계치/전체 주택개량 목표치)×100	%	78	78.4	100.5

<b>3-3-2-1(계속)</b>	<b>면단위 생활용수개발 (환경부)</b>
--------------------	-------------------------

담당부서	수도정책과	담당자	행정사무관 이창규
전화번호	02-2110-6878	이메일	partisan72@me.go.kr

### 1. 사업목표

- 사업추진 근거 : 수도법 제56조, “농어촌특별세사업 통합지침”
- 사업목표 :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 '05년 37.2%에서 2014년 75.0%로 향상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4 ~ '14
- 사업비 : 25,834억원 (국고 22,008억원)
- 사업규모 : 면단위 농어촌지방상수도 553개소
- 시행방법 : 국고 80% 지원 ('10년부터 국고 70%로 조정)
- 추진내용 : 197개 시·군 면단위에 지방상수도 공급

### 3. 연차별 추진계획

- '05~'09년 기간 동안 총사업비 1조122억원 투입(당초 계획(9,682억원)대비 104.5% 투자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신규 : 180개 지역 계속 : 415개 지역		7,745			1,937		9,682
'05	신규 30개 지역 계속 55개 지역	-	969	-	-	242	-	1,211
'06	신규 29개 지역 계속 84개 지역	-	1,335	-	-	335	-	1,670
'07	신규 22개 지역 계속 89개 지역	-	1,380	-	-	345	-	1,725
'08	신규 50개 지역 계속 85개 지역	-	2,038	-	-	509	-	2,547
'09	신규 49개 지역 계속 102개 지역	-	2,023	-	-	506	-	2,529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신규 193개 지역 계속 415개 지역		8,096			2,026		10,122
'05	신규 30개 지역 계속 55개 지역	-	969	-	-	242	-	1,211
'06	신규 29개 지역 계속 84개 지역	-	1,335	-	-	335	-	1,670
'07	신규 22개 지역 계속 89개 지역	-	1,380	-	-	345	-	1,725
'08	신규 63개 지역 계속 85개 지역		2,389			598		2,987
'09	신규 49개 지역 계속 102개 지역	-	2,023	-	-	506	-	2,529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09년 면단위 상수도보급률 목표는 59.7%, 실적은 59.8%로 100.2% 달성
  - 농어촌 지역(면단위)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으로 상수도 보급률 제고 등 농어촌지역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에 기여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면단위 생활용수개발사업	면단위 급수보급률(%)	면단위 급수인구/총인구	%	59.7	59.8	100.2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이승한(주무관)
전화번호	02-500-1807	이메일	rooki719@korea.kr

### 1. 사업목표

- 인구가 적고 분산되어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낙후지역에 수원공(암반관정)을 개발하고 이용시설(물탱크, 송·배수관로 등)을 설치하여 생활·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
- 낙후지역 주민의 삶의질 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
-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7호 라목 및 아목에 근거하여 '94부터 시행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4~'12(19년간)
- 사업비 : 총 12,258억원(국고 7,672, 지방비 4,586)
- 사업규모 : 전국 7,060개소('09까지 6,061개소 추진)
- 시행방법
  - 지원대상 : 면지역 자연마을중 자연수에 식수를 의존하거나, 간이(마을)상수도 시설지역으로 수질이 오염되어 식수원으로 부적정하거나 식수가 부족한 마을
  - 지원조건 : 1개소당 170백만원(균특, 국고 80, 지방비 20)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대상지 선정절차 : 희망마을 → 면 → 시·군 → 시·도(확정)
  - 주요사업내용 : 수원공(암반관정)개발 및 이용시설(정수시설, 물탱크, 송·배수관로, 계량기, 소화전 등)설치

### 3. 연차별 추진계획

- 사업추진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추진

- 제1차('93~'04) : 수혜가구 50호 이상의 자연마을 4,751개소 완료
- 제2차('05~'12) : 수혜가구 20호 이상의 자연마을 2,309개소 추진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640	-	2,350	-	-	590	-	2,940
'05	346	-	471	-	-	118	-	589
'06	267	-	353	-	-	88	-	441
'07	252	-	342	-	-	86	-	428
'08	226	-	309	-	-	79	-	388
'09	219	-	294	-	-	74	-	368
'10	330	-	581	-	-	145	-	726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10	-	1,769	-	-	445	-	2,214
'05	346	-	471	-	-	118	-	589
'06	267	-	353	-	-	88	-	441
'07	252	-	342	-	-	86	-	428
'08	226	-	309	-	-	79	-	388
'09	219		294			74		368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목표 : 용수공급율 85.8%('09목표 : 219개소)
  - 실적 : 용수공급율 85.8%('09실적 : 219개소, 100% 달성)
    - \* 사업추진 마을수 : 6,061개소
    - \* 사업대상 마을수 : 7,060개소
    - \* 용수공급율 = 사업추진 마을수/사업대상 마을수  
= 6,061(개소)/7,060(개소)×100(%) = 85.8%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촌농업·생활 용수개발	용수공급율	사업추진 마을수/ 사업대상마을수	%	85.8	85.8	100

담당부서	생활하수과	담당자	이광수(주무관)
전화번호	02-2110-6894	이메일	ld613@korea.kr

## 1. 사업목표

- 농어촌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하수도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어촌 생활환경개선과 수질오염방지를 통해 농어민의 삶의질 향상
- 사업추진 근거
  - 「하수도법」 제 11조 및 제63조
  -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5년 ~ 계속
- 사업비 : '09년까지 9,503억원(국고기준)
- 사업규모 : '09년까지 895개 처리장 건설지원
- 시행방법 : 지자체 국고보조사업(국고 70%, 지방비 30%)
  - '95년부터 농특세의 일부를 지방양여금으로 전입시켜 사업 추진
  -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라 '05년부터 농특세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 '07년부터 구 행자부에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였던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우리부에서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추진(환경개선특별회계)
- 추진내용 :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설치

### 3. 연차별 추진계획

- 농어촌하수도정비종합계획에 의한 사업추진
  - '15년까지 3,707개소 신설 등 4,710억원 투자 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029	76	3,409		3,223		10,737
'05	신규 4 계속 43	645		-		276		921
'06	신규 11 계속 41	667		-		286		953
'07	신규 329 계속 40	795	25	1,129		841		2,790
'08	신규 203 계속 214	897	25	903		779		2,604
'09	신규 142 계속 218	1,025	26	1,377		1,041		3,469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029	76	3,409		3,223		10,737
'05	신규 4 계속 43	645		-		276		921
'06	신규 11 계속 41	667		-		286		953
'07	신규 329 계속 40	795	25	1,129		841		2,790
'08	신규 203 계속 214	897	25	903		779		2,604
'09	신규 142 계속 218	1,025	26	1,377		1,041		3,469

###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농어촌지역 하수도보급률 : 목표 50.1%, 달성 51%
  - 농어촌지역 오염물질삭감량(BOD, 톤/일) : 목표 78.0, 달성 92.0

사업명	성과지표	추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면단위하수 처리장설치	농어촌지역하수도 보급률	(하수처리구역내 인구/전체인구) × 100	%	50.1	51	101.8
	농어촌지역 오염 물질삭감량	1일 하수처리장 유입하수량 × 유입하수의 수질(BOD농도) - 1일 하수처리장 배출수량 × 배출수질(BOD농도)	톤/일	78.0	92.0	118

담당부서	재해경감과	담당자	정희돈
전화번호	2100-5462	이메일	grj1004@korea.kr

## 1. 사업목표

### ○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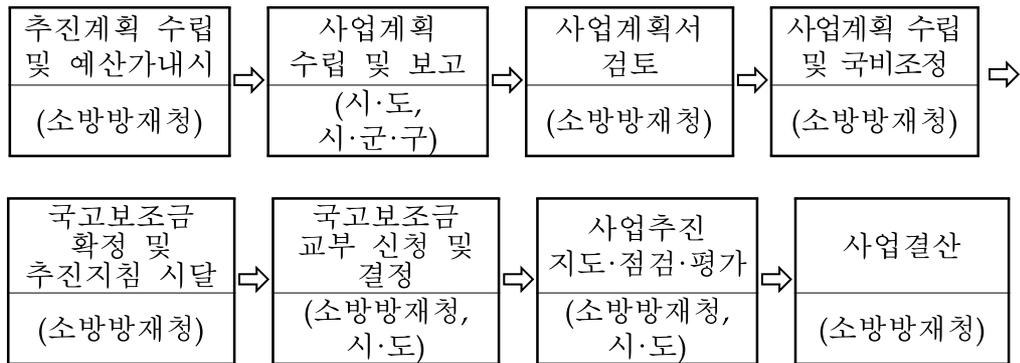
- 수해위험 소하천의 지속적인 정비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소득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개선
- 치수·이수(治水·利水)와 자연환경이 조화된 다목적 소하천정비로 친수 환경조성

### ○ 사업추진 근거

- 소하천정비법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 시장·군수·구청장이 소하천에 대한 정비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
- 소하천정비법 제7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 시장·군수·구청장이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소하천정비 중기계획 수립
- 소하천정비법 제8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 시장·군수·구청장이 중기계획에 의거 매년 다음 연도의 소하천정비 시행계획 수립
- 소하천정비법 제13조(비용보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하천의 정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음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11조(재정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 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함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5조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의 수립)

○ 사업추진 체계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5년 ~
- 총 사업비 : 11조 7,001억원('09년까지 기 투자액 : 25,387억원)
- 사업규모 : 35,815km('09년까지 정비연장 : 14,355km)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Matching Fund)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이 완료된 소하천 대상
  - 소하천의 미정비 연장 비율에 따라 군지역과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주요 추진내용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경제성(B/C) 및 재해위험도 분석 등에 의한

투자 우선 순위를 정하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이 완료된 소하천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추진

- 호안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낮은 산과 접한 구간은 호안 미시공
- 소하천정비 구간내 수해원인이 되는 단경간 교량, 암거 등 시설물 정비
- 국가 정책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증·감액 조치 등의 인센티브제도 추진
- 원활한 사업추진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소하천 담당공무원 교육 실시

###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432	5,396	10	0	0	5,406	0	10,812
'06	198	497				497		994
'07	237	593				593		1,186
'08	269	669	3			672		1,344
'09	314	1,565	7			1,572		3,144
'10	414	2,072				2,072		4,144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400	3,665	6	0	0	8,507	0	12,178
'06	311	497				1,580		2,077
'07	382	590	3			1,958		2,551
'08	290	669	3			1,797		2,469
'09	417	1,909				3,172		5,081

####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정부의 재해예방사업의 증액 및 집중투자로 추경예산확보를 통하여, 총 5,081억원(국비1,909, 지방비3,172)을 투자, 당초 계획 총 3,144억원(국비1,572, 지방비1,572) 대비 62% 증가한 1,937억원을 증액 투자하였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소하천정비사업	소하천정비율	2009년	km	314	417	133

3-3-2-5(계속)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환경부)
-------------	----------------------

담당부서	폐자원에너지팀	담당자	남궁선(주무관)
전화번호	02-2110-7722	이메일	sunny@me.go.kr

### 1. 사업목표

- 농어촌 지역에 매립, 재활용 등 폐기물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보호 및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기반 확보
  -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군지역에 1개소 이상 설치
- 지원근거 :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제3조) 및 폐기물관리법(제56조)
  - ※ '94. 2 농림부 '농업정책심의회 농어촌생활여건개선분과위'에서 농어촌의 공업화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구 등으로 '95년부터 사업추진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5~'14
- 사업비 : 총사업비 2,716억원('09년까지 투자액 2,712억원)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 정액(15억원/개소)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장

### 3. 연차별 추진계획

- 매년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매립여유 용량 등을 감안하여 사업추진 지역을 선정·결정하고 국고지원하여 추진
  - '09년 104억원 투자하여 17개소에 지원(신규사업8, 계속사업 9개소)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9개소	534	22					556
'05	11개소	105						105
'06	14개소	109						109
'07	14개소	102	7					109
'08	15개소	109	15					124
'09	15개소	109						109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9	424	7					431
'05								
'06	14개소	109						105
'07	14개소	102	7					109
'08	14개소	109						109
'09	17개소	104						104

- '07년부터 제주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750백만원)는 농어촌 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제주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

###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목표대비 2,550%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의 폐기물처리량증가율	폐기물처리량 증가율	%	0.2	5.1	2,550

※ '09년부터 시설개소수에서 폐기물처리량 증가율로 성과지표 변경

3-3-2-6(계속)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	담당자	임기창(사무관)
전화번호	02-500-2131	이메일	limkc@mifaff.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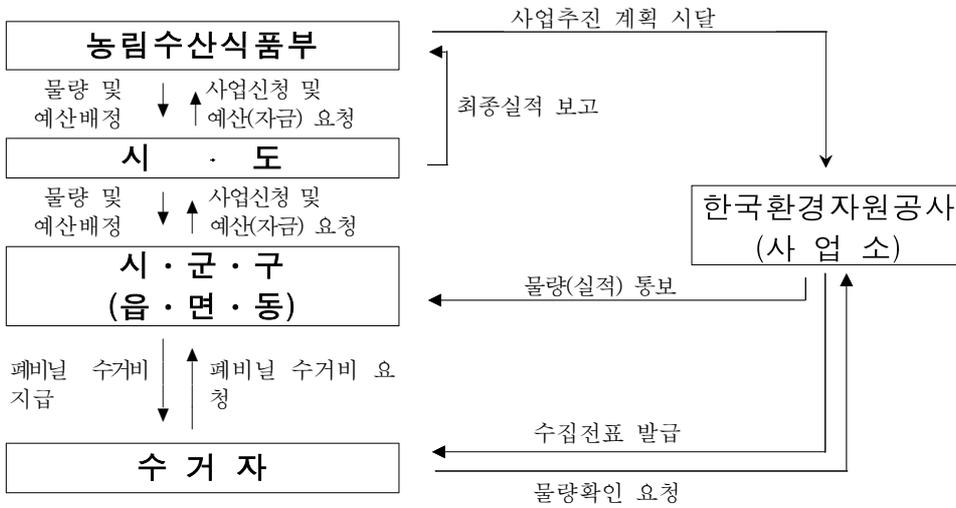
### 1. 사업목표

- 목표 :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수거활성화를 통한 환경 오염방지 및 농촌환경 개선
  - 폐비닐 발생량을 줄이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수거를 유도하기 위하여 '04년부터 폐비닐수거비 지원
- 지원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8조 및 제39조
  - 제8조 : 국가 및 지자체는 농촌을 도시와 연계된 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농촌의 쾌적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 제39조 : 토양 등 환경의 보전을 위한 지원

### 2. 사업내용

- 사업 주요내용 :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수거 활성화를 위해 폐비닐수거비 지원
  - 지자체의 폐비닐 수거 활성화 및 책임 강화 유도하기위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폐비닐 수거보상비』에 kg당 30원씩 인센티브 지원
- 사업기간 : 2004년 ~ 계속(1년 단위사업)
- 총사업비 : '09년까지 기투자액 183억원(576천톤)
  - '09 사업규모 : 103천톤, 3,595백만원(30원/kg 정액지원, 국고 100%)

○ 수행체계



3. 연차별 추진계획

- 폐비닐수거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농업인의 자발적 수거 유도를 통한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지역 환경개선 효과 제고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천톤)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05	85	26	-	-				26
'06	100	30						30
'07	100	30						30
'08	103	30	6					36
'09	73	20	6					26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천톤)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05	85	26	-	-				26
'06	100	30						30
'07	100	30						30
'08	103	30	6					36
'09	73	20	6					26

####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09년도 폐비닐수거율 목표 67.8대비 100.3%인 68.1% 달성
  - 폐비닐 발생량('08년) 345천톤 중 235천톤 수거('09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폐비닐수거비지원	폐비닐수거율	폐비닐발생량 대비 수거율	%	67.8	68.1	100.4

담당부서	수산개발과	담당자	변민준(주무관)
전화번호	02-500-2328	이메일	pw4344@korea.kr

## 1. 사업목표

- 사업추진 근거
  - 어촌어항법제49조(사업비 지원), 수산업법 제84조(보조 등)
- 목표
  - 기상악화 시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하여 어업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평시 어획물 및 어구 인양 등 어업편의 제고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6 ~ 계속
- 사업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
- 지원규모 : 3톤 이상 소형어선 인양기(대당 5천만원)
- 지원방식 : 지자체 보조(국비50%+지방비50%)
- 추진체계 : ① 사업신청(어촌계, 수협 등)
  - ② 대상선정(시·군, 시·도)
  - ③ 예산지원(농림수산식품부→시·도, 시·군)
  - ④ 사업시행(시·도, 시·군)
- 추진내용 : 다목적어선인양기설치(인양하중 3톤이상, 인양기 높이 6m, 회전반경 360° 또는 동등 이상 형식)

###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차별 추진내용과 추진일정, 사업비 등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36		59			59		118
'05	-							
'06	14		4			3		7
'07	29		7			8		15
'08	88		22			22		44
'09	105		26			26		52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36		59			59		118
'05	-							
'06	14		4			3		7
'07	29		7			8		15
'08	88		22			22		44
'09	105		26			26		52

###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성과지표 : 계획 대비 설치대수

\* '09사업계획 : 8개시·도에 26.25억원 투자 105대 설치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소형어선인양기 설치	설치대수	인양기 설치대수	%	105	105	100

3-3-2-8(계속)	해양폐기물 정화 및 쓰레기 수매사업 (국토해양부)
-------------	--------------------------------

담당부서	해양보전과	담당자	기호영(사무관)
전화번호	02-504-5436	이메일	-

**1. 사업목표**

- 연근해 주요해역·항만 및 어항 등의 해양폐기물 수거·처리로 해양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
- 사업추진 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9 ~ 계속
- 총사업비 : - 억원('09년까지 기 투자액 1,198억원)
- 사업규모
  - 단계별 해양쓰레기 수거 【국가어항 및 항만('99~'03), 연근해 주요 어장(41개 해역, '04~'09), 항만, 습지보호구역 및 32개 연근해 주요어장 ('10~'15)】
  - 해양쓰레기 분포 및 실태조사
  - 전국 50개 시·군·구 해안가 쓰레기 수거·처리
  -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전국 11개 지자체)
- 지원형태 : 민간·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 국고 100%(단, 수매사업은 국고 60%, 지방비 40%)
- 사업시행주체 : 국토해양부, 시·도지사(시·군·구)

###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	-	-	201	665	96	-	962
'05	30개 시·군·구	-	-	110	-	10	-	120
'06	30개 시·군·구	-	-	91	25	16	-	132
'07	35개 시·군·구	-	-	-	122	16	-	138
'08	35개 시·군·구	-	-	-	122	16	-	138
'09	38개 시·군·구	-	-	-	260	16	-	276
'10	35개 시·군·구	-	-	-	136	22	-	158

- '10년 예산편성(예결위)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삭감 으로 당초 계획보다 56억원 감액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	-	-	91	529	60	-	680
'06	30개 시·군·구	-	-	91	25	12	-	128
'07	35개 시·군·구	-	-	-	122	16	-	138
'08	35개 시·군·구	-	-	-	122	16	-	138
'09	50개 시·군·구	-	-	-	260	16	-	276

###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성과지표 :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물량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민간대행)	해양폐기물 수거처리물량	설계량 대비 실제수거물량 비교	%	100	108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지자체보조)	쓰레기 수매사업 확대실적	전년대비 확대실적	개소	47	50	-

3-3-2-9(계속)	양식장 정화사업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자원환경과	담당자	강거영(사무관)
전화번호	02-500-2386	이메일	kilkil@mltm.go.kr.kr

**1. 사업목표**

- 연안 양식어장 환경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깨끗한 해양환경 보존을 위함

※ 사업추진 근거 : 어장관리법 제15조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86년~계속
- 총사업비 : - ('09년까지 기 투자액 2,521억원)
- 사업규모 : 면허어장 및 인근 수면 682천ha('09까지 495천ha 완료)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 국비 80%, 지방비 10%, 자담 10%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ha)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05	11,766		76			10	9	95
'06	14,080		59			7	7	73
'07	11,531		76			10	10	96
'08	6,000		52			6	6	64
'09	5,761		49			11	1	61
'10	5,747		49			12	1	62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ha)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05	11,766		76			10	9	95
'06	14,080		59			7	7	73
'07	11,531		76			10	10	96
'08	6,000		52			11	1	64
'09	5,924		49			11	1	61

####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성과지표 : 어장정화사업 추진 진척도

※ '09사업계획 : 5,761ha, 49억원 예산지원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양식어장정화사업	어장정화사업 추진 진척도	대상면적 계획대비 실적	ha	5,761	5,924	103

3-3-2-10(계속)	해수욕장주변정비 및 시설개선사업 (국토해양부)
--------------	------------------------------

담당부서	연안계획과	담당자	길인환(사무관)
전화번호	02-2110-8460	이메일	kilkil@mltm.go.kr.kr

### 1. 사업목표

- 해수욕장을 쾌적한 4계절 휴양지로 조성하여 국민편익을 증진시키고 이용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근거 : 「연안관리법」 제20조 및 「해·강안 균경제철책 개선지침」 (’07.6)

### 2. 사업내용

- 사업내용 및 기간
  - 해수욕장 편의시설 개보수 및 주변환경 정화(’05년부터 계속)
  - 동해안 해수욕장주변 균경제 철조망 철거 및 대체시설 설치(’06~’09)
- 지원대상 : 해수욕장 소재 시·도(10개)
- 지원형태 : 지자체 정액보조

### 3. 연차별 추진계획

- 해수욕장 주변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6억원의 예산 편성
  - 사업실적에 따라 예산 증액 검토
- 동해안 철책제거 및 대체시설 설치를 위해 매년 20억원씩 4년간 총 80억원을 투입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0				110
'05	해수욕장지원			6				6
'06	"			26				26
'07	"			26				26
'08	"			26				26
'09	"			26				26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58				184
'05	해수욕장지원			6				6
'06	"			26				26
'07	"			26				26
'08	"			100				100
'09	" (20개소)			26				26

##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우수해수욕장 20개소 시설개선 사업 시행(100%)
  - 강원도 철책제거 길이의 계획량 대비 실적량(100%)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시설개선해수욕장수	사업시행 개소수	사업시행	개소	20	20	100
철조망 제거	철조망 길이	목표대비 제거율	%	4.1km	4.1km	100

3-3-3-1(계속)	농어촌도로 정비(행정안전부, 지자체)
-------------	----------------------

담당부서	지역발전과	담당자	윤종한
전화번호	02-2100-3842	이메일	-

## 1. 사업목표

-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
- 사업추진근거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5조~제8조(도로의 정비, 기본계획·정비계획·사업계획의 수립)
  - 지방교부세법(부칙 제7126호)

## 2. 사업내용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도로
  - 사업규모 : 농어촌도로 74.29km 정비계획
  - 지원금액 및 형태 : 보통교부세 538억원 지원
    - ※ '05~'08까지 지방도로정비사업에 매년 보통교부세 8,500억원 지원계획  
(농어촌도로 '05~'07년 실적 : 9,485억원 1,514.4km 정비)
  - 지원조건 : 지방양여금 폐지('04.1.29)후 지원되는 보통교부세(8,500억원)는 '04.12.8 공표된 지방도로정비사업에 적용
  - 사업 주요내용
    -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 사업추진방향

### 지원사업

- 지방도로정비사업의 재원을 보통교부세와 지방비로 추진

- 지방양여금 폐지('04.1.29)후 지원되는 보통교부세(8,500억원)는 '04.12.8 공표된 지방도로정비사업에 적용

### 자체사업

- 지역간 연결 등 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지방도로 중장기 계획에 맞추어 지속적 사업 추진
- 지방도로정비사업 계획수립시 광역계획 등 국가시책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국가기반시설 및 혁신도시·행정복합도시·대운하사업·새만금사업 등 국책사업으로 인한 교통수요 증가 대비한 계획수립 추진
  - 고속철도, 고속 및 일반국도, 항만, 공항 등과 연계되는 지방도로망 확충
- 포장도로의 구조보전 및 포장수명을 위하여 도로유지보수사업 추진
- 지방도로상 노후 및 위험교량 재가설사업 추진
  - 정기점검시 D,E급으로 분류된 노후 및 위험교량에 대해 보수·보강, 재가설하여 교량의 안전성 확보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 도로기본계획(변경)의 수립(시·군)→도로정비계획(변경)의 수립(시·군)→연도별 도로사업계획 지침시달→연도별 도로사업계획 수립(시·군)→도로의 노선지정(시·군)→검토·취합·보고(시·도) → 사업계획확정(행자부) → 예산지원(행자부 → 시·군) → 시행(시·군) → 결산(지자체)

### 3. 연차별 추진계획

- '09 시도별 사업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사업비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7,351	112	262	1,242	782	2,582	4,152	550	860	2,520	3,921	368

※ 단, 사업비는 지방비가 포함되지 않은 지방교부세 내역임.

###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사업 성과목표 달성도(잠정)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09년도 목표치	'09년도 목표치	비고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추진 공정	계획대비 실적	%	95	파악중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김주식(사무관)
전화번호	02-2110-8670	이메일	kjs0219@mltm.go.kr

## 1. 사업목표

- 대부분의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로 버스이용객이 감소하여 버스 운행으로 인한 손실금액 증가중
- 따라서, 농어촌 지역의 기초교통권 보장을 위해 손실금 보상, 공영 버스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교통서비스 제공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5~2009
- 사업주체 : 시·도지사
- 추진체계 : 시·도 수요조사 및 소요액 통보(국토부→행안부) → 분권교부세 버스재정지원(행안부→시·도)→사업시행(시·도)
- 지원형태 : 분권교부세 버스재정지원
- 사업규모 : 벽지노선(2999.2km) 운행손실 및 공영버스 구입 지원
- 사업대상
  - **벽지노선 손실보상** : 벽지노선으로 지정된 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업체에 대해 손실금의 일정액 지원
  -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비용 지원** : 시·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버스(공영버스)의 구입비용의 일부금액을 국비지원

###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분권교부세)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05						340(49)		
'06						376(53)		
'07						459(54)		
'08						504(61)		
'09						473(65)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분권교부세)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297(280)		1,175
'05						340(49)		340
'06						376(53)		376
'07						459(54)		459
'08						583(64)		583
'09						573(60)		573

###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09년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08년 분권교부세 재원 13,784억원→'09년 12,305억원)에 따라 분권교부세 버스재정지원 감소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교통서비스 강화	'09년 분권교부세 집행	예산집행실적	억원	65	60	92
	'09년 지방비 집행	예산집행실적	억원	473	573	121

담당부서	연안해운과	담당자	안재구(주무관)
전화번호	2110-8569	이메일	ajuno@mltm.go.kr

## 1. 사업목표

- 사업추진근거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농어촌특별세 대상사업)
- 사업목표
  - 낙도 보조항로에 운항중인 국고여객선 중 노후하거나 항로에 부적합한 여객선을 신조 여객선을 대체건조하여 항로에 투입함으로써 도서민의 안정적인 해상교통수단을 확보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5 ~ 계속사업
- 사업주체 : 국가(지방해양항만청)
- 사업비 : '09년까지 32척 대체, 373억원(국고 100%)
- 사업규모 : 매년 낙도보조항로에 취항중인 국고여객선 1-2척 대체
- 추진체계 : 국고건조(지방청 수행)후 낙도보조항로 운영선사에 위탁관리
- 추진내용 : 전국 26개의 낙도 보조항로에 26척의 여객선이 운항 중이며, 매년 1~2척의 노후선 또는 항로에 부적합한 여객선 대체·건조

##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차별 추진내용
  - '78 ~ '85(새마을시리즈) : 총 21척 건조
  - '86 ~ '94(수요발생시 수시건조) : 총 4척 건조
  - '95 ~ 현재(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총 32척 건조

○ 사업비 : 150톤급 차도선형여객선 건조비용 약 16억-18억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	67						83
'05	1	17						17
'06	1	16						16
'07	1	16						16
'08	1	18						18
'09	1	16						16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	83						83
'05	1	17						17
'06	1	16						16
'07	1	16						16
'08	1	18						18
'09	1	16						16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목표치 및 실적 : 차도선 1척 건조 / 차도선 1척 건조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국고여객선 건조	건조공사 공정률	공정률	%	100	100	100

담당부서	연안해운과	담당자	안재구(주무관)
전화번호	2110-8569	이메일	ajuno@mltm.go.kr

## 1. 사업목표

- 사업추진근거
  - 「해운법」 제44조(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지원)
- 사업목표
  - 육지에 비해 열악한 생활여건과 교통환경을 가진 도서지역 주민의 과중한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여 도시와 도서간의 교류증진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 ~ 계속사업
- 사업주체 : 시·도(시·군·구)
- 사업비 : 매년도 예산('09년 까지 국비 249억원)
- 사업규모 : 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 연 370만명에 운임지원
- 추진체계 : 선사가 도서민에 선 할인된 운임을 적용하고 사후 지자체와 정산하는 방식(간접지원방식)
- 추진내용 : 정규운임의 20%와 최고운임(5,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전액지원

## 3. 연차별 추진계획

- '05.8 :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 마련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

- '05.11 : 해양부, 광역자치단체 및 여객선사간 도서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지원을 위한 협약(MOU) 체결
- '06.1~2 : 투명한 운임지원을 위한 전산매표시스템 확대 및 도서민 인증시스템 구축 완료
- '06.3 : 도서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지원 실시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80		9	230		239		478
'05	-							
'06	280			50		50		100
'07	350		3	54		57		114
'08	370		3	63		66		132
'09	380		3	63		66		132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450		9	239		248		496
'05								
'06	340			50		50		100
'07	366		3	54		57		114
'08	374		3	68		71		142
'09	370		3	67		70		140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목표치 및 실적 : 3,800천명 / 3,700천명(도서관 수송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도서관 수송실적	연안여객 수송실적	천명	3,800	3,700	97.4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김동권 서기관
전화번호	02-500-1804	이메일	greens@korea.kr

## 1. 사업목표

- 농어촌 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문화·복지시설 등 기초생활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및 농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5 ~ '13
- 사업주체 : 시장·군수, 구청장
- 사업지원대상 : 155개 시·군·구, 1,157개면(15개 자치구 포함)
- 사업규모(사업량)
  - '13까지 정주면을 대상으로 796개면을 정비, ('08) 307개면
  - '09까지 오지면을 대상으로 361개면을 정비, ('08) 244개면
- 지원내용 : 마을기반정비, 농촌경관개선, 문화·복지시설, 환경보전 시설 등 지원
- 지원조건 : 면당 2~5년간 30억원 보조(오지면은 제3차 오지종합 개발 5개년계획에 따라 면당 평균 25억원 보조)
- 재 원 : 균형발전특별회계(국고 70%, 지방비 30%)

###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777		15,058			5,477		20,535
'05	650		2,739			880		3,619
'06	507		2,983			939		3,922
'07	519		3,055			966		4,021
'08	551		3,132			1,342		4,474
'09	550		3,149			1,350		4,499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면)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777		15,058			5,477		20,535
'05	650		2,739			880		3,619
'06	507		2,983			939		3,922
'07	519		3,055			966		4,021
'08	551		3,132			1,342		4,474
'09	550		3,149			1,350		4,499

###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성과지표 목표/실적 : 550면/550면
  - 성과목표치 100%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시행면(구)	목표대비 추진실적	면(구)	550	550	100

3-3-4-3	도서개발촉진사업(행정안전부)
---------	-----------------

담당부서	지역발전과	담당자	노형수
전화번호	02-2100-3798	이메일	sh2988@korea.kr

## 1. 사업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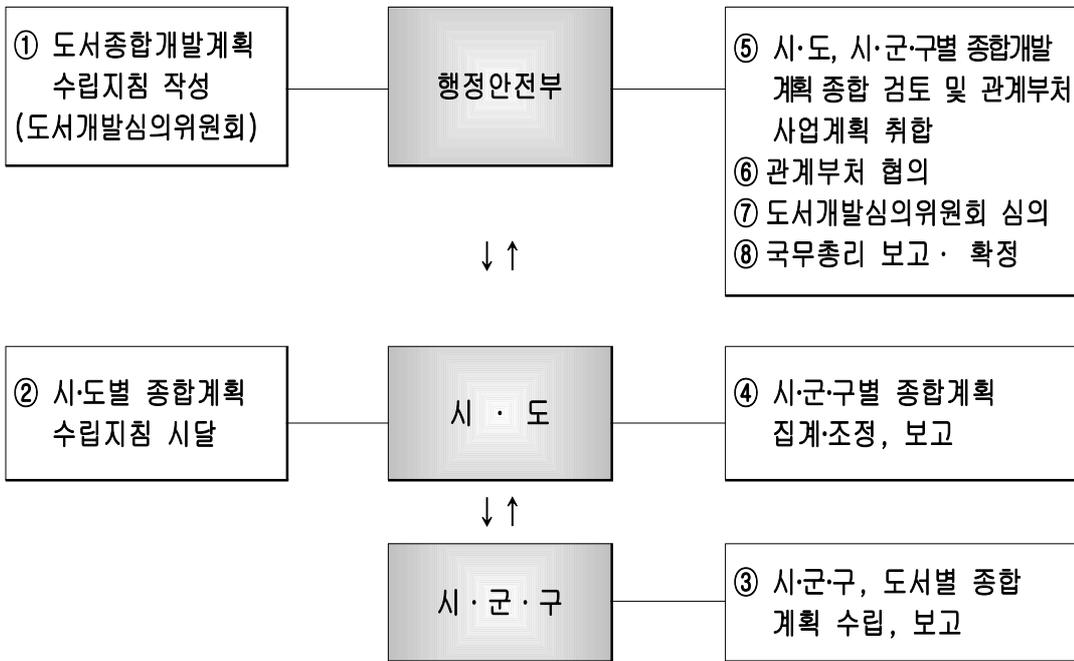
- 추진근거 : 도서개발촉진법('86. 12. 31 제정)
- 사업목표
  - 지리적 여건으로 낙후된 도서지역에 대하여 주민 편의시설 및 소득증대 시설확충을 통한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으로 「매력있고 살기좋은 섬」 창출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8 ~ 2017(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
  - ※ 제2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98~'07) 계획 완료
- 사업주체 : 지자체(37개 시군구)
- 사업비 : 17,874억원(국비12,346, 지방비5,291, 민용자237)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국비 70%, 지방비 30%)
- 사업내용 : 1,407건
  - 연육·연도교 사업 : 10개소(신규 2, 계속8)
  - 유형화·특성화 종합계획 : 260건
    - 관광자원형 166건, 문화유적형 3건, 농업자원형 14건, 수산자원형 63건, 체험관광형 14건
  - 기타 일반시설(생활·생산·문화·환경위생·생활안전시설 등) : 839건

○ 시행방법

<그림-1> 도서개발계획 수립절차



- 계획수립지침 및 기준의 시달(행정안전부 장관)
- 계획의 수립(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개발대상도서에 대한 시·군계획(안)을 집계·조정, 시도계획(안)을 수립하고, 그 계획(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 계획의 확정(행정안전부장관)
  - 계획(안)에 대한 부처협의
  -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
  - 국무총리 보고후 확정
- 사업계획의 통지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 통보

###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79		4,926			2,151		7,076
'06	299		900			386		1,286
'07	270		1,001			429		1,430
'08	243		954			409		1,363
'09	226		1,007			432		1,439
'10	241		1,064			495		1,558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801			1,201		4,002
'06	299		900			386		1,286
'07	270		1,001			429		1,430
'08	243		954			409		1,363
'09	226		1,007			432		1,439

###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연육·연도교사업 추진실적 : 30%(실적)/30%(계획) = 100%
  -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 추진실적 : 7.7%(실적)/7.7%(계획) = 100%
  - 연육·연도교 및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이 차질없이 완료됨에 따라 계획대비 100%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도서종합개발사업	연육·연도교추진실적	종합계획대비 연차별추진실적	%	30	30	100
	제3차도서종합개발계획추진실적	종합계획대비 연차별추진실적	%	7.7	7.7	100

3-3-5-1(계속)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문화체육관광부)
-------------	--------------------------

담당부서	도서관진흥팀	담당자	임혜은
전화번호	02-3704-2739	이메일	helim20@korea.kr

## 1. 사업목표

- 사업목적
    - 종합정보센터로서의 공공도서관을 육성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국민 문화향수권을 신장하고 농어촌의 공공도서관 건립을 특별 지원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도모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사업목표
    - 2013년까지 농어촌공공도서관 총 260관 건립 목표
  - 추진근거 및 배경
    - 도서관법 제27조 (공공도서관 설치 등) 및 도서관법시행령 제17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특별법 제34조(농산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 '새문화관광정책사업'(98), 농어촌발전종합대책('94)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5조(지역문화·관광의 육성), 제16조(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 일반회계('91 ~ '94)→특별교부세('95 ~'04)→균특회계('05 ~)→광특회계('10 ~)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4 ~ 계속
- 총사업비 :        억원('09년까지 지원예산액 : 144관 853억원)
- 사업규모 : 2013년까지 260관 확충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균특회계)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총 건립비의 80%, 최대 16억원)
- 지원조건 : 부지 및 지방비 확보
-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 3. 연차별 추진계획

- 기본방향 : 2013년까지 260관 확충('09년말 현재 243개관 운영중)
- 매년 6개관, 96억원씩 국고 지원 계획  
(※ 2005년도부터 균특회계로 편성됨에 따라, 지자체 실링내에서 자율편성에 의해 대상사업 및 사업비 확정)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72		465			589		1,054
'05	17		99			120		219
'06	13		99			137		236
'07	11		56			86		142
'08	14		97			144		241
'09	17		114			102		216

- 당초 매년 국고 96억원(80%), 지방비 24억원(20%)을 투자하여 6개관씩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균형발전특별회계('10년부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사업비가 편성됨에 따라 국가에서 인위적으로 사업을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72		465			589		1,054
'05	17		99			120		219
'06	13		99			137		236
'07	11		56			86		142
'08	14		97			144		241
'09	17		114			102		216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7개도에 17개관 11,417백만원의 건립비를 지원할 계획이었고,
  - 계획에 따라 17개관 11,417백만원 건립비 지원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촌공공 도서관 건립지원	건립지원 도서관수	국고보조금 지원 도서관 수 파악	개관	17	17	100

3-3-5-5(계속)	지방문화원 프로그램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	----------------------------

담당부서	지역문화과	담당자	김효진
전화번호	02-3704-9553	이메일	hyojin21@korea.kr

## 1. 사업목표

- 목적 : 실버세대의 문화 역량 발굴·개발 및 문화를 매개로 다른 세대와 교류하고 지역과 연계하여 사회참여 및 봉사활동 등 적극적인 문화실천 프로젝트
- 추진방향
  - 실버문화세대에게 지역의 문화리더, 아마추어 아티스트의 역할부여
  - 지방문화원 역량강화를 통해 실버문화거점센터로 정착
  - ⇒ 지방문화원을 통해 어르신 대상 다양한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137개소) /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 업무보고
- 사업추진 근거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4 ~ 계속
- 사업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원연합회
- 사업추진체계
  -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신청(한국문화원연합회 → 문화부)
  - 사업지원 공모 신청(지방문화원 → 한국문화원연합회)
  - 선정·지원 및 컨설팅(한국문화원연합회 → 지방문화원)
  - 사업시행 및 결과보고(지방문화원 → 한국문화원연합회)
  - 사업 최종보고 및 정산(한국문화원연합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주요 프로그램 :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학교 운영

###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1			61
'05	10개 프로그램				2			2
'06	50개 프로그램				10			10
'07	76개 프로그램				15			15
'08	100개 프로그램				15			15
'09	137개 프로그램				19			19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9	42			61
'05	10개 프로그램				2			2
'06	50개 프로그램				10			10
'07	76개 프로그램				15			15
'08	100개 프로그램				15			15
'09	137개 프로그램			19				19

###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전략 프로그램 운영 및 육성 지원 : 20개

(일자리연계형 5, 여가활용형 9, 세대소통형 5, 지혜활용형 1)

- 일반 프로그램 운영 지원 : 117개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지방문화원 실버문화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수	사업실적 보고	개수	150	137	92

3-3-5-6(계속)	지방테마과학관 건립지원 (교육과학기술부)
-------------	---------------------------

담당부서	과학기술문화과	담당자	이병수(사무관)
전화번호	2100-6634	이메일	bslee@mest.go.kr

## 1. 사업목표

-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과학관의 확충을 통해 과학문화를 확산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과학 생활화·대중화에 기여
- 지방과학문화시설의 확충을 통한 지역주민의 과학기술 체험기회를 확대하여 지역간 과학문화 격차해소 및 과학기술 균형발전을 촉진
- 지역 자연환경 및 문화시설과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4년부터 계속
- 추진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과학기술진흥기금)
  - 과학관육성법 제17조(경비의 보조등)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 보조
-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조건 : 건립비 50%이내(최대 10억원) 보조
- 사업내용
  - 과학관당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건립비의 50%(최대 10억원)을 단계적(2~3년)으로 지원
  - ※ 지자체 수요조사 및 평가를 통해 지원(선정심의위 구성·운영)

### 3. 연차별 추진계획

- '04년부터 '09년까지 총271억원을 34개 지방테마과학관에 지원
- '09년 이후 매년 8개(계속, 신규)내외의 지방테마과학관에 40억원 지원 예정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 등			
합계					238	381		629
'05	10개소 (신규 4, 계속 6)				44	45		99
'06	10개소 (신규 3, 계속 7)				60	110		170
'07	12개소 (신규 6, 계속 6)				54	106		160
'08	12개소 (신규 6, 계속 6)				40	60		100
'09	10개소 (신규 3, 계속 7)				40	60		100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38	825		1,063
'05	10개소 (신규 4, 계속 6)				44	180		224
'06	10개소 (신규 3, 계속 7)				60	197		257
'07	12개소 (신규 6, 계속 6)				54	188		242
'08	12개소 (신규 6, 계속 6)				40	136		176
'09	10개소 (신규 3, 계속 7)				40	124		164

※ 테마과학관 건립지원은 2~3년 소요되는 건설사업으로 총건립비로 관리되어, 연도별 지방비는 연도별 국비 투입 비율로 산출함

####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09년 8개(신규 3, 계속 5)를 목표로 추진하여 10개(신규 3, 계속 7)를 달성
  - 전년대비 지원 수요가 크게 증가('08년 17개 125억 → '09년 25개 144억)
  - 현장 점검·평가를 통해 사업 집행실적이 저조한 계속사업에 대하여 실제 집행이 가능한 규모의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건립지원 수 증가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지방테마과학관 건립지원	건립지원수	지원실적 (계수통계확인)	개소	8개	10개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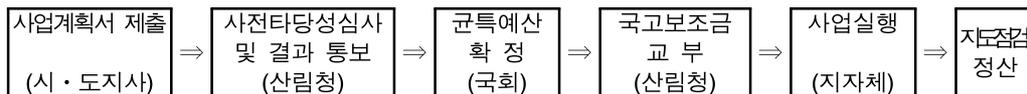
담당부서	산림환경보호과	담당자	김관중(주무관)
전화번호	042-481-4249	이메일	pj6736@forest.go.kr

## 1. 사업목표

- 사업 목적
  - 수목유전자원의 현지 외 보전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식물자원의 수집·증식·보전·관리 및 자원화를 위한 연구와 국민의 자연학습장 제공
  - 산림사료·생물표본의 영구 보존·전시와 홍보로 산림에 대한 인식제고
- 추진 근거
  - 「산림기본법」 제19조(수목원의 보호 및 육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산림생물 다양성의 보전)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사업비 등의 보조)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2년 ~ 계속
-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추진체계



- 지원형태 및 조건 : 지자체보조,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비 및 조성기간
  - 지방수목원 : 60억원, 4년(1년 설계, 3년 시공)
  - 산림박물관 : 40억원, 3년(1년 설계, 2년 시공)
- 추진내용 : 국가식물자원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집·증식 및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수목원·박물관 조성

### 3. 연차별 추진계획

- 총사업비 : 1,918억원('09년까지 투자액 : 1,527억원)
- '09년 사업규모
  - 지방수목원 조성 : 22개소, 130억원
  - 산림박물관 건립 : 7개소, 31억원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0		795			795		1,590
'05	23	-	126	-	-	126	-	252
'06	26	-	155	-	-	155	-	310
'07	25	-	165	-	-	165	-	330
'08	27	-	188	-	-	188	-	376
'09	29	-	161	-	-	161	-	322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0		795			795		1,590
'05	23	-	126	-	-	126	-	252
'06	26	-	155	-	-	155	-	310
'07	25	-	165	-	-	165	-	330
'08	27	-	188	-	-	188	-	376
'09	29	-	161	-	-	161	-	322

###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수목원 조성 및 산림박물관 건립	식물유전자원 누적 확보량	공립수목원의 식물유전자원 확보량 평균	종	1,700	1,757	103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담당자	김 훈
전화번호	3704-9857	이메일	kh4086@korea.kr

## 1. 사업목표

### ○ 사업목적

- 공공 체육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자체의 읍·면 단위에,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균형있는 체육 인프라 확충
- 상대적으로 체육시설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생활체육 및 주민 화합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농간 격차 완화 등 농어촌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 ○ 사업추진방향

- 2006~2010년까지 시·군 지자체 읍·면지역에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총 33개소 지원
- 지역 균형발전(도·농간 격차 완화)을 위해 공공 체육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지역적 특성, 수요자의 선택권 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복합체육시설 지원

### ○ 사업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제1항 2호  
 ※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에 사용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5조(지역문화·관광의 육성), 제16조(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국민건강증진 방안(대통령 지시사항)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년 ~ 2010년 까지 시범사업
  - ※ 2010년까지 시범사업 후 계속 시행여부 결정 예정
- 총사업비 : 3,750백만원('08년도까지 기투자액 : 11,250백만원)
- 추진내용 : '06~'09년까지 28개소 지원(17개소 준공, 11개소 추진중)
- 지원형태 : 자치단체 자본보조(국민체육진흥기금)
-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시·군)
- 추진체계

①	지원계획 안내, 공고	○ 지원계획 공고 / 1월초 (문화체육관광부⇒시·도⇒시·군·구)
②	신청서 접수 및 정량평가	○ 시·군·구 기초지자체 지원신청서 접수 / 1월말 (시·군·구⇒시·도⇒문화체육관광부)
③	선정위원회 평가 실시	○ 정성 평가 및 최종평가 결과 정리 / 2월초
④	지원대상 확정·통보	○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대상 확정 및 통보 / 2월중 (문화체육관광부⇒시·도, 공단)
⑤	협약 체결 및 기금 교부	○ 선정 확정된 기초자치단체와 협약체결 / 3월~ (기초지.자.체⇔공단) ○ 기금 교부 및 사업 수행

- 사업비 규모 : 개소당(기준사업비 : 7.5억원) 기본 지원 내역
  - 국민체육진흥기금 및 지방비(매칭펀드)로 구성
  - 지방재정자립도에 따른 기금 차등 보조율 적용

전년재정자립도 (해당 시·군)	국민체육 진흥기금	지 방 비	기금보조율	비고
70% 이상	2억원	5.5억원	26%	부지매입 및 추가사업비 지자체 부담
50% ~ 70%	3억원	4.5억원	40%	
30% ~ 50%	5억원	2.5억원	67%	
30% 이하	6억원	1.5억원	80%	

○ 지원시설

- 지역 특성, 선호도 등을 감안하여 지원모델 3가지("A", "B", "C" 형) 중 지자체가 자율 선택하여 건립 추진

**【지원모델】**

<b>"A"형</b>	⇒	레크레이션센터, 커뮤니티센터, 자기운동센터, 아쿠아센터, 다목적구장(노인 건강체육시설) 등 (연면적 1,297㎡- 본건물 350㎡, 다목적구장 947㎡)
<b>"B"형</b>	⇒	커뮤니티센터, 자기운동센터, 아쿠아센터, 다목적구장(노인 건강체육시설) 등 (연면적 1,228㎡ 본건물 280㎡ 다목적구장 948㎡)
<b>"C"형</b>	⇒	레크레이션센터, 실내체육관, 소그룹실, 다목적구장(노인 건강체육시설) 등 (연면적 1,482㎡ 본건물 564㎡ 다목적구장 918㎡)

**【시설내용】**

- 레크레이션센터 : 소공연 및 모임 가능 소규모 다목적 체육활동 공간
- 커뮤니티센터 : 온돌형 거실, 소파, 휴식 및 오락 가능
- 자기운동센터 : 지역여건에 맞는 소규모 운동 프로그램 공간
- 아쿠아센터 : 소도시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찜질 사우나 시설
- 체육시설 : 게이트볼장 등 노인계층 선호시설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지원 갯수)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국민체육진흥기금			
합계	28				15,000	5,700		20,700
'05	-	-	-	-		-	-	-
'06	7	-	-	-	3,750	1,200	-	4,950
'07	7	-	-	-	3,750	1,500		5,250
'08	7	-	-	-	3,750	1,500		5,250
'09	7	-	-	-	3,750	1,500	-	5,250

\* 세부 지원사업 별첨 참조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8				15,000	5,700		20,700
'05	-	-	-	-		-	-	-
'06	7	-	-	-	3,750	1,200	-	4,950
'07	7	-	-	-	3,750	1,500		5,250
'08	7	-	-	-	3,750	1,500		5,250
'09	7	-	-	-	3,750	1,500	-	5,250

###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

- 커뮤니티센터, 자기운동센터, 아쿠아센터, 다목적구장 등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선호하는 각종 생활체육시설 및 건강관련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민체육기금 보조금이 확정된 이후 공모사업의 형태로 사업시행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당초 목표치(7개소 3,750백만원) 대로 100% 지원하였음
- 또한, 지원된 사업들은 건립공사이므로 현재 설계이후 공사를 착공하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조성 지원	지원 개소수	지원 실적	개	7	7	100
	지원액	기금집행액 실적	억원	37.5	37.5	100

3-3-6-1(계속)	정보화마을 조성(행정안전부)
-------------	-----------------

담당부서	정보문화과	담당자	이동호 사무관 안재현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2994	이메일	koreahn@korea.kr

### 1. 사업목표

- 농산어촌 정보이용환경 조성 및 주민교육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 정보화를 통한 상거래 지원으로 주민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1년 ~ 계속
- 사업규모 : 기 조성된 358개 마을 운영 활성화 및 연차별 신규 조성
- 시행방법 : 직접수행, 자치단체 보조(Matching Fund, 50%)
- 사업 내용
  - 마을정보센터,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 등 정보이용환경 조성
  - 마을별 홈페이지 및 전자상거래 등 정보콘텐츠 구축·운영
  - 지역 특산물 판매, 체험상품 운영을 통한 주민 소득증대
  - 정보화마을 운영성과 평가를 통한 수준진단 및 차등 관리
  - 마을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지원
  - 정보화마을 지도자·운영전문가 육성 및 주민 정보화 교육
  - 정보화마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등
  - 방송, 일간지, 잡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정보화마을 브랜드 구축 등

###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마을)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운영	조성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 계				6	339		350		695
'05	259	19	-	-	35	-	56	-	91
'06	278	18	-	-	62	-	54	-	116
'07	304	32	-	1.5	84	-	105	-	190.5
'08	338	30	-	4.5	88	-	92	-	184.5
'09	358	10	-	-	70	-	43	-	113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마을)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운영	조성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 계				6	341.1		355.5		702.6
'05	259	19	-	-	35.3	-	55.7	-	91
'06	278	26	-	-	62.3	-	54.3	-	116.6
'07	304	34	-	1.5	85.4	-	105.6	-	192.5
'08	338	30	-	4.5	88.1	-	92.9	-	185.5
'09	358	12	-	-	70	-	47	-	117

###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정보화 마을조성	마을당 평균 전자 상거래 판매금액(백만원)	온라인 총 판매액/마을수 ※온라인 판매금액 500만원 이상 발생한 마을만 집계	백만원	50	51	102
	일반국민·주민 참여도	마을홈페이지 총 게시글수/마을수	건수	6,500	7,119	109

담당부서	정보화담당관실	담당자	서봉열 사무관
전화번호	02-500-1687	이메일	bysuh@mifaff.go.kr

## 1. 사업목표

- 농어업경영체가 농어업 현장에서 손쉽게 적용·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IT솔루션 개발·보급으로 농어업경영체 경영 효율화와 생산성 제고
- 생산, 유통 등의 경영 자동화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등으로 농어가 소득을 향상시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9년 ~ 계속
- 사업규모 : 농어업경영체 정보화 사업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 농어업경영체 정보시스템 표준 모듈 설계, IT솔루션 2종 기능개선 실시
- 사업비 : 1,157백만원
- 사업시행주체 : (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 지원형태 및 조건 : 민간경상보조, 국고100%
- 추진내용
  - 농어업 경영체 정보화 지원강화를 위한 ISP 연구용역 실시
  - 농어업경영체 정보시스템 표준 모듈 아키텍처 상세설계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
  - 농어업인들이 스스로 경영진단이 용이한 품목별자가진단시스템 구축
  - 농업인 홈페이지 1,706개 구축 지원('99~'04)
  - 농업법인 31개소 컨설팅 및 23개소 정보시스템 구축('05~'07)

- 농업인이 직접 홈페이지에서 회원관리, 상품·콘텐츠 등록·수정 등이 가능하고 전자상거래 등을 자유롭게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기존 1,706개 농업인 홈페이지 지원 포함)
- 사용자의 수준에 맞게 초급부터 고급까지 선택가능한 고객 맞춤형 생산경영정보시스템으로의 기능개선

### 3. 연차별 추진계획

#### <'09년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	3,919	-	-	-	400	-	4,319
'05	홈페이지운영활성화, 4개 정보시스템	459	-	-	-	-	-	459
'06	홈페이지운영활성화, 3개 정보시스템	260	-	-	-	220	-	480
'07	홈페이지운영활성화, 16개 정보시스템	315	-	-	-	180	-	495
'08	홈페이지운영활성화, IT솔루션 2종 개발	514	-	-	-	-	-	514
'09	6개 APC 생산유통정보시 스템 구축, APC 표준모델 개발	1,157	-	-	-	-	-	1,157

#### <'09년도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	1,489	-	-	-	342	-	1,831
'05	홈페이지운영활성화, 4개 정보시스템	413	-	-	-	-	-	413
'06	홈페이지운영활성화, 3개 정보시스템	260	-	-	-	172	-	432
'07	홈페이지운영활성화, 16개 정보시스템	314	-	-	-	170	-	484
'08	홈페이지운영활성화, IT솔루션 2종 개발	502	-	-	-	-	-	502
'09	ISP연구용역 및 APC표 준모델 상세설계 IT솔루션 2종 기능개선	1,157	-	-	-	-	-	1,157

- '08년 기능 개선된 통합정보시스템의 9개 표준모듈을 통해 유통 경영체 업무형태 및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통합정보시스템 추가

구축(6개소) 및 기능개선(대상 10개소) 실시계획 이였으나, 사업의 효율성 및 지속성을 고려하여 사용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모든 경영체가 손쉽게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

####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농어업경영체정보화지원사업의 고객만족도는 시스템 활용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의 생산·경영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신규시스템에 대한 고객지원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고객만족도가 목표치보다 높게 나타남
  - 하지만, '09년 시스템을 오픈하고 추가 기능개선을 함에 따라 시스템 활용에 미흡한 사용자가 많아 전체적인 업무효율성에는 목표치에 달성하지 못함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업경영체 정보화지원사업	고객만족도(점)	7등급 척도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점	70	76.3	109
	생산경영정보시스템 사용에 따른 업무효 율성 향상도(%)	업무처리시간(도입전 - 도입후) / 업무처리시간(도입전) × 100	%	29.5	29.6	100

담당부서	수산개발과	담당자	김병욱 사무관
전화번호	02-500-2333	이메일	- @ mifaff.go.kr

## 1. 사업목표

- 어촌지역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화 인프라 구축과 정보화 교육 실시(목표 : '11년까지 어촌지역 정보화수준 : 65%, '08년 57.9%)
- 추진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2조(농어업 및 농어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제2항(농산어촌의 정보화 촉진)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5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등)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0년 ~ 계속
- 총사업비 : '09년까지 기 투자액 71억원
- 사업주체 : 농림수산식품부
- 추진체계

기관명	역할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 총괄 - 원격영상시스템 운영 - 전국 어업인 정보화능력경진대회 개최
수산인력개발원	- 원격영상교육 계획수립 및 추진
지자체 (지방수산사무소)	- 어업인 정보화 집합교육 실시 - 지역내 어업인 정보화능력경진대회 개최

- 사업내용
  - 어업인 정보활용능력 배양을 위한 정보화교육 실시

- 원격영상교육, 집합교육, 현장방문교육 등
- 어업인 정보 활용기회 확대를 위한 정보화인프라 구축
- 원격영상시스템 구축·운영, 어업인 정보화능력경진대회 개최,  
어업인 활용 웹사이트 및 콘텐츠 개발

###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명, 개소)

구 분	'08까지	'09	'10	'11	'12
원격영상시스템 운영	31개소	33	33	33	33
어업인 정보화교육(누적)	98,000	103,000	108,000	113,000	118,000
어촌정보사랑방 운영	493개소	493	493	493	493
어업인 정보화경진대회	5회	6회	7회	8회	9회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일반회계)	기금등			
합계		28.2		14.3				42.5
'05	7,000명(31개소)	6.9						6.9
'06	//	7.0						7.0
'07	//			7.1				7.1
'08	//			7.2				7.2
'09	5,000명(33개소)	7.3						7.3
'10	//	7.0						7.0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9		2				35.5
'05	14,155명(31개소)	6.9						6.9
'06	9,966명(31개소)	7.0						7.0
'07	10,323명(31개소)			7.1				7.1
'08	8,316명(31개소)			7.2				7.2
'09	5,929명(31개소)			7.3				7.3

####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성과지표 : 어업인 정보화교육, 정보화사업 활성화 정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디지털어촌 구축사업	어업인정보화교육	교육인원	명	5,000	6,087	121.7
	정보화활성화정도	활성화정도	%	81.1	84.1	103.7

\* 디지털어촌구축 연도별 성과지표<sup>1)</sup>

(기존)

지표 구분	가중치소계	지표명	가중치	연도별 목표값				
				'07	'08	'09	'10	'11
계	100%	정보화활성화정도	100%	64.6%	72.8%	81.1%	89.6%	100%
효율성 제고	30%	정보화교육 인원수(누계)	30%	16,996	23,966	28,966	33,966	39,000
이용 활성화	40%	SW보급 건수	12%	200	300	500	700	1,000
		홈페이지방문자수	16%	39,000	40,000	42,000	45,000	50,000
		어촌사랑방활성화	12%	493	493	493	493	493
고객 만족도	30%	수강생 강의만족도	30%	3.7	3.9	4.1	4.3	4.5

※ 성과지표변경

○ 사유 : 시스템 활성화 차원에서 “바다로 21”을 폐지하고 “행복해”(‘09.5) 사이트로 변경 오픈

“바다로21”은 SW 다운로드 방식이었으나, “행복해”는 웹페이지 사용자방식이므로 SW보급건 수측정불가. 성과지표 SW보급건수를 삭제하고 가중치를 홈페이지 방문자수 16%→22%, 어촌 사랑방활성화를 12%→18% 상향조정

(개선)

지표 구분	가중치소계	지표명	가중치	연도별 목표값				
				'07	'08	'09	'10	'11
계	100%	정보화활성화정도	100%	64.6%	72.8%	81.1%	89.6%	100%
효율성 제고	30%	정보화교육 인원수(누계)	30%	16,996	23,966	28,966	33,966	39,000
이용 활성화	40%	홈페이지방문자수	22%	39,000	40,000	42,000	45,000	50,000
		어촌사랑방활성화	18%	493	493	493	493	493
고객 만족도	30%	수강생 강의만족도	30%	3.7	3.9	4.1	4.3	4.5

1) '06년도에 정부업무평가 대비하여 객관적인 성과지표 도출을 위한 정보화사업 성과지표 연구용역 결과 내용임

담당부서	정보화담당관실	담당자	서봉열 사무관
전화번호	02-500-1687	이메일	bysuh@mifaff.go.kr

## 1. 사업목표

- 정보화 취약계층인 농업인에 대하여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도·농간, 산업간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
- 영농과 실생활에 농업정보활용 및 농업 정보화 능력 향상을 통한 경영 효율화를 유도하여 농가소득 창출 및 농업경쟁력 제고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8년 ~ 계속
- 사업규모 : '08년까지 농업인 69만명 정보화교육 실시
- 사업비 : '09년 2,646백만원
- 사업시행주체 : 농림수산정보센터, 기술센터, 농협, 농업계대학 등 교육전문기관 및 지자체
- 지원형태 및 조건 : 민간경상보조, 국고100%(단, 지자체, 농협은 50%)
- 추진내용 : 집합·방문·온라인교육 등 실시
  - 집합교육 : 컴퓨터·인터넷활용(생활밀착형), 영농정보, 홈페이지 제작, 전자상거래 등(영농밀착형), 농업경영정보화(전문)
  - 방문교육 : 농업정보119서비스, 정보화선도자 선정활용
  - 온라인 교육(애그리에듀) : 농업인 교육 이수자에게 재택·반복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58개 과정의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운영

### 3. 연차별 추진계획

- '98년부터 '09년까지 69만명 농업인 정보화교육 실시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05,300	17,185	-	-	-	2,668	767	20,620
'05	66,000	2,553	-	-	-	300	261	3,114
'06	61,000	2,766	-	-	-	400	222	3,388
'07	62,000	3,085	-	-	-	450	111	3,646
'08	62,000	2,940	-	-	-	450	73	3,463
'09	54,300	2,646	-	-	-	534	50	3,230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57,580	10,682	-	-	-	1,486	455	12,623
'05	67,112	2,217	-	-	-	271	185	2,673
'06	63,724	2,583	-	-	-	354	124	3,061
'07	63,511	3,002	-	-	-	411	87	3,500
'08	63,233	2,880	-	-	-	450	59	3,389
'09	48,858	2,646	-	-	-	534	50	3,230

###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업인 정보화교육	교육만족도	조사결과의 평균치 (5등급 척도)	점	4.15	4.25	102.3
	정보화역량점수	조사결과의 평균치	점	55	60.7	110.4

3-3-7-3(계속)	농어업관련 정보제공 확대(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정보화담당관실	담당자	서봉열 사무관
전화번호	02-500-1687	이메일	bysuh@mifaff.go.kr

## 1. 사업목표

- 농어업인 정보활용 활성화를 통해 농어업·농어촌 정보화 촉진 및 도·농어촌간 정보 격차 해소
- 농어가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여 농어업경영 효율화 및 생산성 제고에 기여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9년 ~ 계속
- 사업규모 : 농림수산정보망 이용자수 269천명, 일평균 이용자수 17천명, 아피스넷 연계기관 78개, 농림지식검색 연계기관 72개, 멀티미디어 콘텐츠 2,400여편 확보, 동호회 수 244개
- 사업시행주체 : (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 지원형태 및 조건 : 민간경상보조, 국고 100%
- 추진내용
  - 농림수산정보망(www.affis.net)을 통해 다양한 농어업·농어촌 콘텐츠를 제공하고 도·농어촌간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제공
  - 소속·유관기관의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농림수산지식검색서비스를 통해 one-stop 검색서비스 제공

### 3. 연차별 추진계획

- 농림수산정보망 운영 및 농어업·농어촌 콘텐츠 개발('99~ )
- 농림지식검색시스템 구축 및 운영('07~)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63	-	-	-	-	-	163
'05	AFFIS.NET운영	42	-	-	-	-	-	42
'06	AFFIS.NET운영	29	-	-	-	-	-	29
'07	AFFIS.NET운영	31	-	-	-	-	-	31
'08	AFFIS.NET운영	33	-	-	-	-	-	33
'09	AFFIS.NET운영	28	-	-	-	-	-	28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61	-	-	-	-	-	161
'05	AFFIS.NET운영	41	-	-	-	-	-	41
'06	AFFIS.NET운영	29	-	-	-	-	-	29
'07	AFFIS.NET운영	31	-	-	-	-	-	31
'08	AFFIS.NET운영	32	-	-	-	-	-	32
'09	AFFIS.NET운영	28	-	-	-	-	-	28

###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 대비 109.5% 달성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정보서비스 활용 증가율	전년대비 콘텐츠 활용도 증가율	%	10.3	12.66	123
이용자 만족도	이용자 대상의 5점척도 만족도 조사	점	82	78.95	96
평균					109.5

## 제4절 농산어촌 복합산업활성화



담당부서	농촌환경자원과	담당자	김미희
전화번호	031-290-0280	이메일	kimmih8312@korea.kr

## 1. 사업목표

- 지역성과 전통성이 강하고 사업성이 있는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조사 발굴 및 DB화하여 지역별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원천자원으로 활용
- 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향토산업의 진흥) 및 시행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의 수립), 제51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2009년(4년간)
- 사업규모 및 사업비 : 28개 지역(시군), 7.70억원 ('09년 1.4억원)
- 시행방법 : 시험연구비에 의한 자체 연구사업 수행
- 추진내용
  - 농어촌 지역별 향토자원 조사 : 매년 3~6개 지역(시군)
  - 지역 향토자원 중 산업화 유망자원 발굴 및 DB화
  - 향토자원 사업화 가치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를 통한 유망자원 발굴
  - 향토자원 산업화 모델 및 지원전략 개발을 통한 지자체 향토산업 지원 체계 구축
  - 조사대상 지자체의 관련 부처와의 유기적 연계 및 협조

향토산업육성 기본방향 수립  
(농식품부)

- 향토산업육성 사업계획 및 시행지침 수립
- 사업대상 선정, 예산지원 등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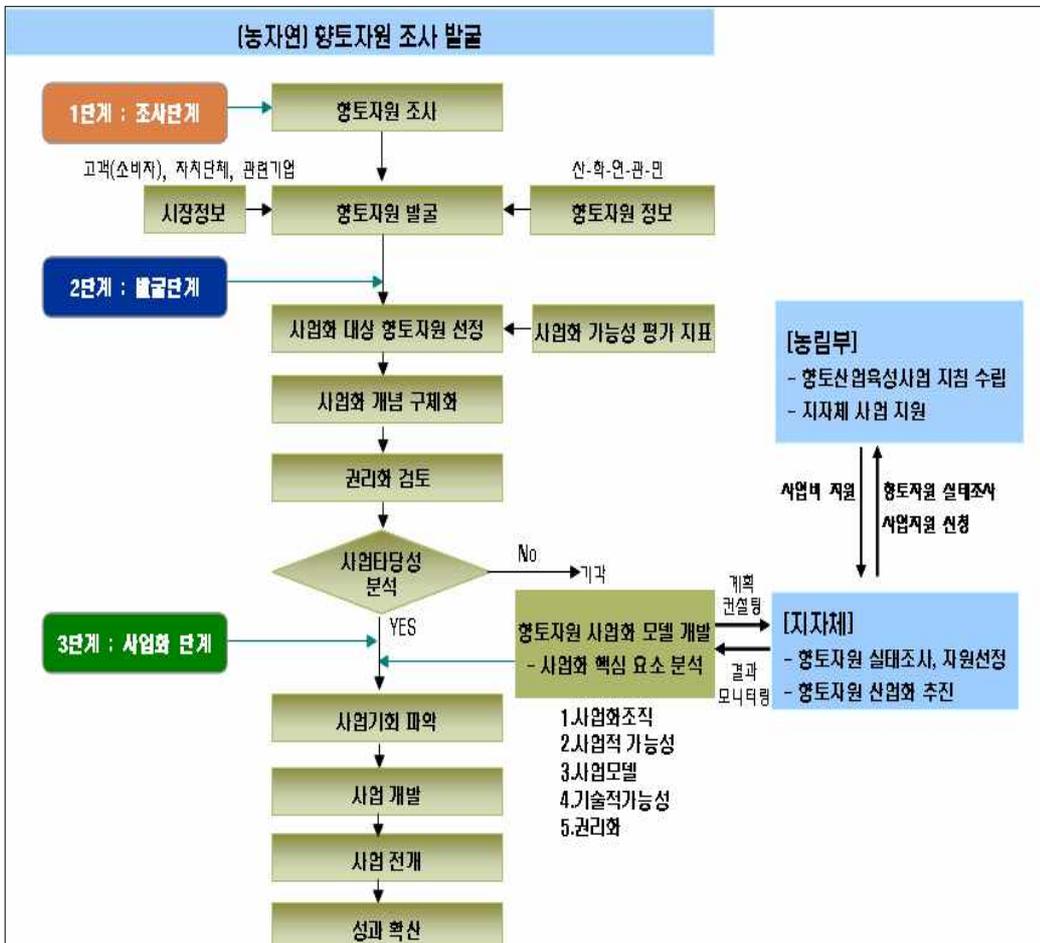
향토자원 조사·발굴 및  
산업화 모델 개발 연구  
(농촌진흥청)

- 향토자원을 조사, 산업화 유망자원 선발
- 향토자원 산업화 모델 또는 지원전략 개발
- 지자체 향토산업육성 지원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  
(지자체)

- 향토산업육성사업 대상 선정
- 향토산업육성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 추진체계



※ 향토자원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향토적 전통성과 고유성을 가진 자원으로 시·군·구 지역 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잠재력이 있는 모든 자원을 의미

### 3. 연차별 추진계획

- 매년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향토자원 조사·발굴 및 DB화('06~'09)
  - 지역성 및 전통성이 강하고 부가가치성이 높은 자원 조사·발굴
- 지역별 향토자원 우수사례 산업화·마케팅 전략 분석 ('06)
- 지역별 산업화 유망자원을 대상으로 산업화 지원모델 개발('07~'09)
  - 특성 있는 향토자원을 활용한 테마 발굴 및 상품 개발, 마케팅, 홍보 등 산업화 지원 모델 개발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8	0	0	8.3	0	0	0	8.3
'06	5			3.0				3.0
'07	5			2.3				2.3
'08	5			2.0				2.0
'09	3			1.0				1.0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8	0	0	7.7	0	0	0	7.7
'06	6			3.0				3.0
'07	6			2.3				2.3
'08	3			1.0				1.0
'09	13			1.4				1.4

- 당초 매년 3억원의 연구비를 계획하였으나 시험연구비에 의한 기본경상 연구사업비는 과제의 수, 규모 등에 따라 예산이 배정되는데, 시대적 요구에 의해 전체 과제수가 늘어남에 따라 배정액이 감소됨
- 2009년도 당초계획은 3개소이었으나 추진실적이 13개소인 사유는 4대강 유역 개발 대비, 2009년도 하반기에 추가계획을 수립하여 한강 유역 주변 등 10개 지역을 발굴 조사하였음(25백만원 소요)

####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향토자원 조사발굴 및 DB구축	향토자원 산업화 유망자원 발굴	산업화 유망향토자원 DB 건수	건	130	528	406
	향토자원 산업화 유망자원 DB구축	농촌공익기능정보시스템상 자료 게시여부	건	130	133	102

- 농촌지역 향토 자원 조사·발굴 및 DB화 : 13지역 / 계획 3지역
  - 조사대상 지역 : 13지역
    - 당초계획 조사지역 : 3지역(경기도 김포/파주, 전남 무안)
    - 추가계획 조사지역 : 10지역(경기도 가평/양평/구리, 강원도 춘천/홍천/원주, 충북 여주/이천/충주/단양)
  - DB 구축 건수 : 향토자원 산업화 유망자원 528건 / 계획 130건

향토자원 목록정리	⇒	주요 향토자원 기본조사	⇒	비교우위 유망자원 선발 및 심층조사
4,689건		2,423건		528건

- 향토자원 산업화 모델 개발 : 6지역 6개 자원
  - 지역별 산업화 모델 대상자원 : 영월 동강, 예산 은행, 의령 입산문화역사마을, 김포 툄레기, 파주 장단콩, 무안 양파 등 6종
  - 향토자원 산업화 프로세스(3단계: 조사, 발굴, 사업화) 및 사업화 핵심요소 도출(조직, 사업적가능성, 사업전략, 기술적가능성, 권리화)
  - 산업화 유형별, 추진프로세스별 핵심요소 분석 및 발전방향 제시

구 분	영 월	예 산	의 령	김 포	파 주	무 안
자 원 명	동강	은행	입산문화역사마을	툄레기	장단콩	양파
자원유형	수변 및 해양자원	농특산물	마을	전통식품	농특산물	농특산물
연계자원	동강할미꽃, 어름치, 황쏘가리, 어리연, 동강축제, 고씨굴	총의사, 대흥향교, 수덕사	망우당 생가, 백산 안희제, 백산 안희제 생가, 탐진 안씨 종가, 설미마을 앞 소나무에 얽힌 전설, 호암 이병철 생가	김포금쌀, 김포인삼, 김포막걸리, 기타 김포 순무 등 농특산물	파주장단콩축제, 파주장단콩전시관	양파한우, 황토

구분	영월	예산	의령	김포	파주	무안
자원명	동강	은행	입산문화역사마을	털레기	장단콩	양파
자원유형	수변 및 해양자원	농특산물	마을	전통식품	농특산물	농특산물
산업화 방향	프로젝트형-상설이벤트형	제조중심형-기능성활용형	프로젝트형-상설이벤트형	서비스중심형-노하우형	원자재중심형-농산물	원자재중심형-농산물
추진주체	영월군청	예산은행연구회	의령군청	김포농협	파주시청	무안농협
클러스터 구성	환경부, 정선군청, 강릉원주대, 레프팅업체 등 관광업체	예산군청, 공주시청, 국립산림과학원, 공주대학교, 예산농협, 두성은행 등 은행관련업체	의령문화원, 경상대학교, 입산문화역사마을, 관광업체	김포군청, 김포대학, 김포수협, 김포털레기 판매업체, 농업인단체	통일부, 경기부, 농촌진흥청, 경기도농업기술원, 통일관련민간단체	무안군청, 목포대학교, 농촌진흥청, 양파생산자단체, 양파가공업체, 농기계업체



산업화 추진 전략(요약)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동강' 및 연계자원을 활용한 웰빙 트렌드에 부응한 생태관광 활성화	은행 명품회를 위한 생산기반조성 및 가공시설 확충, 기능성을 활용한 신상품 개발	의령지역의 자연환경, 역사, 과제우·안회제·이병철 등 인물을 활용한 역사·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금쌈, 순무, 인삼 등 지역 농특산물 활용 털레기 명품회를 위한 기반조성 및 민물고기 외 어류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개발	도시화, 산업단지 개발 등 지역개발에 따른 장단콩 생산지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북한 지역 농업개발	지역의 황토·해수를 활용한 고품질 기능성 양파 생산 및 양파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생력화 대형 급식업체 납품을 위한 전처리시설 확보 및 상품 개발
---------------	---------------------------------------------------	----------------------------------------------	------------------------------------------------------	--------------------------------------------------------------------	--------------------------------------------------------	-----------------------------------------------------------------------------------

4-1-1-2(계속)	<b>농촌활력증진사업(농림수산식품부)</b>
-------------	--------------------------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이수열(사무관)
전화번호	02-500-1808	이메일	leesy@korea.kr

### 1. 사업목표

-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발굴, 다양한 1·2·3차 융복합화의 시너지 효과를 확산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어촌 주민 소득 증대 도모
- 지역이 주체가 되어 혁신역량을 키우고 내생적 발전역량을 강화하여 『도·농상생』의 균형발전사회 실현
- 사업추진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1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향토산업의 진흥)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 2.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지원조건	사업시행주체
· 농촌활력증진사업	'08~'10	10,678억원 ('09까지 7,236억원)		지자체 보조(100%)	시·도지사, 시장·군수

- 추진체계
  - 신활력사업과 향토산업육성사업, 특화품목육성사업을 '08년부터 “농촌활력증진사업”으로 통합·체계화
  - 사업목표를 명확히 하고 목표관리 방식의 사업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3년단위 「시·군 농촌활력증진계획」 제도 도입·시행

- 시·군은 유사한 관사업을 연계한 3년단위('08~'10) 시·군농촌 활력증진계획을 수립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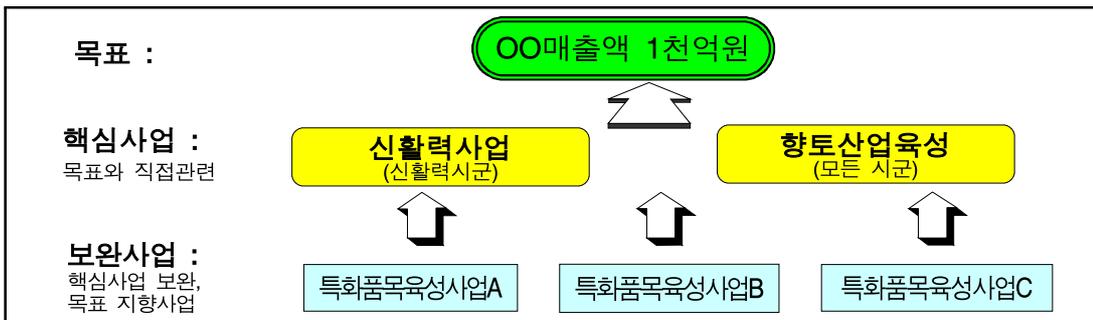


< 농촌활력증진사업 추진절차 >

추진절차	추진주체	내 용
① 계획 수립	시·군	· 시·도를 경유, 농식품부에 승인신청
② 계획 심사 및 승인	농식품부, 균형위	· 자문위원회 심사 후 사업계획 승인 · 부적정한 계획은 지자체에 수정 요청
③ 사업추진	시·군, 시·도	· 시·도는 사업추진상황 점검·관리
④ 평가 및 인센티브	농식품부 시·도	· 농식품부 사업추진성과 등을 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실시
⑤ 모니터링, 컨설팅 지원	농식품부	· 시·군 사업진단, 컨설팅 지원 · 시·군 사업상황 모니터링 등 측면지원

\* 향토산업육성사업은 공모방식으로 지원대상 시·군 선정, 그외 사항 동일

< 농촌활력증진계획 체계 >



○ 추진내용

- 지원분야 : 농어촌산업육성을 위한 S/W, H/W분야 포괄지원
  - 지역내 사업추진 주체에 대한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네트워크 활동, 홍보·마케팅, 제품·브랜드 개발 등 S/W분야 지원
  - 향토자원 산업화에 필요한 가공·유통·체험 시설·장비 등 H/W 분야 지원
- 추진내용
  - 신활력사업 : 70개 시·군, 1,882억원 지원
    - 본사업비 : 1,680억원 (낙후도에 따라 19~29억원 차등지원)
    - 인센티브 사업비 : 202억원(사업실적 평가 우수 30개 시·군)
  - 향토산업육성사업 : 76개 사업, 286억원 지원
  - 특화품목육성사업 : 404개 사업 1,273억원 지원

###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4,145			2,859	114	17,118
'05	70개 시군		2,000					2,000
'06	70개 시군		1,900					1,900
'07	70개 시군 19개 향토자원		1,925			37	52	2,014
'08	70개 시군 49개 향토자원		1,971			54	62	2,087
'09	70개 시군 79개 향토자원		3,441			1,558		4,999
'10	70개 시군 109개 향토자원		2,908			1,210		4,118

※ '08년까지는 확정된 계획, '09년 이후는 향후 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4,145			2,859	114	17,118
'05	70개 시군		2,000					2,000
'06	70개 시군		1,900					1,900
'07	70개 시군 19개 향토자원		1,925			37	52	2,014
'08	70개 시군 49개 향토자원		1,971			54	62	2,087
'09	70개 시군 79개 향토자원		3,441			1,558		4,999
'10	70개 시군 109개 향토자원		2,908			1,210		4,118

#### 4. 성과목표 달성도

○ '08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당초 제시한 성과지표상 목표치 이상을 달성하였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촌활력증진사업 (신활력, 향토산업육성사업)	일자리창출	실태조사	명	2,000	2,546	127.3
	향토자원 산업화 실적	"	건수	49	49	100.0

담당부서	농촌자원과	담당자	장면주
전화번호	031.299.2673	이메일	farmkorea@korea.kr

## 1. 사업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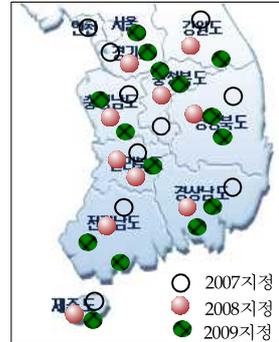
- 향토음식자원화로 농가의 경영다각화 및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안전 먹을거리 공급
- 농가의 생산, 가공, 서비스의 유통일원화로 농가소득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식자재, 가공식품, 향토음식, 지역문화를 연계한 향토음식세계화로 한식 세계화 기여
- 추진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8조(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 농촌진흥법 제2조2항(농촌지도사업은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의 보급)
  - 농촌진흥법 제13조1항(농촌지도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에 사업비 보조)
  -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며 국민의 건강을 증진)
  -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31조 (향토산업의 진흥 : 지역에 고유하거나 문화, 기술, 특산품등의 조사, 발굴, 상품화 및 계승에 대한 지원)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7년 ~ 2012년
- 사업주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 추진체계 : 농촌진흥청 - 도농업기술원 -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대상자
- 사업량 및 사업비 : 120개소 56억원 (국비 50%)
- 시행방법 : 자치단체 자본보조 (보조율 100%)

○ 추진내용

- 사업대상 : 시군 농업기술센터, 향토음식 연구회, 향토음식에 경험과 기술을 가진 농촌주민, 농촌여성이 주축



- 사업내용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기반조성 및 활성화 지원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대상자 교육지원 : 향토음식사업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사업대상자 역량개발 및 교육
- 지역 농림수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향토음식 개발 및 상품화 지원
  - 솜씨보유자 발굴, 향토음식 조리법의 표준화, 스토리텔링 개발
- 발굴된 대표 향토음식의 향토지적재산 등록, 특허출원, 홍보·전시
- 지역농산물(1차), 가공(2차), 농가민박, 농촌체험(3차)과 연계 네트워크 구축지원

**향토음식사업장 (농가맛집 운영자)**

- 향토음식사업장 : 농가맛집 조성 및 운영
- 농가맛집 운영을 위한 기자재 설치지원 등
- 지역 고유성이 있는 향토음식의 지속적인 식단개발
- 사업운영자의 지속적인 전문능력 함양 : 세무, 회계, 위생규정 및 안전관리, 서비스, 경영, 법률 등
- 지역문화를 스토리텔링화하여 대표음식 메뉴개발
- 자가농산물, 지역농산물, 가공식품, 민박, 체험활동과 연계운영

### 3. 연차별 추진계획

- '07년부터 2012년까지 120개소를 목표로 추진
- '07~'08년 : 20개소 14억원(국비·지방비 각 50%)
- '09년 : 15개소 15억원(국비·지방비 각 50%) 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5	22				22		44
'05								
'06								
'07	10	3.5				3.5		7
'08	10	3.5				3.5		7
'09	15	7.5				7.5		15
'10	15	7.5				7.5		15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5	14.5				14.5		29
'05								
'06								
'07	10	3.5				3.5		7
'08	10	3.5				3.5		7
'09	15	7.5				7.5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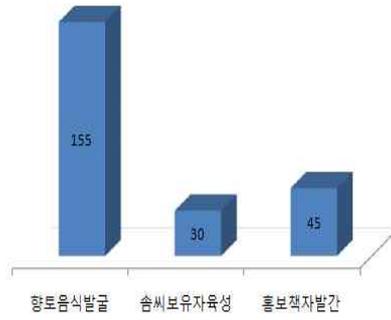
###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183%
  - '09년 목표치 : 향토음식 상품화 증가율 10%
  - '09년 실적치 : 향토음식 상품화 증가율 18.3% (개소당 9종)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A)	실적(B)	B/A(%)
향토음식 자원화사업	향토음식 상품화 증가율	지원후 2년차 이상되는 사업장의 상품화 증가율 조사	%	10	18.3	183

< '09년 추진 결과 >

- 향토음식자원화 사업장 개설건수는 목표(15개소) 대비 150%(15개소) 달성
- 전년도 대비 향토음식상품화 증가율 : 18.3% (평균 향토음식 상품화는 9종임)
- 향토음식 상품화 아이템 개발 155건
- 향토음식 숨씨보유자 발굴 실적 : 30명
- 향토음식 교육프로그램 참여인원 : 2,766명
- 향토음식 홍보책자 발간실적 : 45종



4-1-2-9(계속)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한 농공단지조성 (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김일환(사무관)
전화번호	02-500-1797	이메일	kimiw@mifaff.go.kr

### 1. 사업목표

- 농어촌 재촌 및 취업기회 확충을 목적으로 농어촌지역에 저렴한 공장부지를 조성, 기업(공장)을 유치하여 농어촌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84년 ~
- 총사업비 : 598억원('08년까지 기투자액 : 4,704억원)
- 사업규모 : 53개소(신규18, 계속35)
- 지원형태 : 국비보조
- 지원조건 : 정액지원(1.5~7만원/3.3058m<sup>2</sup>)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시장·군수)

###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05	32		420			524		944
'06	28		260			298		558
'07	28		314			187		501
'08	47		428			563		991
'09	53		598			690		1,288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05	32		420			524		944
'06	28		260			298		558
'07	28		314			187		501
'08	47		428			563		991
'09	53		598			690		1,288

####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09년까지 농공단지 354개 조성(최종)을 목표로 '08년 330개 조성
  - 농공단지 활성화방안 마련 등으로 사업목표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공단지조성	농공단지 조성율	농공단지조성 개수	단지	354	332	93.8

\* '09.9월 현재 396개소 지정하여 현재 조성중에 있음

담당부서	인적자원개발과	담당자	박준용 사무관
전화번호	01-2110-7266	이메일	pjy0713@molab.go.kr

## 1. 사업목표

- 향후 한미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개방화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에게 전업지원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능력제고 및 생활안정 도모
- 지원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고용정책기본법 제20조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9.1.1 ~ 12.31 (계속사업)
- 사업비 : 881백만원
- 사업규모 : 386명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보조(국고보조를 80%)
- 지원조건 : 훈련실시 과정에 대하여 훈련기관에는 훈련비 전액을, 소정훈련 일수의 80%이상을 출석한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을 지원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제외)
- 추진경위
  - '94년 농어민 직업훈련과 고용촉진훈련을 통합하여 노동부에서 실시
  - '95년 이후 UR 타결과 관련 농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 농어민 후생복지대책의 일환으로 추진기로 결정,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로 실시
- ※ '06년 회계정비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변경

○ 사업집행절차

사업계획서 및 실적 평가, 지자체별 지원금 결정('10.1월~, 노동부) →  
 훈련과정 승인 및 훈련생 모집('10.2월~, 지자체) → 사업실시('10.3월~, 지자체)

###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296	59.6	1.5			2.2		63.3
'05	1,000	13						13
'06	864	13						13
'07	515	12	1					13
'08	515	13	0.2					13.2
'09	402	8.6	0.3			2.2		11.1

#### 〈연도별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05	716	13						13
'06	426	13						13
'07	380	12	1					13
'08	482	13	0.2					13.2
'09	365	8.6	0.3			2.2		11.1

###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	취업률	(조기취업+수료후취업)/(수료인원+조기취업)×100	%	43.7	47.0	107.6

※ 실적 : '09년 12월말기준(잠정)

4-2-1-1(계속)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농촌사회과	담당자	김춘기(사무관)
전화번호	02-500-1822	이메일	kimcg@korea.kr

## 1. 사업목표

- 주40시간 근무제 등으로 증대되고 있는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농촌으로 유치하여 농외소득증대 등 농촌지역 활력 증진 도모
- 친환경 농업,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업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농촌지역의 공동체 형성·복원
-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휴양·체험공간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여 농촌체험관광 및 도농교류 거점으로 활용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2년 ~ 2017년
- 총사업비 : 1,276억원('08년까지 기 투자액 : 364억원) \*국고기준
- 사업규모 : 850개
- 지원근거 : 도시와농어촌간의교류촉진에관한법률 제6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5조(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 지원조건 : 마을당2억원(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지원내용 : 도시민 유치를 위해 필요한 마을 공동의 농촌체험기반시설, 마을경관 조성, 생활편의시설, 기타 S/W관련사업 등 조성

###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66	-	366		-	366	-	732
'05	47		47			47		94
'06	67		67			67		134
'07	84	-	84		-	84	-	168
'08	90	-	90		-	90	-	180
'09	78	-	78		-	78	-	156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66	-	366		-	366	-	732
'05	47		47			47		94
'06	67		67			67		134
'07	84	-	84		-	84	-	168
'08	90	-	90		-	90	-	180
'09	78	-	78		-	78	-	156

### 4. 성과목표 달성도

####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녹색농촌체험마을 방문객 수 : (목표) 3,232천명, (실적) 3,626천명으로 목표치 대비 12.2% 증가
-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관광매출액 : (목표) 430억원, (실적) 445억원으로 목표치 대비 3.5% 증가

☞ '2009 농어촌 여름휴가페스티벌' 개최('09. 7), 1사1촌운동 전개 등으로 농촌체험마을을 방문하는 도시민이 증가하여 목표치를 달성함

☞ 또한, 분기별 원활한 자금배정, 사업 시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으로 녹색농촌 체험마을 신규 90개소 조성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A)	실적(B)	B/A(%)
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	마을 방문객 수	총 방문객 수	천명	3,232	3,626	12.2
	농촌관광 매출액	총 매출액	억원	460	445	3.5

4-2-1-2(계속)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사업(농촌진흥청)
-------------	-----------------------

담당부서	농촌자원과	담당자	김보균
전화번호	031)299-2678	이메일	dreamkbg@korea.kr

## 1. 사업목표

- 사업목표 : 농촌전통자원의 발굴 활용으로 도농간 상생적 교류를 촉진하여 농촌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추진근거
  - 농업·농촌 기본법 제8조(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및 38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도시와 농산어촌 교류 확대)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2년 - 2009년 (마을단위 2년)
- 사업주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 추진체계 : 농촌진흥청 - 도농업기술원 - 시군농업기술센터 - 마을
  - 『②-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설명 참조
- 시행방법 : 민간자본보조 (보조율 100%)
- 추진내용
  - 마을 고유의 테마 및 마을별 7거리 자원의 체계적 발굴
  - 하드웨어 측면 : 체험·학습시설, 편의시설, 마을환경 정비 등
  - 소프트웨어 측면 : 마을 고유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매뉴얼, 주민교육, 소득자원 개발, 홍보 및 마케팅 등

### 3. 연차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사업비 지원('02 ~ '09) 170마을, 170억원(국비)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5(기존 제외)		133.75			134.45		268.2
'05	21		20			20		40
'06	31		25.2			24.8		50
'07	34		32.7			32.3		65
'08	39		37.4			38.8		76.2
'09	37(기존)		18.45			18.55		37
'10	-		-			-		-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4		114.8			115.4		230.2
'05	20		19.5			19.5		39
'06	31		25.2			24.8		50
'07	34		32.7			32.3		65
'08	39		37.4			38.8		76.2

###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마을당 방문객 수(조성기간 마을 제외)를 조사한 결과 15.7천명으로 '09년도 목표(14천명)대비 112% 초과달성함
  - 마을당 매출액(조성기간 마을 제외)를 조사한 결과 103백만원으로 '09년도 목표(97백만원)대비 106.2% 초과달성함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마을당 방문객수	농촌전통테마마을 전체 방문객 수를 마을 수로 나누어 산출 (조성기간 마을은 분석에서 제외)	천명	14	15.7	112
	마을당 매출액	농촌전통테마마을 전체 도농교류 매출을 마을 수로 나누어 산출 (조성기간 마을은 분석에서 제외)	백만원	97	103	106.2

담당부서	지역문화과	담당자	김효진
전화번호	02-3704-9553	이메일	hyojin21@korea.kr

## 1. 사업목표

### ○ 사업목적

- 5천년 민족문화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우리 삶의 터전인 마을의 문화를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지속가능한 마을로 가꾸고,
- 마을의 문화·역사적 소재를 발굴·육성, 관광자원화하여 문화와 환경이 아름답게 조화된 자생력 있는 마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 소득 증대 등 정주민족도 제고

### ○ 사업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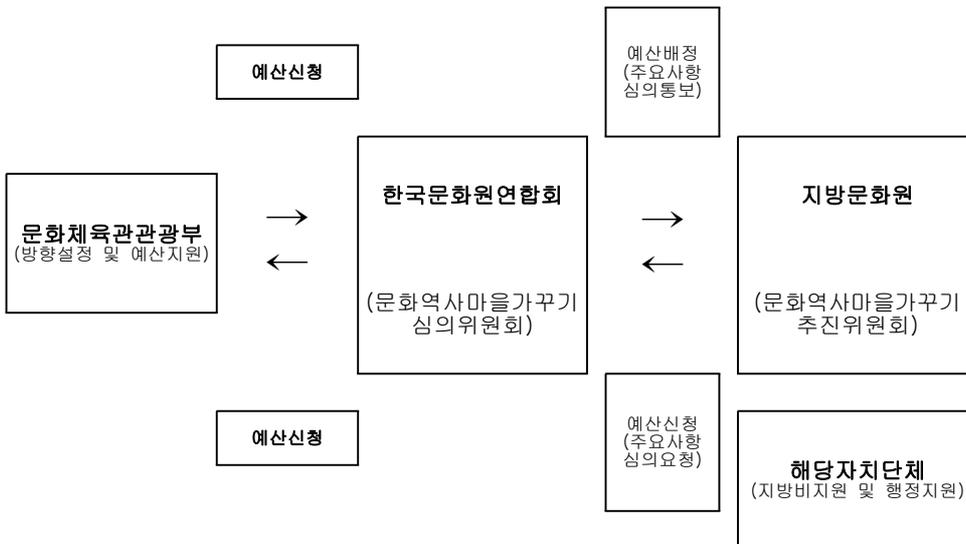
- 물량위주의 건축, 마을정비 사업보다는 문화·역사·환경·소득이 조화된 장기적 마을발전 전략 수립 운영
- 지역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객 증대를 위한 마을별 특화된 사업 전개로 경관개선, 관광상품 개발, 역사마을 체험프로그램 및 마을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
- 일률적인 개발방식을 지양하고 마을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마을 조성

### ○ 사업추진근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5년(2004~2009년) / 1개 마을당 약 3년
- 총사업비 : 239억원(기금 154.5억원, 지방비 84.5억원 / '08년까지 기투자액 : 198억원)
- 사업규모 : 9개도 13개 마을 조성
- 지원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 보조사업자 : 한국문화원연합회
- 간접보조사업자 : 지방문화원
- 추진내용 : 13개 마을 조성 완료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추진체계



###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개 마을				155	85		240
'04	1개 마을				10	5		15
'05	6개 마을				30	15		45
'06	4개 마을				35	18		53
'07	8개 마을				23	14		37
'08	8개 마을				30	15		45
'09	6개 마을				27	18		45

※총 13개 마을을 지원하나, 계속사업으로 인해 예산은 연도별로 1~4회 분할하여 교부함

연 도	추진계획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선정(3개) - 안동 군자마을, 영광 효동마을, 서귀포 법환마을</li> <li>○ 사업착수(1개) - 안동 군자마을</li> </ul>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선정(7개) - 원주 회촌마을, 강릉 학산마을, 서천 동자북마을, 통영 문어포마을 - 정읍 원촌마을, 고창 사등마을, 의령 입산마을</li> <li>○ 사업착수(6개) - 영광 효동마을, 서귀포 법환마을 - 원주 회촌마을, 강릉 학산마을, 서천 동자북마을, 통영 문어포마을</li> </ul>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선정(2개) - 충주 목계마을, 진천 보련마을</li> <li>○ 사업착수(3개) - 정읍 원촌마을, 고창 사등마을, 의령 입산마을</li> </ul>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선정(1개) - 안성 덕봉마을</li> <li>○ 사업착수(3개) - 안성 덕봉마을, 충주 목계마을, 진천 보련마을</li> <li>○ 사업완료(1개) - 안동 군자마을</li> </ul>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추진(12개) - 영광 효동마을, 서귀포 법환마을, 원주 회촌마을, 강릉 학산마을, 서천 동자북마을, 통영 문어포마을, 정읍 원촌마을, 고창 사등마을, 의령 입산마을, 안성 덕봉마을, 충주 목계마을, 진천 보련마을</li> </ul>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완료(12개) - 영광 효동마을, 서귀포 법환마을, 원주 회촌마을, 강릉 학산마을, 서천 동자북마을, 통영 문어포마을, 정읍 원촌마을, 고창 사등마을, 의령 입산마을, 안성 덕봉마을, 충주 목계마을, 진천 보련마을</li> </ul>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개 마을				155	85		240
'04	1개 마을				10	5		15
'05	6개 마을				30	15		45
'06	4개 마을				35	18		53
'07	8개 마을				23	14		37
'08	8개 마을				30	15		45
'09	6개 마을				27	18		45

※총 13개 마을을 지원하나, 계속사업으로 인해 예산은 연도별로 1~4회 분할하여 교부함

연 도	추진실적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선정(3개도 3개마을) - 안동 군자마을, 영광 효동마을, 서귀포 법환마을(10월)</li> <li>○ 사업착수(1개마을) - 안동 군자마을(12월)</li> </ul>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선정(4개도 7개마을) - 원주 회춘마을, 강릉 학산마을, 서천 동자북마을, 통영 문어포마을(9월) - 정읍 원촌마을, 고창 사등마을, 의령 입산마을(9월)</li> <li>○ 사업착수(6개마을) - 영광 효동마을, 서귀포 법환마을(3월) - 원주 회춘마을, 강릉 학산마을, 서천 동자북마을, 통영 문어포마을(12월)</li> </ul>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선정(1개도 2개마을) - 충주 목계마을, 진천 보련마을(11월)</li> <li>○ 사업착수(3개마을) - 정읍 원촌마을, 고창 사등마을, 의령 입산마을(6월)</li> <li>○ 기공식(1개마을) - 안동 군자마을(11월)</li> </ul>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선정(1개도 1개마을) - 안성 덕봉마을</li> <li>○ 사업착수(3개마을) - 안성 덕봉마을(6월), 충주 목계마을, 진천 보련마을(3월)</li> <li>○ 사업완료(1개마을) - 안동 군자마을(9월)</li> <li>○ 기공식 및 준공식(2개마을) - 기공식 : 서귀포 법환마을(11월) / 준공식 : 안동 군자마을(8월)</li> </ul>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추진(12개마을) - 영광 효동마을, 서귀포 법환마을, 원주 회춘마을, 강릉 학산마을, 서천 동자북마을, 통영 문어포마을, 정읍 원촌마을, 고창 사등마을, 의령 입산마을, 안성 덕봉마을, 충주 목계마을, 진천 보련마을</li> <li>○ 기공식(5개마을) - 영광 효동마을(2월), 원주 회춘마을(5월), 충주 목계마을(9월), 정읍 원촌마을(9월), 서천 동자북마을(11월)</li> </ul>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식 및 사업완료(12개마을) - 영광 효동마을(완료4월, 준공식6월), 서귀포 법환마을(완료4월, 준공식4월), 원주 회춘마을(완료6월, 준공식6월), 강릉 학산마을(완료6월, 준공식8월), 서천 동자북마을(완료10월, 준공식10월), 통영 문어포마을(완료4월, 준공식5월), 정읍 원촌마을(완료6월, 준공식6월), 고창 사등마을(완료11월, 준공식12월), 의령 입산마을(완료6월, 준공식8월), 안성 덕봉마을(완료12월, 준공식12월), 충주 목계마을(완료12월, 준공식 11월), 진천 보련마을(완료12월, 준공식11월)</li> </ul>

####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동 사업은 '09년 최종 사업완료('07년 1개, '09년 12개 조성완료)되었으며, 주민 정주민족도 평가는 '08년 목표 70%에서 상향조정된 80%의 목표치를 계획했으며, 주민대상 등 '09년 모니터링 평가 설문조사 결과 지속적인 시범프로그램운영 등을 통한 사업이해도 및 자생적 능력 향상으로 주민만족도는 목표치보다 높음을 알 수 있었음. 또한 사업완료되어 가시적인 결과물(건축물, 운영프로그램, 경관개선 등)이 도출되어 만족도는 상회되었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문화역사마을 조성	주민만족도	리커트 5점 척도 설문조사	%	80	85	106%

4-2-1-4(계속)	어촌체험마을 조성(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수산개발과	담당자	송경석(주무관)
전화번호	02-500-2330	이메일	kssong@mifaff.go.kr

**1. 사업목표**

- 어업체험을 중심으로 어촌의 자연환경, 생활문화등과 연계한 관광 기반시설을 조성, 어업인의 어업외 소득증대 및 어촌경제활성화 도모
- 사업추진 근거 : 어촌어항법 제49조2(어촌관광 활성화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1~'13년(13년간)
- 총사업비 : 731억원('09년까지 681백만원)
- 사업규모 : 112개 어촌체험마을('09년까지 102개)조성
- 사업주체 : 시장·군수
- 지원규모 : 개소당 500백만원을 기준으로 증·감하되, 기본계획에 의한 투자금액 이내
- 지원방식 : 지자체 보조(국비50%+지방비45%+자담5%)
- 추진체계 : 사업신청(마을) → 마을선정(시·군, 시·도) → 개발계획 수립(시·군) → 기본계획 협의(시·도→농림수산식품부) → 예산지원(농림수산식품부→시·도→시·군) → 사업시행 및 어촌체험마을 운영(시·군 및 마을)
- 추진내용 : 관광안내소, 진입로, 주차장, 샤워장, 화장실 등의 관광 기반시설 및 소프트웨어사업 등

###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2개소		205			184	20	409
'05	18개소		55			50	5	110
'06	18개소		69			62	7	138
'07	11개소		41			36	4	81
'08	8개소		30			27	3	60
'09	7개소		22			19	2	43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2개소		165			148	16	329
'05	18개소		55			50	5	110
'06	18개소		69			62	7	138
'07	11개소		41			36	4	81
'08	8개소		30			27	3	60
'09	7개소		22			19	2	43

###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성과지표 : 체험객수, 체험소득

\* '09사업계획 : 7개 마을 조성 22억원 지원(국비기준)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어촌체험마을 조성	체험객수	체험마을 체험객수	천명	640	744	116
	체험소득	체험마을 체험소득	백만원	12,920	16,759	130

<b>4-2-1-5(계속)</b>	<b>어촌관광활성화 사업(농림수산식품부)</b>
--------------------	----------------------------

담당부서	수산물개발과	담당자	송경석(주무관)
전화번호	02-500-2330	이메일	kssong@mifaff.go.kr

**1. 사업목표**

- 주5일 근무제 실시 등으로 증가하는 어촌관광 수요에 대비하여 어촌에 대한 지원을 소득·관광기반 중심으로 전환, 지원함으로써 어업외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사업추진 근거 : 어촌·어항법 제49조2(어촌관광 활성화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4년 ~ '09년
- 총사업비 : 1,040억원('09년까지 기 투자액 636억원)
- 사업규모 : 개소당 50억원(7개소), 60억원(11개소)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Matching Fund)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사업추진주체 : 시·도지사(시·군·구)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계	16(11)		307			307	0	614
'05	1(1)		1			1		2
'06	4(4)		35			35		70
'07	10(8)		120			120		240
'08	12(11)		80			80		160
'09	10(10)		71			71		142

\* ( )내는 계속사업 권역수임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계	16(11)		307			307	0	614
'05	1(1)		1			1		2
'06	4(4)		35			35		70
'07	10(8)		120			120		240
'08	12(11)		80			80		160
'09	10(10)		71			71		142

\* ( )내는 계속사업 권역수입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성과지표 : 어업인만족도

\* '09사업계획 : 10개소(계속사업 10개소) 71억원 지원(국비기준)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어촌어항관광개발	어업인만족도	기준년도 대비	%	67	67.5	100.7

담당부서	산림휴양등산과	담당자	조병철(사무관)
전화번호	042-481-4211	이메일	cho0411@foresr.go.kr

## 1. 사업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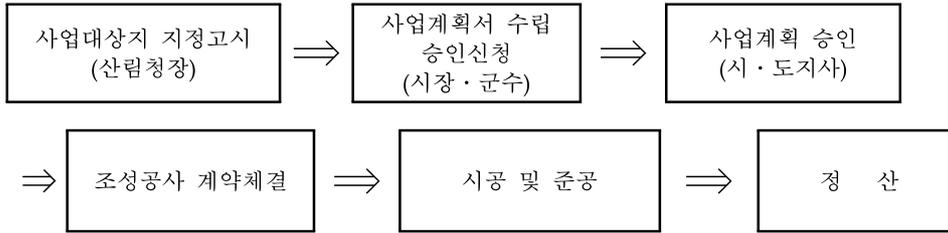
- 도시화, 산업화로 환경 건강에 대한 관심이 무한히 커져감에 따라 국민들이 산림내에서 단기 체류를 하면서 산림이 가지고 있는 정화 기능과 치유능력 등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을 향유하고 산림의 중요성 이해 및 다양한 산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88~계속
- 사업주체 : 산림청, 시·도 및 시·군·구
- 사업추진 내용
  - 지원대상 : 국가 및 지자체
  - 사업규모
    - 설계 : 3개소(지자체 3)
    - 조성 : 14개소(지자체 14)
    - 보완 : 64개소(국가 37 , 지자체 27)
    - 산림욕장 : 16개소(지자체 16)
  - 지원조건
    - 국유자연휴양림 조성(30억) : 국가 100%
    - 국유자연휴양림 보완(4억) : 국가 100%
    - 지자체자연휴양림 조성(30억) : 국가 50%, 지자체 50%
    - 지자체자연휴양림 보완(4억) : 국가 50%, 지자체 50%

- 지자체 산림욕장 조성(4억) : 국가 50%, 지자체 50%
- 사업 주요내용 : 자연휴양림 조성 및 보완, 산림욕장, 숲속수련장 등

○ 사업추진 체계



###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11		1,247	1,496		921	51	3,715
'05	31		103	209		94	7	413
'06	45		176	214		127	7	524
'07	71		281	211		197	7	696
'08	76		240	222		184	10	656
'09	97		214	323		156	10	703
'10	94		273	330		273	5	881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23		560	634		418	21	1,633
'05	31		103	209		94	7	413
'06	45		176	214		127	7	524
'07	71		281	211		197	7	696
'08	76		240	222		184	10	656
'09	94		214	323		156	10	703

- '09년도 사업물량 목표치 대비 실적은 모두 달성하였으며, 향후 자연휴양림 조성시 사전환경성검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 단축을 추진하여 조기집행 및 조기완공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적극 기여

####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산림휴양시설 조 성	국유림	보완	개소	37	37	100
	공유림	설계·조성·보완	개소	48	48	100
	산림욕장	설계 및 조성	개소	16	16	100

담당부서	농촌사회과	담당자	이명남(사무관)
전화번호	02-500-1817	이메일	mnlee@mifaff.go.kr

### 1. 사업목표

- 도시와 구별되는 농어촌의 독특한 자연·문화·사회자원을 토대로 다양한 유형의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 농어민과 도시민에게 친환경적인 휴식·레저·체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농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7년 ~
- 총사업비 : 2,125억원('09년까지 기투자액 : 167억원)
- 사업규모 : 총85개 조성('09년까지 완료 0개소, 추진중 22개소)
- 지원형태 : 지자체보조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3. 연차별 추진계획

- 2018년까지 총 85지구 추진
  - 지자체 수요 및 여건을 고려, 각 도별로 10~11개소 추진 예정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2	-	-	167	-	167	-	334
'05								
'06								
'07	4	-	-	16	-	16	-	32
'08	8	-	-	56	-	56	-	112
'09	10	-	-	95	-	95	-	190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2	-	-	167	-	167	-	334
'05								
'06								
'07	4	-	-	16	-	16	-	32
'08	8	-	-	56	-	56	-	112
'09	10	-	-	95	-	95	-	190

## 4. 성과목표 달성도

- 테마공원조성사업 대상주민 만족도 조사결과가 88%로 목표 75% 대비 17% 초과달성
- 대상지구 선정, 지자체장의 사업추진의지 및 주민참여 등 사업주체의 적극적 참여와 추진으로 사업 활성화에 기여
- ⇒ 농촌주민과 도시민에게 친환경적 휴식 및 체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농교류 및 농촌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마련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촌 테마공원조성	테마공원조성사업 대상주민 만족도	만족도	%	75	88	117.3

4-2-1-11(계속)	해양관광자원개발(국토해양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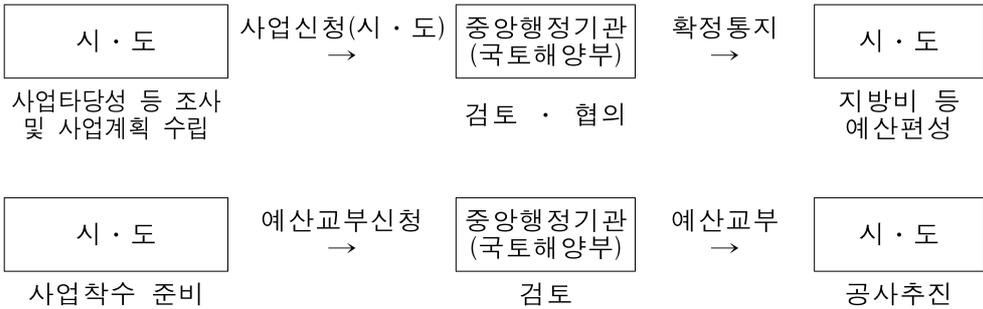
담당부서	해양정책과	담당자	송화용(주무관)
전화번호	02-2110-6330	이메일	shy0311@korea.kr

### 1. 사업목표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우수한 해양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국민들의 해양관광 수요충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5년부터 계속
- 총사업비 : 계속사업('09년까지 국고 330억원 투자)
- 지원조건 : 지자체 보조(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내용 : 백사장항 해양관광자원개발(태안군) 등 22개 사업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지자체(시장, 군수)
  - 사업추진절차



###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광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8개소		65,872			75,949	6,000	147,821
'05	4개소		3,070			3,345	-	6,415
'06	9개소		7,900			8,500	-	16,400
'07	6개소		4,650			5,275	6,000	15,925
'08	14개소		4,175			7,325		11,500
'09	23개소		13,189			16,016		29,205
'10	22개소		16,217			18,817		35,034
'11	30개소		16,671			16,671		33,342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광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3개소		19,795			40,461	6,000	79,445
'05	4개소		3,070			3,345	-	6,415
'06	9개소		7,900			8,500	-	16,400
'07	6개소		4,650			5,275	6,000	15,925
'08	12개소		4,175			7,325		11,500
'09	22개소		13,189			16,016		29,205

###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22개소 13,189백만원 교부하여 목표치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해양관광 자원개발	계획대비 추진실적	계획대비 집행실적	%	13,189	13,189	100

\* 당초 23개소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지자체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22개소 추진

담당부서	농촌자원과	담당자	임은성
전화번호	031)299-2679	이메일	lim77@korea.kr

## 1. 사업목표

### ○ 목 표

- 농촌·자연에서 발굴한 소재를 초·중·고교의 체험활동 교과과정과 연계 운영할 수 있는 농촌교육농장 육성
- 농업·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부가가치 증진

### ○ 사업추진 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50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 농촌진흥법 제13조1항(농촌지도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에 사업비 보조)
- 농어촌정비법 제67조 (농어촌관광휴양의 지원·육성)
- 초중등교육법 제48조 5항(수업운영방법 중 교외체험학습 허가)
-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확대)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년~2015년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 국비, 지방비 각 50%
- 사업시행주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 시행방법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대상 보조사업 추진
  - 기술지도 및 현장교육, 농업인교사양성과정 병행 추진
- 추진내용

- 교과과정과 연계한 농촌체험 학습활동 기반조성
  - 주제중심통합접근 프로그램 및 워크북 개발
  - 교육시설·장비 설치, 교구·교재 제작 및 구입 등
- S/W 관련사업 : 전문 컨설팅, 보험, 홍보 등
- 농업인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사양성과정 운영

###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40	30				30		60
'05								
'06	8	1				1		2
'07	48	6				6		12
'08	60	7.5				7.5		15
'09	60	7.5				7.5		15
'10	64	8				8		16

\* 산출근거 : 1개소 100백만원<25백만원×4분야(1개소)×50%=국비50백만원>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6	22				22		44
'05								
'06	8	1				1		2
'07	48	6				6		12
'08	60	7.5				7.5		15
'09	60	7.5				7.5		15

####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09년도에 지원한 농촌교육농장 체험 참가자수는 2,138명으로 목표인 1,880명에 비해 114% 초과달성하였음
  - '09년도에 지원한 농촌교육농장의 농장당 매출액을 조사한 결과 농장당 35,616천원으로 목표인 21,845천원으로 163% 초과달성하였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촌 교육농장	농장당 체험프로그램 참가자수	교육농장 시범사업 시행 후 체험학생 수	명	1,880	2,138	114
	농장당 매출액	농외소득을 제외하고 교육농장 운영을 통한 농장당 매출액	천원	21,845	35,616	163

담당부서	관광진흥과	담당자	박성필
전화번호	02-3704-9760	이메일	psp1024@korea.kr

## 1. 사업목표

- 지역축제 중 관광상품성이 있는 축제를 국제적인 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하여 외래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친환경, 향토특산물 등을 활용한 관광축제 활성화를 통해 농어민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8~ 계속
- 사업비 : 7,800백만원(2008년도)
- 사업규모 : 문화관광축제 56개 선정·지원
- 시행방법
  - 지원형태 : 자치단체 경상보조
  - 지원조건 : 정율지원(관광진흥개발기금 50%, 지방비 50%)
  - 사업절차 : 문화관광축제 추진계획 수립 시달(문화부→시·도) → 사업계획수립(축제 추진주체) → 사업신청(시·군·구) → 문화관광축제 추천(시·도 → 문화관광부) → 문화관광축제 선정 및 등급결정(문화부) → 예산지원(문화부 → 시·도 → 시·군·구) → 사업시행 및 문화관광축제 개최(시·군·구) → 사업평가(문화부 등) → 평가결과 다음해 선정시 피드백

###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62				258	258		516
'05	45				25	25		50
'06	52				40	40		80
'07	52				40	40		80
'08	56				78	78		156
'09	57				75	75		150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05	45				25	137		162
'06	52				40	132		172
'07	52				39	169		208
'08	56				78	180		258
'09	57				75	150		225

- 제주도 3개 축제는 특별자치도 승격으로 관광진흥기금 미지원(기금 1.7억원)

#### 〈연도별 축제지원 세부내역〉

##### ○ 2005년도

- 문화관광축제 선정, 지원 : 총 45개 축제, 2,500백만원
  - 최우수 축제 : 3개 축제, 각 250백만원
  - 우수축제 : 7개 축제, 각 130백만원
  - 지역육성 : 8개 축제, 각 60백만원
  - 유망축제 : 9개 축제, 각 40백만원
  - 예비축제 : 18개 축제, 예산 지원없이 행정지원

○ 2006년도

- 문화관광축제 선정, 지원 : 총 52개 축제, 3,500백만원
  - 최우수 축제 : 5개 축제, 각 300백만원
  - 우수축제 : 9개 축제, 각 150백만원
  - 유망축제 : 13개 축제, 각 50백만원
  - 예비축제 : 25개 축제, 예산 지원없이 행정지원
- 축제 테마 박람회 개최 지원 : 300백만원

○ 2007년도

- 문화관광축제 선정, 지원 : 총 52개 축제, 3,500백만원
  - 최우수 축제 : 7개 축제, 각 250백만원
  - 우수축제 : 9개 축제, 각 100백만원
  - 유망축제 : 17개 축제, 각 50백만원
  - 예비축제 : 19개 축제, 예산 지원없이 행정지원
- 문화관광축제박람회 개최 지원 : 500백만원

○ 2008년도

- 문화관광축제 선정, 지원 : 총 56개 축제, 7,300백만원
  - 대표축제 : 2개 축제, 각 800백만원
  - 최우수 축제 : 7개 축제, 각 250백만원
  - 우수축제 : 10개 축제, 각 100백만원
  - 유망축제 : 17개 축제, 각 50백만원
  - 예비축제 : 20개 축제, 각 30백만원
- 문화관광축제박람회 개최 지원 : 500백만원

○ 2009년도

- 문화관광축제 선정, 지원 : 총 57개 축제, 7,500백만원
  - 대표축제 : 2개 축제, 각 800백만원
  - 최우수 축제 : 8개 축제, 각 300백만원

- 우수축제 : 9개 축제, 각 150백만원
- 유망축제 : 17개 축제, 각 70백만원
- 예비축제 : 21개 축제, 각 30백만원
- 문화관광축제박람회 개최 지원 : 500백만원

####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축제 관광객수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표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신종플루 발생으로 대표축제 1건을 포함 총 10개의 문화관광축제가 취소되어 목표치 미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향토문화관광 축제육성	문화관광축제 총 관광객수	2008년 문화관광축제 참여 관광객	백만명	38	30	78.9
	문화관광축제 총 경제파급 효과	2008년 문화관광축제 경제 파급효과	억원	17,000	13,000	76.4

4-3-1-0(계속)	경관보전직불제(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유영수
전화번호	500-1808	이메일	yooys@korea.kr

### 1. 사업목표

- 유희농경지를 활용한 경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농촌 경관을 유지함으로써 도시민의 여가수요 증대에 부응
-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을 통한 농촌지역사회의 활성화 도모

### 2. 사업내용

- 농지를 활용한 경관작물의 재배관리 및 마을주민 참여를 통한 마을경관 가꾸기 등 마을경관보전활동을 지원
-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을 통한 적극적인 도농교류 프로그램 발굴로 농촌지역사회 활성화 유도
- 경관작물 재배관리실태,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연계 정도, 주변환경관리 등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지원조건	사업시행주체
· 경관보전직접지불	'05~'17	-억원 ('09까지 145억원)	연차적으로 경관보전지역 확대('17: 30천ha)	보조(70%)	시장·군수

### 3. 연차별 추진계획

- 지자체와 마을간 협약을 체결하고, 농지에 일반작물 대신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당해 농업인에게 경관보전 직접지불 보조금을 지급
- '09사업규모 : 16,169ha, 137억원(국고 96, 지방비 41)
- ※ 동계작물 100만원/ha, 하계작물 170만원/1ha, 마을경관보전활동비 30만원/ha(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 경관작물 : 경관형성이 주목적이고 효과가 우수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초화류(목본류는 제외)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ha)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44				62		206
'05	470	6				3		9
'06	470	6				3		9
'07	800	10				4		14
'08	3,252	26				11		37
'09	10,000	96				41		137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ha)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1,163	144				62		206
'05	470	6				3		9
'06	470	6				3		9
'07	800	10				4		14
'08	5,813	26				11		37
'09	16,171	96				41		137

####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성과지표 :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연계정도(%)

\* 전체시행 마을수 /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마을 수×100

- 경관작물 재배를 도농교류 축제와 연계하여야 하나, AI 확대 등으로 지역축제가 축소되어 당초 계획에 비해 실적이 다소 미흡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경관보전직불제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연계도	시행마을/연계마을 × 100	%	84	80	95.2

4-3-2-2(완료)	농촌어메니티 계획모델 개발 및 보급 (농촌진흥청)
-------------	--------------------------------

담당부서	농촌환경자원과	담당자	강방훈(농업연구사)
전화번호	031-290-0274	이메일	ipmkbh@korea.kr

### 1. 사업목표

- 농촌개발 정책사업 지원을 위해 지역의 생활권역 및 자원권역을 고려하여 농촌어메니티 자원을 농가소득과 연계하기 위한 자원화 기술 개발
  - 농촌어메니티 계획모델 개발(9유형) 및 보급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년 ~ 2009년
- 총사업비 : 8.4억원 ('09년 0.3억원)
- 사업규모 : 농촌어메니티 계획모델 개발(9유형) 및 현장보급에 필요한 기반기술 개발
  - '09년 : 농촌어메니티 자원 활용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 연구 1건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 3. 연차별 추진계획

- 농촌어메니티자원을 활용한 농촌어메니티 계획 모델 9유형 개발 및 현장 적용을 목표로 추진하였음
  - '06~'08년 : 매년 3개 유형의 모델을 개발하여 현장 적용을 실시하였음
  - '09년 : 농촌어메니티 계획모델의 현장보급에 필요한 기반기술 개발 연구로서 자원활용 라이브러리 체계 구축 및 자원 수준평가 지표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음
- ※ '09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농촌어메니티자원도 기반 자원활용

권역설정 방법 개발은 녹색기술 자문위원회 및 중간진도관리를 통해 현장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자원활용 라이브러리 구축으로 변경하여 추진함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9	-	-	8.4	-	-	-	8.4
'06	3	-	-	4	-	-	-	4
'07	3	-	-	3.1	-	-	-	3.1
'08	3	-	-	1.0	-	-	-	1.0
'09	-	-	-	0.3	-	-	-	0.3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9	-	-	8.4	-	-	-	8.4
'06	3	-	-	4	-	-	-	4
'07	3	-	-	3.1	-	-	-	3.1
'08	3	-	-	1.0	-	-	-	1.0
'09	-	-	-	0.3	-	-	-	0.3

- 농촌진흥청 조직개편 및 연구사업 추진 시스템의 개편(어젠다 중심)에 의거 삶의질 기본계획의 세부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추진계획의 일부가 조기 종결되었음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농촌어메니티자원 계획 모델 현장적용을 위한 지원기술 개발 1건을 목표치로 선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였음
    - ⇒ 영농활용 1건 : 농촌어메니티 자원활용 라이브러리 체계 개발
  - 지자체의 어메니티를 활용한 정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현장적용 지원 기술로서 '농촌어메니티 자원별 수준평가지표 개발' 연구를 통해 4개 대분류-34항목의 평가지표를 개발하였음

4-3-3-0(계속)	농산어촌형 경관주택 발굴·보급(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김학조(사무관)
전화번호	02-500-1811	이메일	h0225@mifaff.go.kr

## 1. 사업목표

- 농산어촌 지역에 적합한 경관주택을 발굴·보급함으로써 아름다운 농산어촌 경관 형성을 도모하고, 농산어촌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
  - 농어촌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변화된 주거생활을 반영한 다양한 농어촌주택 모델과 건축양식을 발굴 보급
  - 농어촌 뉴타운, 농어촌주거환경개선, 농촌마을종합개발, 전원마을 조성 등 지역개발사업에 활용하여 농어촌마을 경관형성 도모
- 사업추진 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55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제67조(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제108조(자금지원)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30조(농산어촌 경관의 보전)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8년 ~ 2016년
- 총사업비 : 45억원('09년까지 기투자액 : 10억)
- 사업규모 : 55종('09년까지 12종)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고 100%
-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 대상 : 농산어촌 지역에서 노후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민, 귀농·귀촌 예정자

○ 추진내용

- 농산어촌형 경관주택 모델을 개발·보급함으로써 농산어촌 주민의 경관주택 건축을 지원
  - 농어촌 경관주택 표준설계도서 개발·보급(12종 24유형)
  - 농어촌 저에너지 친환경주택 개발(10종)
  - 농어촌 경관이미지 형성을 위한 환경색채 적용 모델 개발
  - 웰촌 포털사이트, 농어촌공사 본사 및 지역본부 등을 통하여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보급, 건축상담 등 정보제공
- 2009년 농어촌건축대전을 통해 농산어촌 주택모델과 건축양식을 발굴·전시하고, 농어촌 주민과 귀농·귀촌 희망자 등 농어촌 건축수요자의 관심 제고
  - 농어촌건축대전 작품 공모 및 전시회 개최
  -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과 건축문화 발전방안 심포지엄 개최

○ 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시행지침 시달	농림수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계획 제출	한국농어촌공사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계획 승인	농림수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시행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결과 보고	한국농어촌공사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정산 및 성과평가	농림수산식품부

###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종)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종	10	-	-	-	-	-	10
'05	-	-	-	-	-	-	-	-
'06	-	-	-	-	-	-	-	-
'07	-	-	-	-	-	-	-	-
'08	주택모델개발	4	-	-	-	-	-	4
'09	12종	6	-	-	-	-	-	6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종)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종	10	-	-	-	-	-	10
'05	-	-	-	-	-	-	-	-
'06	-	-	-	-	-	-	-	-
'07	-	-	-	-	-	-	-	-
'08	주택모델개발	4	-	-	-	-	-	4
'09	12종(24유형)	6	-	-	-	-	-	6

###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성과지표 : 농어촌주택모델 개발 실적(목표 12종, 실적 12종)  
전시 및 홍보(목표 4만명, 실적 4만9천명)
  - 분야별 전문가 자문위원회 심의 및 표준설계도서 인정(국토부)  
등의 과정을 통하여 목표대비 실적이 100% 달성
  - 건축대전 홈페이지 운영,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2009 한국농어촌  
건축대전에 49,621명이 관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산어촌형 경관주택 발굴·보급	농어촌주택모델개발 실적	계획대비 실적	종	12종	12종 24유형	100
	전시 및 홍보	관람객수	명	40,000	49,621	120

4-3-4-0(계속)	자생식물원 및 생태숲 조성(산림청)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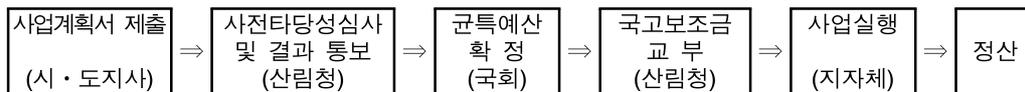
담당부서	산림환경보호과	담당자	김관중(주무관)
전화번호	042-481-4249	이메일	pj6736@forest.go.kr

## 1. 사업목표

- 사업 목적
  - 산림식물자원의 서식지내 보전기능을 강화하여 산림생태계의 안정과 산림생물의 다양성을 유지·증진하고 지역적으로 특색있는 숲을 조성
  - 산림생태계 연구와 함께 국민의 자연체험 및 환경교육의 장 제공
- 추진 근거
  - 「산림기본법」 제19조(수목원의 보호 및 육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산림생물 다양성의 보전)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사업비 등의 보조)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2년 ~ 계속
-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추진체계



- 지원형태 및 조건 : 지자체보조,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비 및 조성기간
  - 자생식물원 : 15억원, 3년(1년 설계, 2년 시공)
  - 지역생태숲 : 50억원, 6년(1년 설계, 5년 시공)

○ 추진내용

- 자생식물의 현지내 보전기능을 강화하여 산림생태계의 안정과 산림생물의 다양성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생태숲을 확대 조성
- 기후변화에 취약한 고산성·생육한계성 자생식물의 조사·증식·보존 및 서식지내 복원·적용사업 추진

### 3. 연차별 추진계획

○ 총사업비 : 1,426억원('09년까지 투자액 : 697억원)

○ '09년 사업규모

- 자생식물원 조성 : 4개소, 10억원
- 지역생태숲 조성 : 30개소, 120억원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9		562	52		614		1,228
'05	16	-	74	20	-	94	-	188
'06	23	-	123	5	-	128	-	256
'07	26	-	138	9	-	147	-	294
'08	30	-	107	8	-	115	-	230
'09	34	-	120	10	-	130	-	260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9		562	52		614		1,228
'05	16	-	74	20	-	94	-	188
'06	23	-	123	5	-	128	-	256
'07	26	-	138	9	-	147	-	294
'08	30	-	107	8	-	115	-	230
'09	34	-	120	10	-	130	-	260

###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자생식물원 및 생태숲 조성	지역생태숲 조성개수	지역생태숲 누적 조성개수	개소	38	38	100

4-3-5-0(계속)	경관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유영수
전화번호	500-1808	이메일	yooys@korea.kr

### 1. 사업목표

- 농촌경관이 체계적으로 보전·형성·관리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지역별 특성에 맞는 농어촌경관계획수립 시행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창출

### 2. 사업내용

- 농어촌경관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경관자원의 조사 분석, 경관계획 및 실행계획의 내용, 방법 및 작성수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농어촌경관계획 수립지침(요령) 배포
- 농촌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시 농촌경관을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추진체계 마련
  - 농어촌지역의 특성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농어촌 경관계획수립지침(요령) 현장적용 및 모니터링 실시
  - 농산어촌 경관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강화로 국민적 공감대 확산

### 3. 연차별 추진계획

- 농어촌경관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경관자원의 조사·분석, 경관계획 및 실행계획의 내용, 방법 및 작성수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농어촌 경관계획 수립지침(요령) 배포
  - 농촌경관 구성요소를 정립하고 현장에 적용하여 농촌경관의 수준을 평가 하는 종합적 농촌경관지표의 제정 추진

####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농어촌 경관계획 수립지침 보급 첫 해로서 지자체의 활용도가 낮아 만족도조사 미실시
- 다만, 지침 보급 자체로도 농어촌경관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경관 담당자에게 인지시켜 당초 목표를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촌경관계획수립 지침	농어촌경관계획수립 지침(요령) 만족도	설문조사	점	3.5점	3.5점	100

담당부서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담당자	박종완(사무관)
전화번호	02-500-1765	이메일	parkjw1@korea.kr

## 1. 사업목표

- 목적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 소득보조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육지지역은 읍·면지역 중 경지율 22% 이하, 경지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
  - 도서지역(제주도 포함)은 읍·면내 모든 법정리(경지율 및 경사도와 관계 없음)
- 근거 법률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0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 WTO 농업협정문 부속서 2의 13
  -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24조~제33조
- 사업목표 :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이탈농 지지율을 98.5%로 유지하여 동 지역의 공동화 예방 및 활성화 도모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4년~계속
- 총사업비 : 3,349억원('09까지 1,505억원)
- 사업규모 : 118천ha
-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자치단체경상보조(국고 70%), 민간경상보조(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 지원내용 : 일반지역과 조건불리지역의 농업생산성 차이의 일부를 지급 요건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보조금으로 지원

○ 추진절차

- 사업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 → 지자체(시·도 → 시·군 → 읍·면), 한국농어촌공사)  
→ 시행지침 홍보 및 사업안내(농림부·시·도, 시·군, 읍·면)
- 조건불리지역(법정리) 선정 통보(농식품부 → 지자체 → 대상 법정리)
- 사업신청(마을 → 읍·면 → 시·군) → 사업대상 마을 선정 통지  
(시·군 → 읍·면 → 대상 마을)
- 직불금 지급 신청(농업인 → 마을대표 → 읍·면 → 시·군) →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직불금액(보조금) 확정(시·군) → 보조금교부  
(농식품부 → 시·도 → 시·군) → 보조금 지급(시·군 → 농업인)

### 3. 연차별 추진계획

#### □ 기본방향 마련 및 사업 준비

- 직불제 기본방향 마련을 위한 실무대책반 운영('01.6~12월)
- 399개 오지면 경지경사도 측정 조사('02년)
- 횡성, 무주, 봉화 지역의 1개 면을 대상으로 도상연습 실시('02.4~5월)
- 강원도 3개 면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03년, 도비 3억원)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도입관련 연구용역 실시('03.4~'04.1월)
  - 조건불리지역 발전전략 및 활성화 방안 등 3건
- 시범사업 지역 모니터링 및 효과분석 연구용역 실시('04.8~'05.4월)
- 전국 1,420개 읍·면 경지경사도 측정('02년 399개, '04년 200, '05년 821)

#### □ 시범사업 및 본 사업 실시

- 399개 오지면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04~'05년)
  - '04계획 : 31천ha, 100억원, - '05계획 : 31천ha, 123억원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 본 사업 추진('06년 부터)
- 조건불리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 개정('07.4월)
  - 도서지역 지원확대, 임대차/사용대차 불가능 농지에 대한 직불금 지급제한 등
- 조건불리직접지불사업 이행점검시스템 개발 보급('07.10월)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천ha)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799	2,354	0	0	0	983	0	3,337
'05	31	123				37		160
'06	187	523				220		743
'07	187	523				222		745
'08	158	432				181		613
'09	118	336				144		480
'10	118	417				179		596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천 ha)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78	1,363				571		1,934
'05	31	104				37		141
'06	118	331				139		470
'07	109	311				131		442
'08	110	311				133		444
'09	110	306				131		437

- 영농규모가 영세한 농가의 직불금 미신청, 직불금 지급 부적격 농지에 대한 미지급금 발생 등으로 계획 대비 지원실적은 다소 감소

### 4.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 이탈농 지지율 - 지원대상 법정리의 최근 5 년간 평균 정주농 비율 대 비 당해년 정주농 비율 - 정주농 비율=금년 농가수/ 작년 농가수×100	시·군에서 농림사업통 합정보시스템(Agrix) 으로 제출한 연도별 농가수로 산출	%	98.5	100	101.5

담당부서	농촌사회과	담당자	이태용(사무관)
전화번호	02-500-1813	이메일	llty@korea.kr

## 1. 사업목표

- 1사1촌 운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범국민적 운동으로 정착유도
- 1사1촌 자매결연이 기업체를 중심으로 사회 각계로 확대되어 농업·농촌에 대한 범국민적 이해 증진 및 도농간 교류 활성화 유도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4~계속
- 추진내용 : 민간의 적극적인 추진 및 참여를 독려하여 범국민 운동으로 정착을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도농교류 활성화 기반 구축
  - 1사1촌 자매결연 내실화
    - 도농교류촉진법(안)에 체험·휴양마을의 음식제공·공동숙박 특례, 초·중등학생들의 농촌체험교육 근거,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 및 세제·금융지원 등 마련, 기업체, 학교 등의 동참 여건 조성
    - 6개월 이상 미 교류건 구분관리 및 실적이 미흡한 사례는 자매결연 사례에서 제외
  - 자매결연 마을(농가) 소득증대 추진(정부 미지원사업)
    - 기업과의 협력사업 실시 : 20건 / 351백만원
    - 녹색자전거가 달리는 농촌체험마을 육성 : 9곳 / 58백만원
  - 108산사 직거래장터 및 다문화 가정 인연맺기 사업
    - 108산사 직거래 장터

구 분	횟 수	인 원	직거래금액	비 고
내 용	12	58,600	267 백만원	

- 다문화 가정 인연 맺기 : 36 명(몽골 1, 중국 5, 베트남 18, 캄보디아 3, 필리핀 9)
-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 교육 지원
  - 우리부 국장(주무과장)이 마을개발지도자과정(7회)에 직접 출강하여 FTA, 쇠고기 수입문제 등 생생한 농정현안을 설명
- 수준별 맞춤연수로 교육과정을 세분화
- 마을지도자, 기업·단체, 개인 등 도농교류 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 실시
- 다양한 교류사례 홍보로 저변확대 및 내실화 벤치마킹화
  - 농촌사랑소식지(계간지, 매분기 3만부) 배포
  - TV, 일간지를 통한 특집 기획기사 시리즈를 통해 대국민 홍보

### 3. 연차별 추진계획

- 1단계 : 교류성과 창출단계(2006~2008)
  - 마을인프라구축, 교육 인적자원 육성, 농촌자원개발
- 2단계 : 교류성과 확산단계(2008~2010)
  - 성공사례확산 및 농촌자생력 강화, 기업체 투자 유도
- 3단계 : 국민운동 정착단계( 2010년 이후 )
  - 한국형 농촌발전모델정착, 운동혁신을 통한 범국민 지지와 참여 지속화

#### 4. 성과목표 달성도

○ '08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1사1촌 마을당 교류횟수(회) : 6.5회로 목표치 대비 16.1% 초과 달성

· '09년 목표치 : 5.6회

· '09년 실적치 : 6.5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1사1촌 운동	1사1촌 마을당 교류횟수	당해연도 교류횟수 / 누계자매 결연 마을수	회	5.6	6.5	116.1

\* '09년 마을당 교류횟수 : 6.5건 = 교류건수(38,300건) / 교류마을(5,898개소, 중복배제)

4-4-2-1(계속)	도시민 농산어촌주택 갖기 활성화(농식품부) -전원마을 조성-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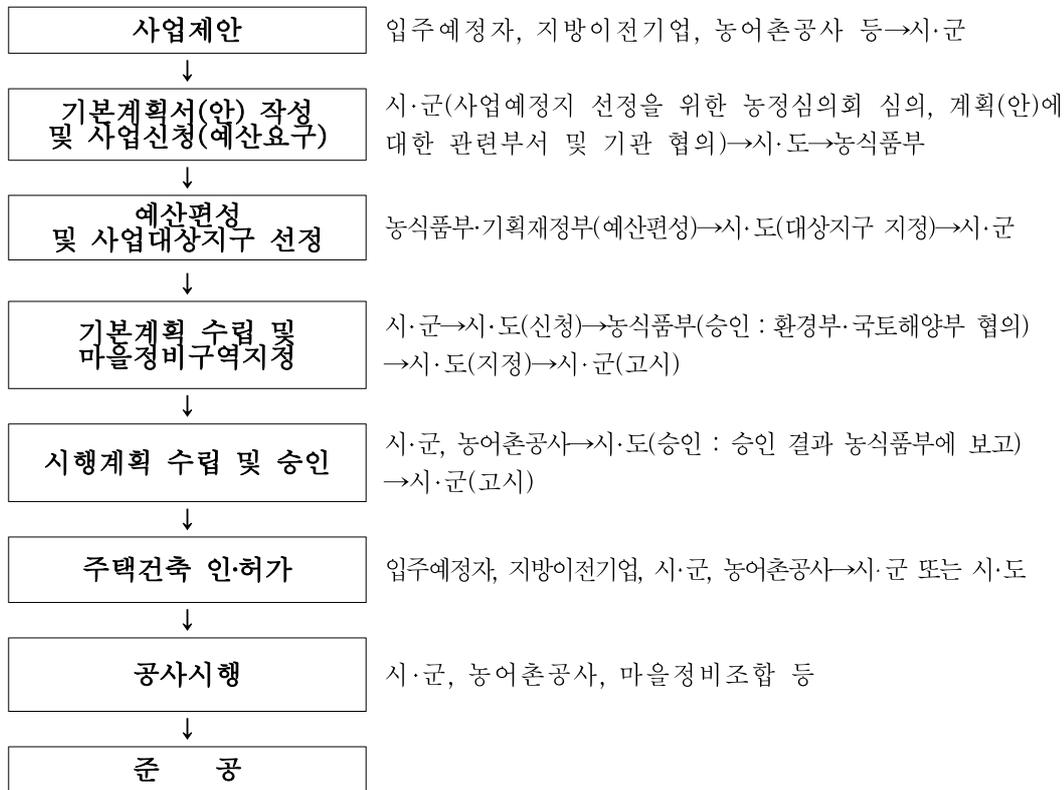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김동권(서기관)
전화번호	02-500-1804	이메일	greens@korea.kr

## 1. 사업목표

- 사업추진 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 「농어촌정비법」 제24조 내지 제39조
- 사업목적
  - 도시민이 농산어촌에 주택을 가지고 노후·여가를 농산어촌에서 보내도록 함으로써 농산어촌 지역 활성화 도모
  - ⇒ 농촌에서 도시민이 쾌적한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 마련(전원마을조성사업)
  - \* '13년까지 전원마을 300개소 조성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4 ~ 계속
- 지원대상 지역 :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면지역(신활력사업 대상 시·군의 경우 읍지역도 포함)
- 지원내용 :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장 등 기반시설 지원
- 지원규모 : 20~29호 10억원, 30~49호 15억원, 50~74호 20억원, 75~99호 25억원, 100호이상 30억원
- 재 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국고 70%, 지방비 30%)
- 사업주체 : 시장·군수,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마을정비조합
- 추진체계



###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1		1,306			405		1,711
'05	27		277			69		346
'06	22		260			65		325
'07	13		231			58		289
'08	35		103			26		129
'09	17		212			91		303
'10	17		223			96		319

※ 사업규모(개소)는 신규 착수지구 수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4		794			251		1,045
'05	27		171			43		214
'06	22		260			65		325
'07	13		72			18		90
'08	35		79			34		113
'09	17		212			91		303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성과지표 목표/실적 : 30%/30%
  - 성과목표치 100% 달성 :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관심증가로 '09전원마을조성 성과지표 목표치 30%(도시민 2,520가구)를 계획대로 달성(30%, 도시민 2,505가구)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A)	실적(B)	B/A(%)
전원마을조성	도시민 유치비율(% , 누계)	$\frac{\text{도시민 유치가구수}}{\text{도시민유치목표}} \times 100$	%	30	30	100

\* 성과목표치는 '13년까지 도시민 8,400가구 유치목표 대비 도시민 모집실적임

(농림수산식품부 / 농촌사회과, 이태용, 김춘기, 이명남, 하지은  
500-1813, 500-1822, 500-1817, 500-1821)

## 1. 사업목표

-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농촌마을의 소득증대 및 활력증진 계기 마련과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지원으로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농촌으로 흡수하는 등 도·농간 상생 구현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2~계속
- 사업추진주체 :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민간단체, 농어촌마을
- 사업추진절차 : 기본계획수립(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한국농어촌공사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시행계획 승인 (농림수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시행 및 사후보고 (한국농어촌공사 → 농림수산식품부)→사업비 검정(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내용
  - 농촌체험관광 수요창출과 국민적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공모전, 도농교류 정부포상 실시
  - 농촌체험마을 보험가입 및 마을사무장 채용지원과 전문가 그룹의 컨설팅 연계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상향식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할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시행과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
  - 도농교류 업무를 전담지원하고 다양한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도농교류센터 운영
  - 소비자단체·농어업관련 단체 등이 청소년·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어촌체험 및 문화사업 등을 통해 도농교류 촉진 도모

- 농어촌체험 및 이주·정착 희망 도시민들이 불편 없이 교류할 수 있도록 농어촌관련 종합적인 정보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
- 농촌체험마을의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무장 채용비용의 일부 지원
- 문화·관광축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어촌 경관·농촌체험·어메니티 등을 소재로 한 농어촌축제 지원
- 인구감소로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는 시·군의 도시민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사업 지원

###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41				105	14	660
'05		19				-	-	19
'06		39				5	1	45
'07		50				7	2	59
'08		84				7	2	93
'09		166				34	4	204
'10		183				52	5	240

- '08년부터 농소정사업이 이관됨에 따라 예산액 증가
- '09년부터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이 통합됨에 따라 예산액 증가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50				53	9	412
'05		19				-	-	19
'06		39				5	1	45
'07		50				7	2	59
'08		83				7	2	92
'09		159				34	4	197

####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도농교류활성화에 대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대표 지표로 농촌 체험마을방문객수 증가율 15%와 포털이용자 만족도 82%를 성과지표로 설정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도농교류활성화	체험마을방문객수 증가율	(당해년도 실적-전년도 실적)/전년도 실적*100	%	15	29.1	193.3
	포털이용자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기관을 통한 설문	%	82	84	102.4

<참고>

2009년도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요약)



2010. 5

시행계획 점검·평가단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위원회

# 제 1 절 점검·평가 개요

## 1. 추진배경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본계획('05~'09)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

○ 농산어촌의 복지·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 개발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기획·조정할 수 있는 추진체계 구축·운영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 실무위원회(위원장: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점검·평가단(단장:실무위원중 위촉)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 삶의 질 향상계획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평가를 통하여 관련 정책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 등을 제시

○ 점검·평가결과를 토대로 개별사업의 효율화 방안 모색 및 사업 간에 통합·연계를 추진

○ 정부의 단기 및 중장기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국가 재원의 합리적 배분 도모

○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자체 점검·평가를 통해 스스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유도

< 점검·평가단의 기능\_점검·평가단 운영규정 >

○ 연도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시행계획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대책 점검·평가와 관련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2. 점검·평가 개요

### 가. 평가근거

- 기본계획에 대한 점검·평가는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때에 전문연구기관에 평가 의뢰
  - ※ 삶의질향상특별법 제9조 : 위원회는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해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실시
  - ※ 제1차 기본계획 추진실적 및 제2차 기본계획 방향 연구용역 완료('09.9월)
- 시행계획에 대한 점검·평가는 삶의 질 향상 실무위원회에 점검·평가단을 설치하여 매년 평가 실시
  - ※ 삶의질향상특별법 시행령 제6조 : 실무위원회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평가하는 기능을 수행
  - ※ 삶의질향상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 위원장은 기본계획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점검·평가단을 구성하거나 점검·평가 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

### 나. 평가단 구성

- 농어업인단체, 대학, 연구기관 등의 민간 전문가를 관련부처로부터 추천을 받아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 점검·평가단은 총괄, 복지, 교육, 지역개발, 복합산업의 5개 분과팀 21명(단장포함)으로 구성 (임기 2년, 평가단 명단 : 별첨)

### 다. 평가대상

- '10년 평가대상 사업은 11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수행한 '09년도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의 96개 사업

## 라. 평가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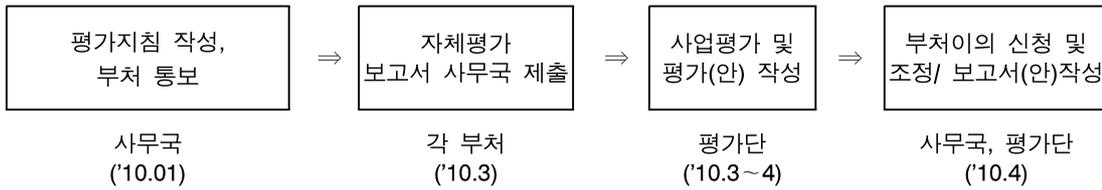
- 점검·평가 지침에 따라 사업추진단계(계획, 집행 및 성과단계)별 점검·평가 항목 및 착안사항을 고려하여 실시
  - 평가위원은 사업담당 부서에서 작성한 자체평가보고서를 토대로 평가지침의 평가항목 등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작성
  - 평가위원이 제시한 점수와 평가의견은 4개 팀별 회의와 점검·평가단 총괄팀 및 전체회의에서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
  
- 사업추진의 단계별 특성을 감안하여 일반·소규모사업과 연구·시범·비투용자·지방이양 사업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
  - 계획단계 : 사업필요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절차적 합리성
  - 집행단계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중간점검 결과 반영, 자원조달 등
  - 성과단계 : 삶의 질 향상 기여도, 성과지표 달성도 등
  
- 일반·소규모사업은 각 분야별로 정량평가(점수) 순서에 따라 상위 10~20%, 중위 60~80%, 하위 10~20% 수준에서 등급 부여
  - 그 외 시범·연구·비투용자·지방이양사업은 정성적 평가만 실시

< '09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대상 사업분류(단위 : 개)>

구분	일반사업	소규모사업	시범사업	연구사업	지방이양	비투용자	합계
복지부문	10	6	-	1	2	1	20
교육부문	2	2	-	-	13	-	17
지역개발부문	19	11	2	-	2	-	34
복합산업부문	11	9	-	3	-	2	25
합계	42	28	2	4	17	3	96

※ 일반(총사업비 100억 이상), 소규모(100억 미만), 지방이양(지방비 100%)

## 마. 평가 추진경과



## 바. 평가결과의 환류

- 목표의 달성도 등 정책의 효과성 및 파급효과를 평가하고, 집행 상황·추진과정상의 문제점 등을 점검하여 정책개선방안 제시
  - 정책개선방안은 보고 후 해당 사업부서에 통보
  
-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사업의 익년도 예산액 조정을 제안
  -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액 편성이 조정될 수 있도록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실무위원회는 평가단의 평가보고서를 각 기관, 기획재정부에 통보
  - 각 기관에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 기획재정부는 평가결과 반영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조정
  
- 평가결과 국회 보고
  - 국회의 정책 및 예산심의 활용자료로 제공(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특별법 제42조)

## 제 2 절 2009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 I. 총평

- 2009년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평가대상 사업은 총 96개이며, 일반사업 42개, 소규모사업 28개, 기타 26개임
  - 일반사업과 소규모 사업은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병행하였고, 기타(시범·연구·지방이양·비투융자)사업은 정성적 평가만 실시하였음
  - 평가 대상 중 지역개발 활성화 분야의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개발은 '09년 종료사업이며, 농어촌도로정비사업(지방이양)은 지방으로부터 실적 취합이 지연되어 평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 각 부처별 자체평가보고서를 토대로 평가대상 사업을 분석한 결과 목표 설정, 집행 과정, 성과 관리 측면에서 무난하게 추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지역개발 분야의 사업들은 사업내용 조정·개선, 추진방법 및 추진 체계 개선, 주민의견·지역특성 반영, 목표달성 등에서 많은 개선을 이루었으며, 특히 우수사업들은 계획 수립, 사업추진 과정, 성과 홍보 및 공유 등 사업 전과정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음
  - 복합산업 활성화 분야의 사업들은 대체로 지역활성화를 위해 주민, 전문가, 공무원 등이 협력하여 농산어촌의 자원과 도시의 사람·자본을 유치하는 사업구조가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우수사업들의 경우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큰 성과를 내고 있고, 합리적인 사업추진절차를 보유하고 있음
  - 교육 및 복지분야 평가대상 사업들도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되어 상·하위 사업간 격차가 미미하여 변별력을 부여하기가 곤란하였음

사업들 대부분이 농어촌 주민의 복지증진과 농어촌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므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됨

- 평가가 매년(5년차) 지속되면서 사업 내용, 추진체계 등 많은 발전을 이룬 것은 분명하나 개별사업 뿐만 아니라 평가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며, 합리적인 사업성과 측정을 위해서는 양적인 목표기준과 더불어 질적인 기준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평가결과가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부처(사업 담당) 뿐만 아니라 실질적 사업시행 주체(위탁기관, 지자체)에 대한 평가도 필요
  -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립한 사업계획을 사후적으로 종합하는 시스템으로는 부문 및 사업간 조정을 통한 삶의 질 계획의 전체적인 합리성 제고를 이루기 곤란하므로 개선이 필요함
  -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방이양사업의 경우에는 중앙차원에서 사업 방향 설정 등을 통하여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음

## II. 평가결과

### 1. 평가요약

- '09년 시행계획에 반영된 96개 사업을 일반·소규모사업과 연구·시범·비투용자·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하여 점검·평가
  - 일반(42개)·소규모(28)사업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순위를 부여하였음
  - 연구(4)·시범(2)·비투용자(3)·지방이양(17)사업은 정성평가만 실시하고 순위는 부여하지 않음
- 일반·소규모사업은 평가결과에 따라 분야별로 상·중·하위로 구분
  - 상위 16개(22.8%), 중위 47개(67.1%), 하위 7개(10.0%)

평가등급	분야별	사업명
상위 (16)	복지기반확충 (3)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영유아 보육지원
	교육여건개선 (1)	농산어촌대학생 학자금 용자지원
	지역개발촉진 (7)	지방소도읍 육성, 수목원 조성 및 산림박물관 지원, 농촌마을종합개발, 어촌종합개발, 소하천정비, 지방문화원프로그램 운영, 산촌생태마을 조성
	복합산업활성화 (5)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경관보전직불제, 농촌활력증진, 향토문화 관광축제 육성
하위 (7)	복지기반확충 (2)	농산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교육여건개선 (0)	-
	지역개발촉진 (2)	지역개발 전문인력 육성 및 저변확대, 내향여객선 운임보조
	복합산업활성화 (3)	자생식물원 및 생태숲 조성, 해양관광자원개발, 산림휴양공간조성

※ 교육여건 개선분야(총 17개 사업 중 13개 사업이 지방이양)는 정량적 평가 대상 사업이 4개(대학생 학자금 용자, 농어업 관련 대학생 장학금 지원, 농수산대학 개편운영, 소규모 학교 통폐합) 뿐이고,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하위사업 미선정

## 2. 부문별 주요 평가결과

### 가. 복지기반 확충 부문(20개 사업\_정량평가 16개)

#### <상위사업>

- 영유아 보육지원 사업은 자격심사를 강화하여 부당수급자 방지 등 제도를 내실화, 지속적인 홍보로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
  - \* '12년까지 지원수준(시설이용/미이용)을 90%/60%(현재 70/35)까지 상향하기로 예산담당 부처와 협의를 완료하는 등 안정적 예산확보에도 노력
-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농식품부와 유관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의 역할 분담과 긴밀한 협조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일제조사를 통한 부적격자, 신규자 발굴)
  - \* 제도의 실질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방안, 협업부부중 여성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등을 모색하는 것도 높게 평가

#### <하위사업>

-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사업은 농어촌에 가장 긴급한 양질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이 미흡
  - 평가에 의한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하나 평가지표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가 선행될 필요
-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사업은 기본방향 설정과 평가과정에서 지역별 특성(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을 반영할 필요
  - 현재는 병원단계에서의 진료는 담고 있으나 이송과정에서의 진료는 문제제기로 끝나고 있음. 사업내용에 포함할 필요
  - 성과지표로 “응급의료 취약지 해소율”로 하고 있으나, 측정기준을 예산지원 기관수만으로 하는 것은 부적합. 실질적인 응급의료체계가 완비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응급전문인력 확보율 등)

## 나. 교육여건 개선 부문(17개 사업\_정량평가 4개)

- 상위사업인 대학생 학자금융자사업은 사업추진체계가 적절하고 (한국장학재단 및 연구재단과의 협조체계유지), 대학등록금의 인상에 따라 지원금액도 상향조정하는 등 정책대상의 수요를 반영
- 평가 대상이 4개 사업 뿐이고, 상위사업을 제외한 사업들도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하위사업은 미선정
  - 다만, 군단위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경우 농산어촌의 교육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양하게 추진되지 못 하였고,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를 과도하게 폐교시킬 우려가 있다고 평가

## 다. 지역개발 부문(34개 사업\_정량평가 30개)

### <상위사업>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주민의 니즈에 기초하여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상향적 지역사회개발로서 지역 및 농촌 분야의 개발 방식의 선진화에 기여
  - '07년 착수한 40개 권역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 인구, 가구, 소득, 교류인구 등의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
-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수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관련 사업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개발함으로써 어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지역소득 증대에 기여
- 지방소도읍육성사업은 『상향식 공모제』 방식과, 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중앙정부의 지원에 대해서 상호 협약하는 『육성협약제도』 등을 도입·적용함으로써 안정적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
  - 타 부처가 지원하는 관련 사업도 개발거점을 중심으로 집중·연계·복합하여 개발함으로써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

- **소하천정비사업**은 전년도 하반기부터 설계, 보상 등을 미리 준비하여 예산 확보와 동시에 조기 발주하여 자연재해를 예방·경감
- **수목원 조성 및 산림박물관 건립사업**은 지자체의 부지 및 예산 미확보로 인한 사업지연의 어려움을 극복, 국내외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사업진행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그 문제점을 보완·개선
  - 그 결과 계획대비 100% 추진 완료하였고, 수요자 만족도가 90점대로 매우 높음
- **지방문화원 프로그램 운영**은 지방문화원을 실버문화 및 노인복지의 새로운 거점으로 육성하여 실버세대의 지역사회 참여,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하도록 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사업임
  - 권역별, 사업유형별로 현장자문을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업의 체계적 추진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임
- **산촌생태마을조성 사업**은 상향식 공모, 리더십 육성, 지원센터 운영, 문제해결 T/F팀 운영 등 선진화된 기법을 활용 성과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책기조에도 부합

#### <하위사업>

- **지역개발 전문인력 육성 및 저변 확대사업**은 단기간, 집체식, 주입식 교육 중심이어서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곤란
  - 또한 교육 프로그램별 대상자의 적격성 문제, 농어촌지역개발 교육 강사 풀이 제한
- **내향여객선 운임보조사업**은 성과지표(운송실적)도 목표치에 미치지 못 하였고, 만족도(69%)도 좀 더 제고 시킬 필요
  - 5년차 사업으로 사업목표인 내륙과 도서의 교류증과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중간점검 필요
  - 현재의 지원방식(선주와 지자체간 사후정산)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점검이 필요함(전년도에도 제안 했던 사안임)

## 라. 복합산업 부문(25개 사업\_정량평가 20개)

### <상위사업>

- 농촌전통테마마을 및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저비용 고효율의 대표적인 사업 모델이라고 평가
  - 주민 스스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학습 등의 S/W사업 위주로 사업 추진. 동시에 지역 공무원이나 전문가들의 참여·협조체계 구조화
- 경관보전 직불제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현지조사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의 문제점을 즉시 보완 및 개선
  - 특히 2009년도에는 마을 경관보전 활동비를 신설하는 등 사업이 점차 발전적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평가됨.
- 농촌활력증진사업은 사업 목표와 성격이 유사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통합 관리하였고 지역별로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설정
- 향토문화 관광축제 육성사업 역시 크지 않은 사업비를 가지고 지자체간 긍정적 경쟁 도모, 전문가 상시 참여체계 구축으로 성과제고

### <하위사업>

- 해양관광자원개발, 자생식물원 및 생태숲 조성, 산림휴양공간조성 사업은 상대적으로 사업 목표와 절차, 성과 등의 측면에서 개선 필요
  - 이들 사업은 공통적으로 사업 목표와 사업 내용의 정합성이 다소 부족하고, 지역주민이나 전문가 등의 참여가 미흡하며, 사업 성과 지표가 부적절(예산집행률, 예산지원 개소수 등)
  - 이는 전년도 점검·평가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나 별다른 조치나 개선 노력이 없었음

### 3. 평가단 권고 사항

#### 가. 예산 증액 필요 사업

- **향토문화관광축제** : 시·군 축제담당자 및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사업의 예산투입 대비 경제파급효과(산출)가 56~58배임
  - 지역축제를 여전히 향락산업이라는 보는 시각이 있고,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08년 이후 사업비가 감액
  - 농어촌지역 산업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향토문화관광축제 사업을 장려할 필요
- **농어촌대학생 학자금 융자** : 대학 등록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으나, 농림어업인의 소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 증대
  - '09년 기준으로 지원자 중에서 12% 정도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으므로 수요에 맞게 예산을 증액할 필요
- **농산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 성과지표 개선 및 사업 내용 보완 필요성 등의 이유로 하위사업으로 분류되었지만, 의료 취약지역의 현실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은 매우 중요
  - 응급의료시설이 취약한 42개군에 지원하고 있는 응급의료 지원금이 응급의료 인프라(시설 및 인력)를 구축하기에 적절한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필요
  - 부족하다면 이를 적극지원하기 위한 예산확보와 지원방안 마련이 추가될 필요

## 나. 심층평가 필요 사업

-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 문화역사마을조성사업 등의 5년간 성과를 종합 평가 후 적극적인 홍보 필요
-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의 경우, 성격이 다른 사업들이 묶여 있고 사업의 성과지표도 모호하게 되어 있어 사업의 체계화를 위한 심층평가 필요
-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 연중 돌봄학교 육성,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농어업인 자녀의 학자금 지원 등은 지방이양 사업이지만
  - 농산어촌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중요한 사업이므로 사업계획과 성과, 현장의 요구 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위원회 차원에서 점검해볼 필요

## 다. 기타 권고사항

- 기능과 목적이 유사한 사업들이 서로 다른 정부부처 간에 운영되고 있는데, 당초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함
  - 만5세아 무상 보육지원(보건복지부)과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 지원(농림수산식품부)
- 거점면소재지는 농어촌서비스 중심지, 개발거점, 교통·유통 결절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면소재지 활력증진사업이 당초계획 대로 추진되도록 중앙정부에서 적극적 관심을 가질 필요.
  - 포괄보조 사업(지자체 자율)으로 편성되므로 예산배분을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거점면 기능이 더 이상 이 약화되기 전에 면소재지 활력증진사업이 조기에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필요

- 사업 개소수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더라도, 사업대상 면소재지의 범위는 확대할 필요
- 소단위지역 종합개발사업들은 계획기간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 필요
  - 지방소도읍육성사업, 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의 소단위지역 종합개발 사업지구의 대부분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계획기간 이후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종합개발사업으로 인해 모처럼 얻은 지역활성화 기회 또는 성장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후속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
- 광특회계의 포괄보조금제도 도입에 따라 지자체의 사업계획 추진 체계 개선과 계획수립 세부매뉴얼 제공이 필요
  - 지역 특성, 우선순위, 선도성, 그리고 사업간 연계성,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여 사업을 선정하되 지자체 수준의 통합·연계 필요
  - 이를 위해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효과적으로 종합·조정할 수 있는 기획기능의 강화와 부서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추진체계의 구축이 긴요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포괄보조금제도 하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정·추진 하더라도 공모제가 지니고 있는 경쟁원리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사업이 시작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사업이나 종료되는 사업들의 경우, 사업의 성과 및 추진 방식의 우수성 등을 모델화하여 보급 할 수 있는 사후관리 조치가 필요
  - 특히 2010년부터 광특회계 재편에 따라 복합산업 활성화 분야에 속하는 사업들 중 일부가 통폐합되는 상황에서 마을 사업 등은 정책성과가 중단될 가능성

- 따라서 기존사업 대상지간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나 농촌관광의 국가적 브랜드를 육성하는 사업 등으로 발전적으로 접근할 필요
- 교육 및 복지 분야에 대한 중앙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
  - 기숙형 고교 사업,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 등은 비록 지방으로 이양되었지만 중앙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정책을 입안하고 관리할 필요
    - 이들 사업은 농촌의 학교를 발전시키고, 학생이 농촌을 떠나지 않고 머무르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며,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임
  - 급식비 지원은 급식의 단가 등이 적절하지 않으며, 지역에 따라 자부담 비율에 차이가 있는데 지원비율을 유사하게 하여 지역에 따른 격차를 축소할 필요
- 지역내 공공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지역거점병원-도시의 3차 의료기관(대학병원) 간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
  - 농어촌지역은 접근성, 취약한 수익구조로 인해 민간의료기관들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음
  - 지역거점병원들이 3차 진료기관인 대학병원, 지역내 보건소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 4. 평가소감(평가체계 개선 방안)

- 광특회계 개편 및 제2차 삶의 질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평가체계 및 방법에 있어 새로운 접근이 필요
  - 자체 평가보고서가 전반적으로 충실해지고 있으나, 아직도 성과보다는 투입 중심의 접근이 많은 편이며, 특히 사업목적 대비 성과지표 타당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
    - 향후 사업내용의 질적 평가의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검증하는 절차나 제도를 도입할 필요
  - 각 부처의 자체 평가보고서만으로는 지역에서 느끼는 사업의 성과·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곤란
    - 부문별 또는 사업별로 중앙정부(계획 수립주체)와 지방정부(집행주체)에 대한 교차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평가할 필요
  - 현재와 같은 평가 절차와 방식 하에서는 평가 상위사업과 평가 하위사업의 구분이 사실상 모호
    - 평가 하위사업 구분에 있어서 변별력이 약하므로 일정 비율의 평가 상위사업과 평가 하위사업을 추출하는 방식은 지양
  - 평가 결과가 사업의 내실화를 촉구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평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목표에 따라 합리적인 자체 성과지표 설정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농어촌서비스 기준이 좋은 대안)
    - 서면 평가뿐 아니라 몇 개 중점 사업에 대해서는 1년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도입 운영을 검토할 필요
    -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농어촌지역 사립유치원교사 처우개선등 반복적·기계적으로 사업들에 대해서는 실적 파악만 하도록 하여 평가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

- 중점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는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분명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합의가 필요
- 중복된 성격의 사업이 분절되어 있어서 효과적인 평가가 어려운 경우도 있음
  - 주택 시책, 도농교류 시책 등 중분류의 내용별 시책에 따라 사업을 통폐합하여 운영하거나 적어도 평가자료를 통일할 필요
  - 복합산업 분과와 지역개발 분과는 통합해 사업 재분류 및 평가의 체계화가 필요

< 참고 1 >

**삶의 질 시행계획 점검·평가 위원**

제3기('09.12.23 ~ '11.12.22)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박 성 재	단장
2	한국농업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손 재 범	복지분과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 경 환	팀장
4	목포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조 혜 정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 태 완	
6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위원	이 윤 근	
7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이 승 엽	교육분과
8	공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임 연 기	
9	공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 준 렬	팀장
10	목포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강 일 국	
11	농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장 병 수	지역개발분과
12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김 정 연	팀장
13	협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이 상 문	
14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 충 기	
15	국민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손 진 식	
1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윤 상 호	
17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임 정 수	복합산업분과
1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송 미 령	팀장
19	전남대학교 생물산업공학과	교수	최 수 명	
20	향도시건축사사무소	대표	조 상 훈	
21	한국문화관광연구소	소장	오 순 환	

〈 참고 2 〉

**사업별 평가결과 및 상·하위사업 평가의견**

(복지부문)

코드번호	사업명	평가점수	순위	등급	비고
1-1-1-0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제도개선	90.4	2/16	상위	
1-1-2-0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제도개선	89.8	3/16	상위	
1-1-3-0	농작업 재해보상 지원	88.0	5/16	중위	
1-1-4-0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86.4	8/16	중위	
1-2-1-1	농산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83.4	15/16	하위	
1-2-1-2	공공보건기관 기반 확충	84.0	14/16	중위	
1-2-1-3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82.8	16/16	하위	
1-2-3-3	농작업 안전모델 조성사업	86.8	6/16	중위	
1-3-1-1	농산어촌 보육시설 확충	84.2	13/16	중위	
1-3-1-2	농산어촌 만 5세아 무상보육지원	88.8	4/16	중위	
1-3-1-3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지원	90.6	1/16	상위	
1-3-3-2	취약농가 인력지원	86.6	7/16	중위	
1-3-5-1	여성농업인 창업지원	84.8	12/16	중위	
1-4-1-1	농산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 확충	85.0	11/16	중위	
1-4-2-4	농촌 건강장수마을 조성	85.8	9/16	중위	
1-4-3-0	경영이양 직불제 추진	85.8	9/16	중위	
평 균		86.45			

□ 복지부문 상위사업

사업명	선정사유
농어업인 영유아 보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업인의 육아부담 경감,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 유도 및 저출산 문제 해결을 통한 농어촌 공동체 복원에 기여하고 있음</li> <li>○ 농어업인의 양육비 부담이 연간 838억원 경감되어 육아 부담이</li> </ul>

사업명	선정사유
	<p>경감되었고, 만족도 조사 결과 당초 목표(70%)를 달성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심사를 강화하여 부정수급자 방지 등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고,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였음</li> <li>○ 예산의 안정적 확보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지원수준(시설이용/미이용) 70%/35%('09) → 90%/60%('12)을 상향토록 함</li> </ul> </li> </ul>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의 열악한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함, 삶의 질 계획 취지에 가장 부합되는 사업 중 하나임.</li> <li>○ 지침을 통해 연간 사업 일정 및 자금배정계획을 명시하여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일제조사를 통해 신규자 및 부적격자 발굴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 실질적 타당성을 위해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방안을 모색 중임</li> </ul> </li> </ul>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의 고령화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시의적절한 사업이며 삶의 질 계획 취지에 가장 부합되는 사업 중 하나임.</li> <li>○ '07년 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된 후 처음으로 지원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신규자 및 부적격자를 발굴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 실질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협업부부농 중 여성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방안을 모색중임</li> </ul> </li> </ul>

□ 복지부문 하위사업

사업명	선정사유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농간 건강불평등 해소에 도움을 주는 등 지역민에게 필요한 사업이며 삶의 질 계획의 비전에도 적합</li> <li>○ 농어촌 의료기관들의 어려운 점의 하나는 충분한 의료인력의 확보가 어렵다는 점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따라서 기존의 시설위주 지원과 더불어 지역거점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 의료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강구하고</li> <li>- 진료과목을 다양화(산부인과 등)하여 양질의 의료인력 확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마련이 동시에 마련될 필요가 있음</li> </ul> </li> </ul>

사업명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9.12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수립 이전에 평가단 및 지역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는 점, 일률적으로 지원되어 오던 국고지원방식을 '선택과 집중'으로 하겠다는 점도 긍정적인.</li> <li>- 그러나 예산확보를 위해 과도한 병원 간 경쟁, 평가지표 선정 및 평가의 공정성, 무리한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경영 악화 등의 문제 발생을 사전에 탐지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li> <li>- 보건복지부·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는 수동적인 홍보라 할 수 있음. 적극적 홍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li> <li>○ 성과지표로써 지역주민들의 이용자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은 좋지만 성과목표치 설정이 다소 임의적임. 객관성을 확보한 목표치 설정이 이루어졌으면 함</li> </ul>
<p>농산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높은 고령화율과 인구감소, 지역적 광의성으로 인해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수익성 악화로 민간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움</li> <li>- 따라서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은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농간 보건의료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임</li> <li>○ 응급환자에 있어 중요한 점은 질환 발생 직후의 응급치료와 이송이라 할 수 있음. 병원에서의 진료뿐만 아니라 질환발생 단계에서의 치료와 농어촌지역(접근성 어려움)을 고려한 환자 이송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사업내용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li> <li>○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 현재 42개 군에 지원하고 있는 응급의료 지원금을 통해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부족하다면 이를 적극지원하기 위한 예산확보와 지원방안 마련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li> <li>○ 현재 성과지표로 “응급의료 취약지 해소율”을 두고 있으나 단순하게 예산지원이 이루어진 기관수를 중심으로 성과달성도를 파악하고 있어 실질적인 응급의료체계가 완비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li> <li>- 따라서 구체적으로 응급의료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예, 별도의 응급실 완비, 응급의료 전문의 인원 혹은 인구대비 응급의료 전문의 비율 등)</li> </ul>

(교육부문)

코드번호	사업명	평가점수	순위	평가등급	비고
2-2-2-1	농산어촌대학생 학자금 용자지원	96	1/4	상위	
2-1-1-4	한국농수산대학개편운영	93	2/4	중위	
2-1-2-8	군단위 소규모 학교 통폐합	92	3/4	중위	
2-2-2-2	농어업관련 대학생 장학금 지원	92	3/4	중위	
평균		93.25			

□ 상위사업

사업명	선정사유
농산어촌 대학생 학자금 용자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갈수록 농림어업인의 경제적 여건이 악화된다는 점, 그리고 대학 등록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li> <li>- 이 사업이 계획한 대로 100% 사업비를 확보하여 집행하고 있다는 점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li> <li>○ 한국장학재단에서 정부출연금에 대해 별도의 회계를 구성하고, 용자금 신청과 심사, 지급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는 농식품부의 지침에 의거 한국연구재단이 세부신청요강을 별도로 작성·공포하여 시행하도록 한 것은 적절한 것임.</li> <li>○ 정부출연금 475억 원 등 총 929억 원을 용자금으로 지원하여, 5.8%의 이자를 부과하는 교과부 대출조건과 비교할 때, 그 이자에 해당하는 54억 원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가져왔음.</li> <li>○ 앞으로 1인당 지원액을 증가시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1년 거치 후 상환하도록 한 것을 최소한 3년 거치로 연장하여 실제로 졸업 후 상환이 가능한 조건을 마련하여야 함.</li> </ul>

□ 하위사업(미분류)

- 군단위 소규모 학교 통폐합 사업과 농어업관련 대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이 상위사업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사업성과도 좋고, 평가 대상이 4개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위사업으로 분류하지 않았음.

(지역개발)

코드번호	사 업 명	평가점수	순위	평가등급	비 고
3-1-1-0	지역개발 전문인력 육성 및 저변 확대	79	29/30	하위	
3-2-1-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95	3/30	상위	
3-2-1-2	어촌종합개발사업	95	3/30	상위	
3-2-1-3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94	6/30	상위	
3-2-2-1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97	1/30	상위	
3-2-2-2	먼소재지 활력증진사업	88	14/30	중위	
3-3-1-1	농산어촌 주거환경 개선	86	18/30	중위	
3-3-2-1	면단위 생활용수 개발	86	18/30	중위	
3-3-2-2	마을단위 생활용수 개발	91	9/30	중위	
3-3-2-3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84	25/30	중위	
3-3-2-4	소하천 정비	95	3/30	상위	
3-3-2-5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지원	80	27/30	중위	
3-3-2-6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	89	11/30	중위	
3-3-2-7	다목적 인양기 설치	86	18/30	중위	
3-3-2-8	해양폐기물 정화 및 쓰레기 수거사업	86	18/30	중위	
3-3-2-9	양식장 정화 사업 지원	87	16/30	중위	
3-3-2-10	해수욕장주변정비 및 시설개선사업	86	18/30	중위	
3-3-3-3	국고여객선 건조	85	23/30	중위	
3-3-3-4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78	30/30	하위	
3-3-4-1	농촌생활환경정비 지원사업	89	10/30	중위	
3-3-4-3	도서개발촉진사업	88	14/30	중위	
3-3-5-1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81	26/30	중위	
3-3-5-5	지방문화원 프로그램 운영	94	6/30	상위	
3-3-5-6	지방테마과학관 건립지원	80	27/30	중위	
3-3-5-7	수목원 조성 및 산림물관 건립	97	1/30	상위	
3-3-6-1	정보화 마을 조성	89	11/30	중위	
3-3-6-3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 구축	90	10/30	중위	
3-3-6-4	디지털어촌 구축사업	89	11/30	중위	
3-3-7-1	농어촌정보이용활성화	87	16/30	중위	
3-3-7-3	농어업 관련 정보제공 확대	92	8/30	중위	
평 균		88.10			

□ 지역개발 부문 상위사업

사업명	선정사유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사업은 주민의 수요에 기초하여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상향적 지역사회개발로서 지역 및 농촌 분야의 개발방식의 선진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li> <li>○ 월별 모니터링 및 분기별 현지 확인 점검 등 중간 모니터링 실시, 사업방식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추진 실적 점검 및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 개최, 사업추진 실적 평가 후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중간평가)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계획의 수립·추진방식을 개선하고 있으며,</li> <li>○ '07년 착수한 40개 권역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 인구, 가구, 소득, 교류인구 등의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li> </ul>
어촌종합개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목적이 타당하고 삶의 질 계획 취지에도 적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심 항포구를 축으로 생산, 유통, 가공, 판매 관련 사업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개발함으로써 어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지역소득 증대, 삶의 질 향상 등에 대한 기여도가 높음</li> </ul> </li> <li>○ 사업추진방식의 개선으로 현실 적합성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7년까지는 35억원씩 균일하게 투자함에 따라 권역별로 과잉투자되거나 예산이 부족하여 제대로 투자되지 못하는 지역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li> <li>- 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2009-2013년)부터는 지역별로 차등적인 재원을 지원함으로써 합리화 하였고, 사업계획을 해당 지자체에서 수립토록 추진체계를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음</li> </ul> </li> </ul>
지방소도읍 육성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및 농어촌개발사업의 혁신을 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소도읍육성사업은 지역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 우수한 계획을 공모하는 『상향식 공모제』 방식과, 개발 잠재력이 높은 소도읍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 방식, 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중앙정부의 지원에 대해서 상호 협약하는 『육성협약제도』를 도입·적용함으로써 안정적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li> <li>-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소도읍별·분야별로 분석·평가하는 등 체계적인 평가·환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음</li> </ul> </li> <li>○ 타 부처의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도읍육성사업에서는 다른 부처가 지원하는 관련 사업을 일정 장소(개발거점)를 중심으로 집중·연계·복합하여 개발함으로써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역개발 방식의 도입·적용을 선도하고 있음</li> </ul> </li> </ul>

사업명	선정사유
	<p>(사례 : 기획재정부의 특화발전특구 지정, 중소기업청의 재래시장구조개선 특별지원금, 농식품부의 산지유통시범 사업, 농어촌도서관사업, 국토해양부의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 환경부의 '아름다운 생태하천 및 전원경관조성사업', 국토해양부의 생태하천 시범지구 선정,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요양시설 조성 및 노인복지 타운 추진 등)</p>
소하천정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9 소하천정비사업은 전년도 하반기부터 설계, 보상 등을 미리 준비하여 예산 확보와 동시에 조기 발주하여 재해의 조기예방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음</li> <li>○ '09년에 당초 계획(총 3,144억원) 대비 61% 증가한 총예산 5,081억원(국비1,909, 지방비 3,172)을 투자하여, 목표치(314km)를 133% 초과한 417km의 소하천을 정비하였음</li> <li>○ 사후복구 위주에서 예방 위주로 전환하기 위하여 예방사업의 투자를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매년 재해예방사업의 투자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등 재해예방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재해를 예방·경감시키는데 크게 기여함</li> </ul>
수목원 조성 및 산림 박물관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계별 사업 추진방식 개선이 돋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의 부지 및 예산 미확보로 인한 사업지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강점·기회요인을 잘 분석하여 그 강점 강화와 약점·위협요인을 파악하여 그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한 점, 국내외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이를 반영한 점, 사업진행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그 문제점을 보완·개선한 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 점 등 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음.</li> </ul> </li> <li>○ 그 결과 「2009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의거 계획대비 100% 추진 완료하였고, 수요자 만족도가 90점대로 매우 높음</li> </ul>
지방문화원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문화원을 실버문화 및 노인복지의 새로운 거점으로 육성하여 실버세대의 지역사회 참여,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하도록 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사업임</li> <li>- 권역별, 사업유형별로 현장지문을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업의 체계적 추진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임</li> </ul>
산촌생태마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향식 공모, 리더십 육성, 지원센터 운영, 문제해결 T/F팀 운영 등 선진화된 기법을 활용 성과목표치를 초과 달성</li> <li>○ 최근의 국가정책 기조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여 산촌생태마을을 탄소순환마을로 조성하려는 점도 높게 평가</li> </ul>

□ 지역개발 부문 하위사업

사업명	선정사유
지역개발 전문인력 육성 및 저변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목표는 적절</li> <li>- 지역리더, 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 상향식 사업을 주도하는 사업 주체의 능력배양을 통해 지역개발사업을 주도할 전문 인력 육성을 통해 도농교류·농촌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을 추진을 하고자 하는 본 사업의 취지는 적절함하고,</li> <li>○ 교육방식의 개선 필요</li> <li>- 교육생수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교육 내용을 다양화 한 것은 바람직하나, 단기간, 집체식, 주입식 교육 중심으로 교육효과를 일정 수준 이상 제고하기 어려우며, 아직은 교육 프로그램별 대상자의 적격성 문제, 농어촌지역개발 교육 강사 풀의 제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li> </ul>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9년 당초에 제시된 여객선 이용객 운임지원 목표 370만명 대비 360만명을 지원하여 목표치의 97%로서 약간 미달하고,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결과는 '08년 64.1%에서 '09년 69.0% 향상되었으나 향후 더욱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li> <li>○ 2009년 평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객선 운임을 금전적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 도시-도서간 교류증진, 주민의 생활의 질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정책적인 중간점검이 필요하고, 과거에 지적된 운임 정산과정의 투명성 제고가 현장에서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구체적인 점검결과가 제시되지 않았음</li> </ul>

(복합산업)

코드번호	사업명	평가점수	순위	등급	비고
4-1-1-2	농촌활력증진사업	88.2	4/20	상위	
4-1-1-3	향토음식자원화사업	87.2	6/20	중위	
4-1-2-0	농공단지조성사업	80.6	16/20	중위	
4-1-3-0	농어업인지역실업자직업훈련	81.8	14/20	중위	
4-2-1-1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90.2	2/20	상위	
4-2-1-2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사업	93.5	1/20	상위	
4-2-1-3	문화역사마을조성사업	84.4	9/20	중위	
4-2-1-4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82.2	13/20	중위	
4-2-1-5	어촌관광활성화사업	81.4	15/20	중위	
4-2-1-6	산림휴양공간조성및수목원조성	76.6	18/20	하위	
4-2-1-8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84	10/20	중위	
4-2-1-11	해양관광자원개발사업	73	20/20	하위	
4-2-2-3	농촌체험교육농장	86.2	8/20	중위	
4-2-4-0	향토문화관광축제	87.4	5/20	상위	
4-3-1-0	경관보전직불제	89.8	3/20	상위	
4-3-3-0	농산어촌경관주택발굴보급	82.6	12/20	중위	
4-3-6-1	조건불리지역직불제	86.8	7/20	중위	
4-4-2-1	도시민농산어촌주택갯기(전원주택)	84	10/20	중위	
4-4-3-1	도농교류활성화	80.6	16/20	중위	
4-3-4-0	자생식물식재및생태숲조성	73.4	19/20	하위	
평      균		83.69			

\* 순위는 소규모, 일반사업만 해당됨

## □ 복합산업 부문 상위사업

사업명	선정사유
농촌전통테마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사업의 목표는 농촌전통자원의 발굴 및 활용을 통해 도농 상생의 교류촉진, 농특산물 직거래와 숙식과 체험 등의 소득 사업으로 지역활성화 등이었으며, 이미 사업목표는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고 판단됨.</li> <li>○ 농업기술센터 소속의 지도직 공무원들이 현장을 누비며 농업인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는 등의 적극적 자세로 인해 대성공을 거둘 수 있었음.</li> <li>○ 효율적 시스템 구축과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진청-도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통해 현장의견수렴부터 대안수립까지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li> <li>- 관계부처, 마을주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li> <li>- 적은 예산이지만 주민들 스스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학습 등의 S/W사업을 위주로 사업을 추진</li> </ul> </li> <li>○ 개별 성과지표 자체개발과 피드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 개발한 농촌관광마을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마을운영, 시설수준, 서비스수준, 이용자만족도 등을 측정</li> </ul> </li> </ul>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비용 고효율의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은 예산이지만 주민들 스스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학습 등의 S/W사업을 위주로 사업을 추진</li> </ul> </li> <li>○ 주민 의견 반영을 통한 상향식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수립단계부터 주민이 직접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주민들의 자율적 의견 반영하려는 노력</li> <li>-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도록 장려하였으며, 관계공무원과의 대화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과정에 반영</li> </ul> </li> <li>○ 지속적인 현지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지사가 분기별로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식품부에서는 3월과 11월 등 반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li> </ul> </li> </ul>
경관보전 직불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취지가 매우 적정하며 삶의 질 기본계획 비전에 적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관보전 정책과 직불제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경관보전과 형성에 나서도록 유도하여 농촌의 휴양, 산업 활성화에 기여</li> </ul> </li> <li>○ 마을 공동체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단위로 집단적으로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자원화 하도록 한 점은 매우 바람직함</li> </ul> </li> <li>○ 문제점의 즉시적, 일관적 보완 및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준비과정, 대상지 선정, 시행과정 등에서 의견 수렴, 전</li> </ul> </li> </ul>

사업명	선정사유
	<p>문가의 자문·현지조사 및 점검·모니터링, 관계자 워크숍 등 다양한 방법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 발전적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9년도에는 마을 경관 보전 활동비를 신설하는 등 사업이 점차 발전적으로 전환되고 있음</li> </ul> </li> </ul>
농촌활력 증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간 통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사·중복성 때문에 비판받았던 신활력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및 특화품목육성사업을 농촌활력증진사업으로 통합하여 관리</li> </ul> </li> <li>○ 성공적인 성과목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목표 및 추진시스템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함으로써 지자체의 관심을 제고</li> </ul> </li> <li>○ 관계부처·기관간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지침을 마련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li> <li>○ 효과적인 사업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산업박람회 개최, 매스콴을 통한 공동홍보, 시도 네트워크 경비지원 등은 사업홍보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li> </ul> </li> <li>○ 목표 달성을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유도</li> </ul>
향토문화 관광축제 육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축제의 성공적 모델 창출 및 지역 발전에 기여</li> <li>○ 크지 않은 사업비로 지자체간 긍정적 경쟁을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안배 혹은 일률적인 지원방식 대신에 예비축제 신청, 전문가들의 현장평가 및 판정, 선정회의, 본축제 편입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축제간 선의의 경쟁의식 및 도전의식을 고취</li> <li>- 전문가 등이 사업 추진 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li> </ul> </li> <li>○ 피드백을 통해 지자체의 개선노력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의 현장평가보고서를 축제관계자에게 송부하여 활용토록 함</li> <li>- 방문객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참관평가를 토대로 축제측이 환류하는 지에 대해 모니터링</li> </ul> </li> <li>○ 적극적인 홍보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국내, 국회 홍보를 지원하고 4개 국어로 구성된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온라인 홍보 활용</li> </ul> </li> <li>○ 주민들의 여가문화 향유 기회 제공 및 자긍심 고취</li> </ul>

□ 복합산업 부문 하위사업

사업명	선정사유
해양관광자원 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가 보유한 우수한 해양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국민들의 해양관광 수요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임</li> <li>○ 주민 의견 수렴, 전문가 활용 절차 등이 미흡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중심으로만 추진 경향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주민과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지를 선정하므로 해당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이 지원된다고 하지만 지역설명회 개최 등의 근거 자료가 없음</li> </ul> </li> <li>○ 중앙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종합계획 부족</li> <li>○ 사업 추진과정의 모니터링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별다른 과정을 찾기 어렵고, 국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등 사업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li> <li>○ 성과지표 보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다른 성과관리 지표 없이 실적 지표가 곧 성과관리 지표 (예산행률)로 되어 있음</li> </ul> </li> </ul>
자생식물원 및 생태숲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사업은 국가 식물자원의 서식지내 보전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적으로 특색있는 생태숲을 조성하여 자연학습 및 산림문화를 학습, 체험하기 위한 휴양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임.</li> <li>○ 자생식물원이나 생태숲은 특정 지역에 입지하는 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고, 지역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도 평가에서도 제기하였던 사안임</li> </ul> </li> <li>○ 생태숲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합한 사업 내용인가, 사업집행 시에 적절한 법적 기반과 전문가, 학계, 지역주민, 환경단체들의 의견수렴구조가 마련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가, 사업성과는 목표한 바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가 등을 점검해야 함.</li> <li>○ 자생식물을 식재하고 생태학적으로 건강한 숲을 가꾸는 목적은 1차적으로 자연체험과 같은 이용이 아니라 식물종의 보전에 두어야 할 것임. 그러므로 자연체험과 환경교육 등에 사업목적들 경우 본 사업은 '산림휴양공간조성' 사업에 편입시키는 것이 훨씬 타당하리라 판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당기간 큰 사업비를 책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적</li> </ul> </li> </ul>

사업명	선정사유
	<p>인식이 낮아 국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지표 보완 필요</li> <li>- H/W 중심의 실적 위주 성과지표인 지역생태숲 조성개수가 사업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함</li> </ul>
산림휴양공간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에게 건전하고 저렴한 산림휴양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농·산촌의 관광개발과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 됨</li> <li>- 제1차 삶의 질 기본계획뿐만 아니라 제2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이며 '산림문화 휴양 10개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상위 정책 목표에도 부합함</li> <li>○ 사업내용 보완 필요</li> <li>- 자연친화적 휴양시설 보완을 위하여 환경·토목·건축 등 분야별 자문가 그룹의 심의 및 타당성 평가를 통한 목재와 황토 등 친환경 소재를 최대한 사용하여 친환경적 산림휴양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산촌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산림휴양 잠재 수요를 보다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됨.</li> <li>- 방문객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고려 요소가 됨을 감안하여야 함</li> <li>- 전년도 평가결과에 대한 미흡한 사항이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다소 부족</li> <li>- 산림휴양정책 발전방안 토론회를 실시했으나 매우 형식적으로 보임</li> <li>- H/W 중심의 사업, 하달식 사업의 특성을 견지하고 있으며, 1988년 이후 지속된 사업이라 기여도도 크지만 변화된 시대적 여건에 대응하여 사업의 추진 방식의 변화를 도모할 필요</li> <li>○ 성과지표 개선 필요</li> <li>- 성과지표로 실적 위주 성과지표인 시설 조성개수를 사용하고 있고, 이용 및 만족도 조사 결과 수치는 조사의 시기, 주체, 대상 등에 따라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자료이므로 사업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도 과학적인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li> </ul>

< 참고 3 >

'09시행계획 사업별 성과목표 달성도

사 업 명	성 과 지 표	측 정 기 준	단위	목표 (A)	실적 (B)	B/A (%)
<b>1. 농산어촌 복지기반 확충(20)</b>						
1-1-1-0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제도개선	농가소득중 건강보험료 경감액의 비율	세대당건강보험료 경감액/농가소득	%	0.83	1.11	133.7
1-1-2-0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제도개선	가입자 지원율	실제 지원인원/총지원대상인원	%	85	88	103.5
1-1-3-0 농작업 재해보상 지원	농업인안전공제 보상수준 달성률(%)	산재보험 보상수준 대비 농업인안전공제 보상수준 달성도	%	66	66	100.0
	공제가입률	공제가입자수/당해연도 농림업경제활동인구수	%	47.7	48.4	101.5
1-1-4-0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어선원보험 가입률	가입어선원 /가입대상어선원	%	12.2	12.2	100.0
1-1-5-0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	-	-	-	-	-
1-2-1-1 농산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응급의료 취약지 해소율	취약지 군지역 중 응급의료기관 설치군	개	43	42	97.7
1-2-1-2 공공보건기관기반 확충	이용자 만족도	전문설문조사 기관 조사결과	%	85	88.4	104.0
1-2-1-3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지역거점공공병원이용자만족도	설문조사 (전화, 면접 등)	점	78.5	80.3	102.3
1-2-3-1 농작업재해 원인구명 및 농작업 환경개선	논문게재	목표건수	건	8	9	112.5
	영농활용	목표건수	건	5	6	120.0
	특허출원	목표건수	건	3	7	233.3
	농업인 건강안전정보센터 방문자수/년	목표건수	천명	100	840	840.0
1-2-3-3 농작업 안전모델 조성사업	농작업 안전관리 실천율	농작업 안전보건 현황 점검 조사	%	80	80.14	100.2
	농작업 안전사고 감소율	농작업 안전사고 발생 모니터링 시스템	%	20	66.7	333.5
1-3-1-1 농산어촌 보육시설 확충	농산어촌 지역의 보육시설 확충	농산어촌 지역 보육시설 확충 개소수	개소	30	43	143.3
1-3-1-2 농산어촌 만 5세아 무상보육지원	지원아동수	총지원아동수	명	29,918	29,073	97.2
1-3-1-3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지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비율	농어촌지역 영유아 중 양육비 지원인원 비율	%	62	66	106.5
	양육비 지원 만족도	재지원 신청자 설문조사	%	70	70	100.0

사 업 명	성 과 지 표	측 정 기 준	단위	목표 (A)	실적 (B)	B/A (%)
1-3-2-0 여성농어업인센터 설치 확대 및 내실화	여성농업인센터 계획대비 설치 비율	설치계획 ÷ 추진 실적	%	38	38	100.0
1-3-3-1 농어가 도우미 지원 확대	계획대비 지원율	계획대비 지원 실적	%	100	105.4	105.4
1-3-3-2 취약농가 인력지원	수혜자 만족도	친절도, 도움성, 필요성 등이 포함된 전반적 만족도를 5분위 척도로 조사하여 상위 2분위까지 비율을 산정	%	90.0	89.9	99.9
1-3-5-1 여성농업인 창업지원	지원후 3년차 사업장 매출액 조사결과	전년도 대비 매출액 향상정도	%	5	7.3	146.0
1-4-1-1 농산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 확충	농어촌재가노인시설 신축 지원 수	보조금 지원 개소수	개소	13	13	100.0
1-4-2-4 농촌 건강장수마을 조성	생활만족도	개인과 마을의 활력도 및 삶의 질 향상 증가 비율	%	66	69.5	105.3
	건강장수환경만족도	노년문화 자부심 지역사회 활력화	%	81	81.3	100.4
1-4-3-0 경영이양 직불제 추진	경영규모 3ha 이상 농가수 비율(%)	(경영규모 3ha 이상 농가수 /전체 농가수)×100	%	7.46	7.50	100.5
<b>2.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17)</b>						
2-1-1-1 농산어촌 우수고교 집중육성	학교 구성원 만족도	수혜자 만족도 조사	%	65	73.38	112.8
2-1-1-4 한국농업전문학교 개편 운영	졸업생 영농정착률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 보고서	%	95.0	99.6	104.8
	졸업생 농가 평균소득률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 보고서	%	190	242.2	127.5
2-1-2-8 군단위 소규모 학교 통폐합	선정된 대상 군	군 개수	개	2	9	450.0
2-1-3-4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농산어촌 지역 수	시·도교육청이 방과후학교 운영을 지원한 기초자치단체 수	시·군	140	140	100.0
	농산어촌 지역의 방과후학교 만족도	농산어촌 지역 학생 만족도 조사 실시	%	67	68.7	102.5
2-1-3-6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육성	구성원 만족도	설문조사	%	70	72.8	104.0
2-1-4-2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유아학비 수혜율	만5세지원아동수/만5세취원아수	%	51.1	53.3	104.3
		만3~4세지원아동수/만3~4세취원아수	%	48.1	53.7	111.6
2-1-4-4 농어촌지역 사립유치원교사 처우개선	계획대비 지원율	계획대비 지원 실적	%	100	103	103.0
2-2-1-0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계획대비 지원율	계획대비 지원 실적	%	100	100.7	100.7
2-2-2-1 농산어촌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수혜자 만족도	전문기관의 만족도 조사보고서	%	85.0	86.2	101.4
2-2-2-2 농업 관련 대학생 장학금 지원	지원계획인원대비 지원실적	지원실적인원/계획인원 × 100	%	100.0	98.8	98.8
	지원계획금액대비 지원실적	지원실적금액/계획금액 × 100	%	100.0	99.9	99.9
2-2-3-1 초·중·고학생 급식비 지원	초·중·고 학생 급식비 지원	지원액	억원	992	1,361	137.2

사 업 명	성 과 지 표	측 정 기 준	단위	목표 (A)	실적 (B)	B/A (%)
2-2-3-2 지역농·수산계고 급식비	계획대비 지원율	계획대비 지원실적	%	100	121.7	121.7
2-2-4-2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배치	전담인력 배치 수	명	877	877	100.0
2-3-2-1 농산어촌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수당지급 교원수	수당지급인원/수당지급 대상인원×100	%	5,351	5,351	100.0
2-3-3-2 학교도서관 및 장서 확충	학교도서관 장서확충	학교도서관 장서 구입비	백만원	72,633	72,633	100.0
2-3-3-3 기숙형 고교 지정·추진	기숙형고교 지정	학교 수	개소	68	68	100.0
2-3-3-4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	구성원 만족도	설문조사결과	%	70	89.9	128.4
<b>3.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34)</b>						
3-1-1-0 지역개발 전문인력 육성 및 저변 확대	교육 인원	교육 이수 인원	명	5,720	8,340	146
3-2-1-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불량주택 정비(%)	(용자지원 대상주택 개량실적 누계치/전체 주택개량 목표치)×100	%	78	78.4	100.5
3-2-1-2 어촌종합개발사업	사업권역내 주민만족도	기준년도대비	%	67	67.9	101.3
	연평균어가소득증가율	기준년도대비	%	3.3	5.3	160.6
3-2-1-3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산촌생태마을 조성수	도의 실적보고서	개소	30	30	100.0
	산촌주민 만족도	외부기관 용역	점	86	88.56	103.0
	산촌마을 소득증가율	"	%	9.5	9.62	101.3
3-2-2-1 소도읍 육성사업	단위사업 공정률	공정률 산정	%	95	97.5	102.6
3-2-2-2 면소재지 활력증진사업	사업착수(누계)	사업착수실적	권역	4(8)	4(8)	100.0
3-3-1-1 농산어촌 주거환경 개선	불량주택 정비(%)	(용자지원 대상주택 개량실적 누계치/전체 주택개량 목표치)×100	%	78	78.4	100.5
3-3-2-1 면단위 생활용수개발	면단위 급수보급률(%)	면단위 급수인구/총인구	%	59.7	59.8	100.2
3-3-2-2 마을단위 생활용수개발	용수공급율	사업추진 마을수/사업대상마을수	%	85.8	85.8	100.0
3-3-2-3 면단위 하수도	농어촌지역하수도 보급률	(하수처리구역내 인구/전체인구) × 100	%	50.1	51	101.8
	농어촌지역 오염 물질삭감량	1일 하수처리장 유입하수량 × 유입하수의 수질(BOD농도) - 1일 하수처리장 배출수량 × 배출수질(BOD농도)	톤/일	78.0	92.0	118.0
3-3-2-4 소하천 정비	소하천정비율	소하천정비 거리	km	314	417	132.8
3-3-2-5 폐기물처리시설 지원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의 폐기물처리량증가율	폐기물처리량 증가율	%	0.2	5.1	2,550
3-3-2-6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	폐비닐 수거율	폐비닐발생량 대비 수거율	%	67.8	68.1	100.4
3-3-2-7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설치대수	인양기 설치대수	%	105	105	100.0

사 업 명	성 과 지 표	측 정 기 준	단 위	목표 (A)	실적 (B)	B/A (%)
3-3-2-8 해양폐기물 정화 및 쓰레기 수거사업						
해양폐기물 정화사업(민간대행)	해양폐기물 수거처리물량	설계량 대비 실제수거물량 비교	%	100	108	108.0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지자체보조)	쓰레기 수매사업 확대실적	전년대비 확대실적	개소	47	50	106.4
3-3-2-9 양식장 정화 사업 지원	어장정화사업 추진 진척도	대상면적 계획대비 실적	ha	5,761	5,924	102.8
3-3-2-10 해수욕장주변정비 및 시설개선사업						
시설개선해수욕장수	사업시행 개소수	사업시행	개소	20	20	100.0
철조망 제거	철조망 길이	목표대비 제거율	%	4.1km	4.1km	100.0
3-3-3-1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추진 공정	계획대비 실적	%	95	파악중	
3-3-3-2 교통서비스 강화	'09년 분권교부세 집행	예산집행실적	억원	65	60	92.3
	'09년 지방비 집행	예산집행실적	억원	473	573	121.0
3-3-3-3 국고여객선 건조	건조공사 공정률	공정률	%	100	100	100.0
3-3-3-4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도서민 수송실적	연안여객 수송실적	천명	3,800	3,700	97.4
3-3-4-1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시행면(구)	목표대비 추진실적	면(구)	550	550	100.0
3-3-4-3 도서종합개발사업	연육·연도교추진실적	종합계획대비 연차별추진실적	%	30	30	100.0
	제3차 도서종합 개발계획추진실적	종합계획대비 연차별추진실적	%	7.7	7.7	100.0
3-3-5-1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건립지원 도서관수	국고보조금 지원 도서관 수 파악	개관	17	17	100.0
3-3-5-5 지방문화원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수	사업실적 보고	개수	150	137	91.3
3-3-5-6 테마과학관 건립지원	건립지원수	지원실적 (계수통계확인)	개소	8	10	125.0
3-3-5-7 수목원 조성 및 산림박물관 건립	식물유전자원 누적 확보량	공립수목원의 식물 유전자원 확보량 평균	종	1,700	1,757	103.4
3-3-5-8 농어촌복합체육시설	지원 개소수	지원 실적	개	7	7	100.0
	지원액	기금집행액 실적	억원	37.5	37.5	100.0
3-3-6-1 정보화 마을 조성	마을당 평균 전자상거래 판매금액(백만원)	온라인 총 판매액/마을수 ※온라인 판매금액 500만원 이상 발생한 마을만 집계	백만원	50	51	102.0
	일반국민·주민 참여도	마을홈페이지 총 게시글수 /마을수	건수	6,500	7,119	109.5
3-3-6-3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 구축	고객만족도(점)	7등급 척도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점	70	76.3	109.0
	생산경영정보시스템 사용에 따른 업무효율성 향상도(%)	업무처리시간(도입전·도입후) / 업무처리시간(도입전) × 100	%	29.5	29.6	100.0

사 업 명	성 과 지 표	측 정 기 준	단위	목표 (A)	실적 (B)	B/A (%)
3-3-6-4 디지털어촌 구축사업	어업인정보화교육	교육인원	명	5,000	6,087	121.7
	정보화활성화정도	활성화정도	%	81.1	84.1	103.7
3-3-7-1 농업인 정보화 교육	교육만족도	조사결과의 평균치(5등급 척도)	점	4.15	4.25	102.3
	정보화역량점수	조사결과의 평균치	점	55	60.7	110.4
3-3-7-3 농어업 관련 정보제공 확대	정보서비스 활용 증가율	전년대비 콘텐츠 활용도 증가율	%	10.3	12.66	122.9
	이용자 만족도	이용자 대상의 5점척도 만족도 조사	점	82	78.95	96.3
<b>4. 농산어촌형 복합산업 활성화(25)</b>						
4-1-1-1 향토자원의 조사·발굴 및 DB구축	향토자원 산업화 유망자원 발굴	산업화 유망 향토자원 DB 건수	건	130	528	406.2
	향토자원 산업화 유망자원 DB구축	농촌공익기능정보시스템 상 자료 게시여부	건	130	133	102.3
4-1-1-2 농촌활력증진사업	일자리창출	실태조사	명	2,000	2,546	127.3
	향토자원 산업화 실적	"	건수	49	49	100.0
4-1-1-3 향토음식 자원화	향토음식 상품화 증가율	지원후 2년차 이상되는 사업장의 상품화 증가율	%	10	18.3	183.0
4-1-2-0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한 농공단지 조성	농공단지 조성율	농공단지조성 개수	단지	354	332	93.8
4-1-3-0 농어어업인 고용촉진훈련	취업률	(조기취업+수료후취업)/(수료인원+조기취업)×100	%	43.7	47.0	107.6
4-2-1-1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마을 방문객 수	총 방문객 수	천명	3,232	3,626	112.2
	농촌관광 매출액	총 매출액	억원	460	445	96.7
4-2-1-2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마을당 방문객수	농촌전통테마마을 전체 방문객 수/ 마을 수 (조성기간 마을은 제외)	천명	14	15.7	112.1
	마을당 매출액	농촌전통테마마을 전체 도농교류 매출/ 마을 수 (조성기간 마을은 제외)	백만원	97	103	106.2
4-2-1-3 문화역사마을 조성	주민만족도	리커트 5점 척도 설문조사	%	80	85	106.3
4-2-1-4 어촌체험마을 조성	체험객수	체험마을 체험객수	천명	640	744	116.3
	체험소득	체험마을 체험소득	백만원	12,920	16,759	130.0
4-2-1-5 어촌관광활성화 사업	어업인만족도	기준년도 대비	%	67	67.5	100.7

사 업 명	성 과 지 표	측 정 기 준	단위	목표 (A)	실적 (B)	B/A (%)
4-2-1-6 산림휴양공간 조성 및 수목원 조성	국유림	보완	개소	37	37	100.0
	공유림	설계·조성·보완	개소	48	48	100.0
	산림욕장	설계 및 조성	개소	16	16	100.0
4-2-1-8 농업농촌 테마공원조성	테마공원조성사업 대상주민 만족도	만족도	%	75	88	117.3
4-2-1-11 해양관광자원개발	계획대비 추진실적	계획대비 집행실적	%	13,189	13,189	100.0
4-2-2-3 농촌체험교육농장	농장당 체험프로그램 참가자수	교육농장 시범사업 시행 후 체험학생 수	명	1,880	2,138	113.7
	농장당 매출액	농외소득을 제외하고 교육농장 운영을 통한 농장당 매출액	천원	21,845	35,616	163.0
4-2-4-0 향토문화 관광축제 육성	문화관광축제 총 관광객수	2008년 문화관광축제 참여 관광객	백만명	38	30	78.9
	문화관광축제 총 경제파급효과	2008년 문화관광축제 경제 파급효과	억원	17,000	13,000	76.4
4-3-1-0 경관보전 직불제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연계도	시행마을/연계마을 × 100	%	84	80	95.2
4-3-2-1 농촌경관 및 어메니티 자원 관리			-	-	-	-
4-3-2-2 농촌어메니티 계획모델 개발 및 보급	농촌어메니티 자원활용 라이브러리 체계 개발	개발 건수	건	1	1	100
4-3-3-0 농산어촌형 경관주택 발굴·보급	농어촌주택모델 개발 실적	개발 실적	종	12	12	100
	전시 및 홍보	방문객	명	40,000	49,000	122.5
4-3-4-0 자생식물 식재 및 생태숲 조성	지역생태숲 조성개수	지역생태숲 누적 조성개수	개소	38	38	100
4-3-5-0 경관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농어촌경관계획수립 지침(요령) 만족도	설문조사	점	3.5	3.5	100
4-3-6-1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이탈농 지지율 대비 당해년 정주농 비율	시·군에서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Agrix)으로 제출한 연도별 농가수로 산출	%	98.5	100	101.5
4-4-1-0 1사 1촌 운동	1사1촌 마을당 교류횟수	당해연도 교류횟수 / 누계자매 결연 마을수	회	5.6	6.5	116.1
4-4-2-1 도시민 농산어촌 주택갓기 활성화	도시민 유치비율(% , 누계)	도시민 유치가구수 / 도시민유치목표 ×100	%	30	30	100.0
4-4-3-1 도농교류활성화	체험마을방문객수 증가율	(당해년도 실적-전년도 실적)/전년도 실적*100	%	15	29.1	193.3
	포털이용자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기관을 통한 설문	%	82	84	102.4

〈 참고 4 〉

**제1차 기본계획 부분별 투융자 계획 대비 실적**

사업분류	투융자 실적(2005~2009)								비고
	합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소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b>총133개 과제 (예산 124개, 비예산 9개)</b>									
<b>기본계획</b>	202,218	116,570	44,309	42,014	21,405	8,597	80,786	5,107	
<b>추진실적</b>	228,900	125,064	33,908	58,625	25,998	6,256	92,789	11,321	
<b>1. 농산어촌 복지기반확충</b>									
기본계획	33,712	25,860	19,723	94	6,043	0	7,437	415	
추진실적	34,551	23,332	18,163	119	4,870	180	7,870	3,349	
<b>1-1. 사회안전망 확충</b>									
기본계획	14,629	14,629	11,229	0	3,400	0	0	0	
추진실적	15,910	12,715	11,375	0	1,160	180	0	3,195	
<b>1-2. 보건·의료기반 확충</b>									
기본계획	9,015	5,606	3,391	94	2,121	0	3,409	0	
추진실적	8,418	5,170	3,223	115	1,832	0	3,247	0	
<b>1-3. 영유아 및 여성복지     지원 강화</b>									
기본계획	7,056	3,100	2,581	0	519	0	3,541	415	
추진실적	8,260	3,960	2,086	0	1,875	0	4,146	154	
<b>1-4. 노인복지 증진</b>									
기본계획	3,012	2,525	2,522	0	3	0	487	0	
추진실적	1,963	1,486	1,480	4	3	0	477	0	
<b>2. 농산어촌 교육여건개선</b>									
기본계획	31,474	9,374	5,914	681	2,129	650	22,059	41	
추진실적	37,862	8,113	3,133	0	4,708	272	28,036	1,714	
<b>2-1. 학생의 교육기회 강화</b>									
기본계획	14,854	4,773	2,644	0	2,129	0	10,081	0	
추진실적	18,704	5,730	1,008	0	4,708	14	12,975	0	
<b>2-2. 학생의 교육부담 경감</b>									
기본계획	14,557	3,538	2,327	561	0	650	10,978	41	
추진실적	10,787	2,266	2,008	0	0	258	8,445	77	
<b>2-3. 교원 근무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b>									
기본계획	2,063	1,063	943	120	0	0	1,000	0	
추진실적	8,371	117	117	0	0	0	6,617	1,637	

사업분류	투자자 실적(2005~2009)								비고
	합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소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특세	기금등			
<b>3.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b>									
기본계획	103,927	63,938	12,152	31,994	12,171	7,621	35,355	4,634	
추진실적	125,744	72,129	10,523	41,134	15,076	5,396	47,598	6,013	
<b>3-1. 인적역량강화</b>									
기본계획	118	118	118	0	0	0	0	0	
추진실적	41	41	41	0	0	0	0	0	
<b>3-2. 농산어촌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종합개발</b>									
기본계획	32,115	17,218	506	14,441	2,271	0	10,513	4,384	
추진실적	27,308	13,599	294	9,697	3,608	0	10,221	3,488	
<b>3-3. 기초생활여건 개선</b>									
기본계획	71,694	46,602	11,528	17,553	9,900	7,621	24,842	250	
추진실적	98,395	58,489	10,188	31,437	11,468	5,396	37,377	2,525	
<b>4. 농산어촌형 복합산업 활성화</b>									
기본계획	33,105	17,398	6,520	9,245	1,062	326	15,935	17	
추진실적	30,171	21,491	2,089	17,373	1,344	409	8,712	245	
<b>4-1. 향토산업의 진흥</b>									
기본계획	2,661	2,642	87	2,542	13	0	19	0	
추진실적	17,381	13,374	108	13,259	8	0	3,893	114	
<b>4-2. 체험·휴양기반 구축 및 활성화</b>									
기본계획	18,676	6,205	43	4,813	1,029	320	12,454	17	
추진실적	7,487	4,164	42	2,439	1,274	409	3,201	123	
<b>4-3. 농산어촌의 경관보전 및 어메니티 자원화</b>									
기본계획	9,833	6,956	6,157	528	20	6	3,122	0	
추진실적	3,391	2,418	1,516	562	62	0	1,246	4	
<b>4-4. 도농교류 활성화</b>									
기본계획	1,935	1,595	233	1,362	0	0	340	0	
추진실적	1,912	1,535	422	1,113	0	0	373	4	